

#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본 취재윤리

이 승 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 동 대학원 석·박사
-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석사
-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 저서 및 논문 :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중상사자 책임 연구 », 「 언론권 행사에 있어서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의 문제점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법의 문제점 고찰: 방영금지 가치본 결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외 다수.

## 1. 취재윤리의 근거지로서 진실보도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덕목으로 추앙받아왔다. 다양한 유형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밑거름으로 간주된다. 인적 사슬 망을 견고하고 촘촘히 엮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충정어린 배려와 세심한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투자와 성공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만한 이 모델은 언제, 어디서나 지고지순한 것으로 통용되는가? 아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언론관에 의하면 언론인은 오히려 거래 상대방과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터무니없고 가혹한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이며 상호 밀착한 협력 관계 대신, 언론인은 상대방과 긴장 대립하고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저널리즘의 이상과 원칙이

라고 역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순, 거칠게 대답하자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다.

사회 일반인들에게는 모범적인 관계의 법칙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언론인들에게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긴밀하고 끈끈한 취재원 관계가 언론의 진실추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진실'을 획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유착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긴장관계 혹은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촉이 잦은 취재원은 물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언론의 취재나 취재·보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것도 요구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든 자본이든 경영·소유주든, 그 모든 것과 경계를 분명히 하여 독립할 것과 상호접촉이 불가피한 취재원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 긴장, 아니면, 최소한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을 지상과제로 한다. 너무 가까울 경우 진실을 가려서 보는 눈이 흐

저널리즘의 생명인 진실추구를 위해 취재원과  
저널리스트 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언론윤리적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공론화 해야

러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정보 접근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건기사에 대한 취재 실상을 밝히면서 한 현직 언론인은 기자가 취재원과 유착돼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지 않고 덮어둔다든지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한다면 그 언론사는 그 순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단정짓는다(이광범 외, 61). 2005년 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언론인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언론인들은 취재 보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 하는 것을 꼽았다(오수정, 2005). 한국의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가? 악법중의 악법으로 평가를 받았던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도 진실보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언론기본법 제9조는 언론이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4조는 언론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등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도 제6조에서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 제5조도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은 제3조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

면서 누구든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언론사업자는 동법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의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동법은 제18조에서 편집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보면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자유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객관화 수단으로서 객체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헌재결정이나 관련법의 취지는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편집권 독립이 진실하고 공정·객관적인 언론활동의 밑거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에 근거해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김옥조는 저널리즘의 생명인 진실추구에 있고 진실을 공중에 알려야 하는 저널리스트는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이라면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는 사법제도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사로운 이해로부터 사법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과 한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언론보도가 사례에 따라서는 재판보다 더 큰 국가적·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취재원과 매스미디어·기자들 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언론 윤리적 차원

1) 헌법재판소 1992.6.26. 90헌가23 결정

에서 철저히 점검되고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옥조, 2004: 115).

21세기에 출판된 언론인의 저술은 진실보도의 지난함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고발뉴스를 만들 때 제1요건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없이는 도대체 취재가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취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고발뉴스는 위장촬영이 없으면 뉴스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위장해서 몰래 접근해 진실을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다. 몰래 촬영, 위장 촬영이란 진실추구가 목적인 셈이다. 진실이 담긴 현장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위장 촬영의 목표이자 당위다 / 현장을 치고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터뷰를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럴 때는 신분을 공개한 뒤 들어간다.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들고 취재여부를 숨긴 뒤 신분을 감추고 손님이나 시민의 것으로 가장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쓴다.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주는 현장성이 인터뷰의 생명이다 /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터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상기된 표정에 높은 톤의 인터뷰를 받도록 유도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유용하다. 집요하게 기자가 물어 볼 때 취재 대상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이런 인터뷰의 효과가 크다 / 몰래 카메라나 인터뷰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법을 지키다보면 제대로 촬영이나 취재를 할 수 없다. 고발 뉴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취재방법이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제작한다”

진실추구에 보탬이 될 경우, 취재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범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비윤

리적인 취재행위를 용인해 줄 수 있는가? 비윤리적으로 취재하고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가 진실하고 공공성이 있을 경우, 해당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 윤리적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복잡하고 미묘하긴 하지만 거칠게 대답하자면 ‘아니다’이다.

2005년 겨울 초입, 황우석 교수의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했던 MBC ‘PD수첩’이 스스로 ‘취재윤리’ 문제로 광폭한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저격의 방아쇠를 당겼던 YTN이 결국 ‘취재·보도의 윤리적 결함’을 이유로 사과하는, 희극 같은 비극이 연출되었다. MBC는 2005년 12월 4일,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제작진이 취재원을 상대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강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하는 등 취재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임원회의에서는 15년 동안 660회를 방송해 온 방송사의 대표적 프로그램 ‘PD수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6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제작진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였다.<sup>2)</sup> MBC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윤리 문제를 제기했던 YTN도 자신의 취재과정이 일부 부적절했다면서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취재윤리와 관련, 보도국장은 보직을 사퇴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회생하긴 했지만 ‘PD수첩’ 사건을 통해 우리는 ‘취재과정의 윤리’가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버금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으뜸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황우석 교수 사건이 정점에 달해 있던 2005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10대 이상 성인남녀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윤리를 지켜야 밝혀진 진실이 빛을 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강자의

2) 2005년 12월 15일 밤, 긴급 편성된 ‘PD수첩 특집’ 편은 평소보다 2배 가량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PD수첩’은 2006년 2월 한국방송프로듀서상의 시사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왜곡된 언론윤리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언론 고유의 사명과 역할까지  
위협할 수 있어**

불법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때로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취재가 용인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5%였다.<sup>3)</sup>

그동안 한국 언론은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명문의 ‘윤리강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재과정의 윤리적 ‘실천’은 시답잖고 가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언론인들의 비윤리적인 취재행위, 혹은 부적절한 취재원 관계가 오프라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타의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고, 언론인들이 저술한 자서전 격의 책자에 비윤리적·위법적인 취재 경험들이 용맹무쌍한 전사의 무용담처럼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장차 진실추구의 선봉에 설 것을 꿈꾸는 예비 언론인들에게 자칫 뒤뜰린 언론인의 모습과 왜곡된 언론윤리를 이식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언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외면은 끊임 없이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환경을 파수해야 할 언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악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심히 심각한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결코 탈현실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윤리 파동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지 않은가?

## 2. 취재의 자유와 법적 제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자유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언론의 자유에는 취재·편집·보도·발행·배포 등의 활동이 망라된다. 언론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국정관여와 관련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기 위한 것인바, 취재행위의 자유는 표현행위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즉 보도의 자유에 포함된다(김철수, 2005: 719-720). 즉, 취재는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바람직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정보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보호로 이해하는 한 정보수집,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김옥조, 2005: 257). 따라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주는 뉴스’만을 편집·보도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output)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허영, 2005: 549).

결국, 국민 권력의 대리 수행자인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게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정당화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하는 정보의 단순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를 찾아내 알권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책무가 언론에 있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취재의 자유가 요구된다.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감춰진 사회 구석구석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언론의 취재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나라 사정에 따라 다소

3) 경향신문, 2005.12.14. 45판 30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재원 비닉권 혹은 취재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은 권력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부정과 부패는 이들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지지 않고 주로 내부 고발자의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된다는 데 있다. 내부 정보 제공자인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취재원은 실정법 위반이나 규약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한다. 취재원 보호를 취재 자유의 보장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이유이다.<sup>4)</sup>

물론 취재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영에 따르면 취재활동도 다른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취재활동,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취재활동,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방법으로 취재하는 행위 등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허영, 549). 미국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생선과 육류를 세제로 닦아내고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현장을 방송한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 상징적 수준이긴 하지만 1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었다. 두 명의 방송사 피디가 경력을 속이고 위장 취업해 사건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도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연방 1심법원은 사기와 배임, 무단침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5백 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Food Lion 식품회사와 ABC의 PrimeTime Live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나 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해 정보를 획득한 피디와 기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였고 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침입

을 이유로 형사상 300만 원의 벌금, 민사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도 하였다. 허락 없이 문서를 절취해 간 기자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적용되었고, 도청자료를 획득 보도한 방송기자를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로 처벌하였다. 물론 이들 사건에서 보도내용의 공익성이나 진실성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보도로 인하여 오히려 공적인 쟁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도 하였다. 취재행위의 위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 법 현실을 보여준다.

### 3. 취재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개인의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적 법익을 이유로 취재행위를 제한할 때, 그러한 법적 제한에 대한 언론의 저항은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2005년 7월,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리크게이트 관련 취재원을 증언하지 않고 구속 수감되었을 때 그녀는 '언론자유 상징'으로 여겨졌었다. 미국 언론인 중에서 가장 긴 85일간 수감됐던 밀러 기자는 법적 제한에 저항함으로써 언론의 윤리원칙을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밀러 기자와 함께 기소되었던 '타임'의 매슈 쿠퍼 기자는 판결 직전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혀 구속을 면했으나 취재원을 공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비난을 겪어야 했다. 법적인 증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위반했

4)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목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는 신문의 진실보도·사실보도 및 공정정보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취재원 목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재원의 봉쇄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신문이 진실보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허영, 2005: 549).

취재윤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사상될 수 있어

다는 혹독한 비판이었다. 실정법의 요구와 언론윤리 원칙간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언론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실정법에 저항하는 것이 언론의 윤리적 정당화를 도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차원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취재원 보호가 자칫 취재원과 언론인간의 밀월관계를 조성하고 언론 및 언론의 수용자가 취재원의 농간과 조작에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리크게이트란 2003년 6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던 조지프 윌슨 전 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요원이란 사실을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고의로 언론에 흘린 사건이다. 밀러 기사는 법정 증언을 조건으로 석방돼 자신의 취재원이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비는 딕 체니 부통령의 허락 하에 비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전 대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의 아내가 CIA 비밀요원이라는 비밀정보를 기자들에게 흘리도록 체니 부통령이 부추겼고 취재원 보호라는 장막 속에서 밀러 기사는 감시견이 아닌, 취재원의 충직한 주구 노릇을 했다는 것이 밀러 기자에 새로운 평가의 골격이다. 2002년 국제테러리즘 기사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한 백전노장의 여기자 주디스 밀러는 결국, 취재원을 보호한 언론자유 의 영웅에서 부적절한 취재원 관계를 유지한 '비윤리적 네오콘'이었을 뿐이라는 윤리적 비난 속에 뉴욕타임즈를 사직,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취재원과의 긴장관계, 취재원과의 불가근 불가원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밀러 기자 사례가 웅변해 주고 있다.

진실은 언론이 추구하는 제1의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고 보도의 파급효과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혹은 한마디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취재과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의 직업적 윤리강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 수용자들도 내용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비윤리성으로 인해 그 의미가 사상될 수 있으며, 취재윤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추어진 부정과 부패를 들춰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윤리강령의 주문을 빗겨갈 수밖에 없을 때조차, 취재진에게 취재과정의 윤리적 원칙만을 고수하라고 다그치기에는 언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크다. 취재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취재윤리는 왜 중요한가?

언론의 보도활동은 기획·취재·기사작성·보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취재윤리는 언론인이 취재단계에서 제3자와 유무형의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적용하는 가치판단 체계이자 행위규범이다. 언론인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미디어 활동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선택을 하게 되고, 언론의 취재윤리는 이러한 언론인들의 선택이 일련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치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 옳고 그름의 정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산재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없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언론인들은 윤리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독자적인 선택을 해 왔다(Dennis and Merrill, 1991: 150-151). 취재윤리는 언론

인들이 직면한 가치 판단과 선택의 준거를 제공한다. 앞서 국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취재윤리는 법적인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 상실이라는 무형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존재가치를 확인케 하는 가장 견고한 보호벽이라고 할 것이다. 취재윤리가 강조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보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모든 직업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법률가는 정의의 구현을,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의무를 이상으로 내세우는데 언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Patterson and Wilkins, 1998: 20). 핑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고 날조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모든 언론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본다(핑크, 1995: 49). 코바치 등의 견해도 같다. 지난 300년간 뉴스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과 불문율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는 진실추구'라는 것이다. 비록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널리즘 특유의 진실 개념에 대하여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이 대체 개념 혹은 유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개념 정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인들 역시 자신은 언론 자유나 상업이 아니라 진실추구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코바치 외, 2003: 53-72).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은 진실할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와 기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에 존재의의를 두고 있는데 만약 언론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에 역행하게 되므로 바로 그 순간 언론은 제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저널리즘 바로 그 자체이다(김옥조, 2004: 197).<sup>5)</sup> 거의 모든 언론윤리 교과서나 논문 그리고 윤리강령에 적시된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가 진실보도에 있으므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여론을 조작하려는 취재원을 꿰뚫어보지 못하거나 취재원의 계약에 부차부수한 언론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목숨과도 같은 진실이 자칫 획득과정의 윤리위반 문제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수 있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진실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재과정의 윤리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대중들에 의해 그 진실이 홀대를 받고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취재윤리는 진실을 대중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이자 진실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인 셈이다.

둘째, 법적 강제를 최소화하고 갈등하는 타 법익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도덕은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5) 코바치 등은 언론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진실을 대체할만한 것을 제시해 왔고, 가장 공통되는 두 가지는 공정성과 균형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부적절한데 공정성은 너무 추상적이고 결국은 진실보다 주관적이다. 또 균형성 또한 너무 주관적인데 사실은 양쪽이 똑같은 비중을 지니지 않는데도 양쪽 모두에게 공정해짐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코바치 외, 2003: 69). 신문윤리강령이나 관련법들의 정의에 비취볼 때 진실성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정확성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밀받침되는 서술을 가리키며 공정성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용자들이 사태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릴에 의하면 객관보도란 초연하고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견을 섞지 않고 스스로 관여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옥조, 2004: 199-217).

*취재윤리준칙은 한 사회의 윤리규범과  
언론의 사명을 조화한 결과물로서 언론인이  
따라야 할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 지녀*

책임을 못 지는 무력한 것이지만 법은 요청을 끝까지 강제로 관철시키는 강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 법과 윤리를 논할 때 법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한 최소한의 것만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최종고, 2000: 18). 법을 도덕의 최대로 보든 아니면 최소한으로 규정하든 알맹이는 법의 강제력을 강조하는 데 있다. 자율적인 윤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한 사회·환경에서는 법적 강제 장치가 물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sup>6)</sup> 취재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취재과정에서 허락 없이 취재원으로부터 서류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검사·수사관 등의 신분을 사칭해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형법상 공무원자적 사칭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촛지나 금품수수를 금하는 윤리실천요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수재의 죄로 다루어질 수 있다.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취재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위반할 경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죄가, 타인의 전화를 엿듣거나 메일을 훔쳐봐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고 취재하였을 때 통신비밀침해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취재윤리는 이러한 법적 제재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타인의 법익과 언론자유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언론의 취재윤리는 그 자체로 고결하고 숭양

해야 할 행위규범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적 행위의 원칙이나 규범의 체계를 가리키며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다. 또한 윤리는 한 사회나 문화가 규범으로서 수용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을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 보려고 한 역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도덕과 윤리는 실질적으로 나뉘질 수 없을 정도로 수렴되었으며 실제에 있어 윤리는 인간생활의 도덕적 측면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부류이고 흔히 도덕철학으로 불리기도 하며 흔히 도덕과 윤리를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윤리에 있어서 특히 유용한데 그 까닭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위는 광의에 있어서 한 사회의 도덕적 원칙들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Day, 2003: 2-3). 모든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범하곤 하지만, 오로지 언론인들만이 그러한 비윤리적 행위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용기 혹은 불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결정이 잘못된 것일 경우, 대중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치명적이다(Patterson and Wilkins, 1998: 1-2). 워싱턴포스트지 자넷 쿡 기자의 '지미의 세계', 뉴욕타임즈 블레어 기자 사건, 타임의 쿠퍼,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 그리고 황우석 교수 사건을 둘러싼 한국의 'PD수첩'과 YTN 사건에서 언론의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대중의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또한 차가운 평가와 외면을 목도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6)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경우가 그렇다. 사고나 공공의 위협,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자기 자신이 현저한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데 대해 형벌로 다스리는 국가가 적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그러하고 일본 역시 구조의무가 있는 자는 물론 구조의무가 없는 자도 위난에 처한 자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나 뉴욕타임즈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의 취재준칙 위반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장문의 기사를 통해 보도내용의 오류를 공공연하게 바로잡으려 하였다. 취재윤리 위반으로 인한 잘못을 미봉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처분함으로써 해당 언론에 대한 대중의 비난과 불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진실을 추적함으로써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면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는 그 사회의 윤리규범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취재윤리준칙은 그 자체로 한 사회의 윤리규범과 언론의 사명을 조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언론인들이 숭양해야 할 행위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4. 취재윤리의 유형과 정당화

취재윤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취재원과 관련한 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취재 방법·행위와 관련한 윤리이다. 우선 취재원 관계와 연관된 윤리는 취재원과 유착하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취재원과 약속을 지키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불가근 불가원을 이상적인 취재원 관계의 지침으로 추종할 때 독립성 확보는 불가근의 원리를 실현함이고 약속 준수는 불가원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가 천명한 대로 언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도 언론은 독립해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하나는 물

력을 동원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억제와 압력을 견뎌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전이나 향응 제공 등 취재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각종 혜택들이 언론인들의 품위를 해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은 언론이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언론의 사명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김옥조는 세계에서 수백·수천만 원 대에 이르는 금품이 촌지나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 촌지가 언론윤리에 던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촌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곡필의 우려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촌지가 언론이 다루고자 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마취제이거나 독약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국의 윤리강령에 촌지에 관한 규정이 오래전에 사라지게 된 것은 현금 수수가 의미하는 강한 반(反)윤리성 내지 친(親)범죄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김옥조, 2004: 276-282). 유진 굿윈에 따르면 미국에서 촌지나 향응의 윤리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일수록 뉴스가 있는 곳에 기자들을 보낼 때 회사에서 경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유진 굿윈, 1997: 96-97). 언론의 취재윤리를 제고함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에 덧붙여 언론사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윤리·법규에 대한 그 사회의 의식과 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언론이 취재원의 강압이나 회유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진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

둘째, 취재원과 합리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엠바고(embargo),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배경설명(on background) 혹은 비실명보도, 취재원 보호

취재원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불가근(不可近)의  
원리를 실현함이고, 취재원과의 약속 준수는  
불가원(不可遠)을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돼

등이 포함된다. 취재원과 불가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원하면 정보를 얻는데 취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기반이 붕괴되며 정보를 수혈 받을 수 없게 돼 언론 역할 수행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취재원 유착을 경계하면서 유효한 취재원 관계를 유지하는 이음새가 바로 취재원과 맺은 합리적인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취재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취재원들의 요구를 언론이 너무 쉽게 수용한다는 것, 즉,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 배경설명·익명보도 등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리실천요강은 말하고 있다.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하며 그러나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윤리실천요강은 규정하기를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나 배경설명·비실명보도, 엠바고 등은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의 정보독점과 취재원에 의한 여론조작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취재원의 이러한 요구를 비합리적으로 수용할 경우 그것은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된다. 나아가 언론과 수용자간의 정보격차를 가져오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취재원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으로써 진실왜곡과 은폐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취재원들의 요구를 애초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정보접근 및 획득의 원천차단 문제, 취재원들의 요구를 추후에 파기했을 때 입게 될 취재원과의 신뢰상실과 이로 인한 정보 획득 통로의 봉쇄라는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 취재윤리 차원에서 제기되는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취재방법·행위와 관련된 윤리규범으로는 신분을 숨기거나 사칭하며 취재하는 행위, 비밀리에 잠입하거나 위장취업해서 취재하는 행위,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취재목적을 숨기고 취재하는 행위, 허락 없이 문서·자료·전자정보·영상물 등을 검색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비밀리에 엿듣는 도청행위와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치료를 방해하며 취재하는 행위, 허락 없이 병원·요양소 등의 비공개지역을 출입하며 환자를 취재하는 행위,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해 취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편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해야 하며 대신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문서를 반출하는 행위,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사건·사고의 피해자 치료를 방해하며 취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러한 금지원칙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공인의 경우 취재나 보도과정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실천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윤리의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러한 취재과정의 판단과 선택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것은 윤리적 판단 혹은 윤리적 추론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추론이나 판단에 근거해 취재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최종고, 2000; 김옥조, 2004; Patterson and Wilkins, 1998).

첫째, 규범주의적 윤리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다. 규범주의적 윤리는 규칙에 의거한 도덕, 의무론적 윤리, 법칙론적 도덕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 규칙에 부합할 경우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방법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나 원칙 아래서 행동하는 윤리관으로서 이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한다는 이유로 과정이나 수단의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사가 기사를 캐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 규범주의적 윤리관에 의하면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나치게 규정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종사자들은 그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윤리관 혹은 결과주의적 윤리관이다.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적으로 무방하다는 이론인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익을 예측하여 최대다수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행위를 선택하는 규범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 판단이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탐사보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를 입는 탐사보도 당사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동의 선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또 흠친 정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하였을 경우, 목적을 이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가 좋을 것으로 믿었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에 입각할 경우 소수가 입게 될 피해가 경시되거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위험, 근시안적인 시각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셋째, 상황윤리로서 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입장이다. 즉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명령성과 상황이란 상대적 사실의 자발성이 합쳐서 이뤄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사랑뿐이고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사랑과 율법이 모순될 때는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야 하며,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고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달리 태도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로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만 확정되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윤리관은 법에 대한 예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지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관성의 문제, 편의적 자기 정당화의 함정을 안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취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취재목적이 훼손되더라도 윤리강령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규범들을 끝까지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추구나 불가피한 경우에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을 수용해 취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회의 윤리규범, 해당 언론사의 취재준칙과 조직문화 그리고 해당 언론인의 직업윤리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5년 벌어진 구치핸드백 사건,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PD수첩과 YTN 취재윤리 및 시청자 사과방송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부각된 것은 향응·접대·강압

**취재정보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윤리규범에 의해 담보되는 것임을 자각해야**

취재·위장취재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취재 행위 등 기존의 관행들은 취재윤리 차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폐지될 뻔 하였고 관련 언론인들이 보직을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청자·독자들이 언론인들에게 요구하는 취재윤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론의 진실추구라는 역할 수행이 좌절되는 것은 물론, 자칫 언론의 존재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뼈저린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언론이 이번엔 인터넷을 비롯 촘촘히 엮인 시민사회의 감시·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취재정보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윤리규범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론인들이 자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취재윤리원칙을 수용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철수 (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유진 곳원, 우병동 역 (1997). <언론윤리의 모색>, 한나래.  
 이광범 외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최종고 (2000). <법과 윤리>, 경세원.  
 코바치 외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콘라드 핑크 (1995). <언론윤리>, 한국언론연구원.  
 허 영 (2005). <한국헌법론>, 박영사.  
 Day, Louis Alvin (2003). Ethics in Media Communications Cases and Controversies, Wadsworth/Thomson Learning.  
 Dennism Everette E. and John C. Merrill (1991). Media Debates: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New York : Longman.  
 Patterson, Philip and Lee Wilkins (1998). Media Ethics: Issues & Cases, New York : McGraw-Hill Companies.

#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 및 해결 방안 에 대한 단상

엄 기 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조
- 미 California State Univ. Fresno 저널리즘 석사 및 미 Univ. of Iowa 언론학 박사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본부장
- 논문 및 저서 : 「한국 언론 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알 권리에 대한 1989년 헌법 재판소 판결 이전의 확설에 관하여」 외 다수

## I. 서론

지난해 말 MBC <PD수첩>이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의 진위여부에 대해 김선중 연구원을 인터뷰하며 드러난 취재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성 언급 및 유도질문,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취재협조 대가 약속 그리고 연이어 YTN이 배아줄기세포가 곧 '국익'이라는 생각으로 '황우석 살리기' 식의 폭로성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배아줄기세포의 존재여부에 대해 잠시나마 정신적 혼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네티즌의 찬반 댓글, 대통령의 언급, <PD수첩>에 대한 광고해지, MBC의 사과 그리고 <PD수첩>의 방송중단 결정 등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들도 <PD수첩>의 비윤리적 취재를 부각

시키며 방송국 PD들이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들과 MBC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황우석 교수의 세련된 '언론플레이'에 우리나라 언론은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또는 소극적인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황우석 신화 만들기'에 충실히 일익을 담당했다고도 보겠다. 역으로 이러한 '언론플레이'에 우리나라 언론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언론의 비윤리적 취재 · 보도 관행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은 ① 금품수수, ② 신분 사칭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③ 오보와 날조 및 표절 등을 들 수 있겠다.<sup>1)</sup> 이번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를 계기로 비윤리적 취재 · 보도의 유형을 위의 3가지로 대별하여 그 개선방안을 우리나라와 미

1) 미디어 윤리의 범주에는 경·언 유착성 이익의 상충, 외설과 폭력성, 오프 더 레코드와 엠바고,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인종과 성(性) 차별, 재난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 그리고 광고와 홍보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윤리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3가지로만 구분지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미디어 윤리성에 대해서는 김옥조(2004), 「미디어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166-174, pp.296-302, pp.397-434, pp.469-495과 김우룡(2000), 「미디어윤리」 서울: 나남출판, pp.53-86, pp.163-170, pp.217-270, pp.285-314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비윤리적 취재 유형은 크게 금품수수,  
신문사칭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오보와 날조 및 표절 등으로 나눌 수 있어**

국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비윤리적 취재 · 보도에 대한 두 가지 조금은 상반된 견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 · 보도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인격적인 폭력이라고 할 비윤리적인 취재에 대하여 타율규제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윤리적 취재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와 같은 거악(巨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악(小惡)이라고 할 비윤리적 취재 · 보도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므로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강경론자의 입장도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취재원의 인격적 가치를 놓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비교형량해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경우를 통괄한 법적 · 윤리적 경계선 긋기가 가능하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는 만큼 비윤리적 취재 · 보도를 위의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의 시대적 윤리성에 맞는 상황별 그리고 사안별 비교형량(ad hoc balancing)을 하는 것이 건전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비윤리적 취재 · 보도를 근절하는 접근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 비윤리적 취재 · 보도 유형

### 1. 금품수수

‘춘지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우리 언론

계의 춘지관행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며 1996년 개정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요강에는 언론인의 품위에 대한 언급(강령 제7조)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실천요강 제15조)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5조 제1항에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무료 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를 명시한 제15조 제3항에는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가장 비윤리적이며 우리나라 언론계의 병폐인 춘지관행은 이즈음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 언론인들은 금품수수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또 정치적 밀월관계를 추구한 적은 없었나? 1996년 한국언론학회가 전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백 20명 응답내용분석) 결과 기자들의 ‘춘지 수수행위가 사라졌다’는 문항에 4.9%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6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바와 같이 춘지관행은 언론과 문학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되어왔다.<sup>2)</sup> 또한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언론연구원(현 언론재단)이 1998년에 언론 접촉이 잦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자영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복응답)조사에서, 신문구독 강요(80.5%)와 광고 강매(54.4%)에 이어 춘지 및 향

2) 한겨레, 1996. 9. 18.자. 손석춘, “문인들 ‘한국 언론 문제 많다’/언론학회 설문결과”.

응 강요(32.5%)와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요구(20.3%)가 직접피해의 유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sup>3)</sup>

오히려 이 시기에는 촌지 저널리즘을 대체할만한 '언론장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의 언론은 노골적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고, 그해 9월 <기자협회보>는 당시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부국장이 언론사 주요간부를 접촉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김영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언론장학생'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다.<sup>4)</sup>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검찰의 5·18 수사 과정에서 퇴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인들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조성한 수백억 원의 비자금 일부를 언론인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언론계는 자금수수 혐의자 명단의 공개를 검찰에 요구하였다. 조선일보는 1996년 2월 6일 『언론계 집단명예의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력에 협력한 언론인들의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전 씨의 '언론장학생'이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를 밝혀 언론 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언론들이 스스로 "집단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였다.<sup>5)</sup>

지금까지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두환 장학생, YS장학생 그리고 '위스키&캐시'로 회자되

는 박지원 장학생은 특정 정치인이 몇몇 기사를 자기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인에 접근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이는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는 물론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지 않은 언론인이 정치권 진입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보면 촌지 저널리즘이라고 할 '기능적 유착관계'가 '정치적 상응관계'로 발전(?)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정언유착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언론인들이 주요 정치인들과 물리적,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며 작성한 기사와 논평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객관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촌지수수와 참모역할 그리고 공천으로 이어지는 공생적 관계는 비윤리적인 취재·보도 관행의 전형이라 하겠다.<sup>6)</sup>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정년을 맞이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또 이러한 언론인이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정치와 언론의 비윤리적인 공생적 관계는 단절되기 어렵다고 본다.<sup>7)</sup>

정치인이 선거를 위한 정책홍보에 돈과 정성을 쏟

3) 한겨레. 1998. 9. 11.자. 이강혁, '절반 이상이 손 내미는 언론 직·간접 경험/언론 접촉층 피해 조사'.

4) 서울신문. 2000. 12. 20. 자. "부쩍 늘어난 언론 공작 사례/언론장악해야 권력 잡는다?".

5) 한겨레. 1996. 2. 7. 자. "일부신문 '전두환 언론장학생' 출신 검찰에 포화".

6) 문화일보. 1999. 10. 30. 자. 특별취재팀, "<언론문건 파문> 정-언 '비리 커넥션' 위험수위 넘었다".

7) 필자는 학위논문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메인 주제 살고 있던 제임스 러셀 위긴즈(James Russell Wiggins)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1950년대 초에 알권리 운동을 주도한 위긴즈는 벤 브레들리의 워싱턴포스트 전임 편집장으로 워싱턴포스트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한 인물로 평가된다. 케네디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던 위긴즈는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존슨 대통령 시절 유엔대사를 지냈고, 이를 두고 위긴즈는 매우 후회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의 우호적인 부고(訃告)보도와는 달리 경쟁사인 뉴욕타임스는 위긴즈가 비록 메인 주의 작은 도시인 엘즈워스(Ellesworth)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신문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언론인의 유엔대사직 수행은 진정한 언론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듯한 언급을 한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상(像)의 구현을 위한 치열한 비판적 기록정신이라고 하겠다.

###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징계조치 뿐만 아니라 징계의 결과까지도 철저히 공개해야

는 일은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적 교육정책인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신디케이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수적 흑인 방송인 암스트롱 윌리엄스에게 24만 1천 달러를 주며 방송에서 NCLB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하고 교육부 장관을 인터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윌리엄스는 흑인 방송인 단체인 ABF(America's Black Forum)를 통해 프로듀서들에게 NCLB를 정기적으로 다루도록 독려하며 방송인 스티브 하비를 설득해 교육부 장관을 방송에 두 번 출연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자신은 이러한 "거래"가 비윤리적으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자신은 NCLB가 옳았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뉴스가 정부 정책의 편을 들도록 언론인들을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밝힌 <USA투데이>는 물론 대다수 미국신문은 윌리엄스의 칼럼 게재를 중단하였고, 워싱턴포스트도 사실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윌리엄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망을 잃었고 향후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sup>8)</sup>

우리나라 방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외주제작

비리 의혹, 홍보성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받는 돈과 향응 등이 언급된다. 이러한 방송가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해 KBS 정연주 사장은 2003년 4월 취임사에서 "촌지를 받았다거나 돈과 관련된 불미한 이야기가 들리면 가차 없이 퇴출시킬 것"이라며 "비윤리적이고 부정한 사례에 관련된 분들은 스스로 KBS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사장이 취임한지 4개월 후, <TV, 책을 말하다> 담당 PD는 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하여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동행한 교수의 글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sup>9)</sup>

또한 2005년 8월에는 KBS 제작국 간부들과 PD들이 외주제작업체로부터 명절 때마다 선물과 상품권을 받고 '야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와 MBC 고위 간부들과 기자들이 인력송출업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MBC는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고액의 핸드백을 받았지만 윤리적 갈등 끝에 결국 돌려주었다는 이상호 기자의 고백과 아울러 'X파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는가에 대한 진위여부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관행이 밝혀지면 책임PD 또는 방송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감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조사를 진행시킨다는 보도는 있으나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은 기자와 간부들에 대한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8) 서울신문, 2005. 1. 10. 자. "부시 정부 '언론인 매수' 파문".

9) 경향신문, 2003. 8. 29. 자. "PD 외유성 출장 일파만파".

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정정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요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은 비윤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 결과도 반드시 보도함으로써 언론계 내부정화를 위해서는 물론이려니와 금품 및 향응제공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브로커나 홍보성 보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겠다.

촌지 저널리즘이 한 국가의 후진성을 나타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미국의 퍼듀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러시아 언론인 카테리나 체스우라(Katerina Tsetsura)와 노던 아이오아 대학의 딘 크루케버그(Dean Kruckeberg) 교수가 미국의 홍보연구소와 공동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사계재를 전제로 금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곳은 국민과 언론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언론인의 급여가 낮은 나라, 즉 중남미와 동유럽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사실 이 조사가 진행된 계기는 러시아의 한 홍보회사가 가전매장 개장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낸 뒤 12개 신문사가 기사계재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음을 폭로하는 함정 기사를 통해서 러시아 언론의 상당수가 철저히 부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sup>10)</sup>

기사계재를 전제로 돈이 결부된 사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2003년 7월 <미디어오늘>은 <월간중앙>이 굿모닝시티의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는 조건으로 1100만 원에 달하는 액수의 <월간중앙> 1년 치 구독료를 군과 관공서를 대신해서 지불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sup>11)</sup> 평소 <미디어오늘>과 같은 마이너 언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조선일보>는 양

측의 공방을 기사로 전하면서 “월간중앙 ‘굿모닝’ 돈 받고 기사 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월간중앙> 측은 해명서에서 <미디어오늘>과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나, <미디어오늘>은 굿모닝시티 내부문건과 <월간중앙> 관계자와의 교차 확인과정을 거쳐 기사화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직접 돈이 전달되지는 않지만 특정 단체 또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의 윤리적 측면도 새로이 생각해 볼 사안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논쟁에서 KBS <미디어포커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파병찬성의 입장을 보인 언론인들 중 몇몇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하와이에서 운영하는 한국 언론인 연수프로그램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진보적 성향의 양문석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시민의 신문>에서 이러한 언론인을 “노예근성”이 있는 “친미 언론 장학생”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전체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얼굴에 “떡칠”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sup>12)</sup>

향후 전방위적인 취재경쟁, 속보경쟁 그리고 특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기자들이 취재원과 정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비윤리적 취재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종군기자인 존 번스(John Burns)는 미국 기자들이, 그것도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취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리고 바그다드에 10일 이상 머무르는 기자들이

10)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Global Journalist>, 2003년 1호, 백민수(편역), “위기의 언론윤리/동유럽, 중남미 언론 ‘촌지가 광고비보다 경제적!’”,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4-17쪽에서 재인용.

11) 미디어오늘. 2003. 7. 23. 자. “굿모닝시티 돈 언론계 유입”.

12) 시민의 신문. 2003. 12. 13. 자. 양문석, “친미 언론 장학생과 왜곡 언론”.

## 금품수수에 대한 언론사 차원의 자율 규제를 넘어 보다 엄격한 타율적 방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에이즈 테스트를 면제받고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이라크군 장교들과 대사관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sup>13)</sup>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에는 기자들이 제공받는 촌지에 대한 자율적 금지조항은 있지만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3년 1월에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윤리강령에는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언론인 단체 또는 개별 언론사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개정강령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라고 하겠다.

금품 및 촌지수수에 대해 고(故) 팽원순 교수는 1992년에 발간한 <저널리즘 비평> 제6호에 기고한 “촌지와 법적규제의 문제”라는 글에서 촌지를 명절에 오가는 ‘떡값형’과 특정사건의 보도금지를 위한 ‘뇌물형’의 촌지로 구분하여, 수서사건 등에서와 같이 업체가 사건보도를 막기 위해서 기자나 언론사 간부들에게 주는 촌지는 촌지를 받은 언론인은 물론 촌지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법상의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의한 뇌물수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인에 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팽 교수는 “적어도 뇌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촌지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우리 언론을 병들게 해온 독소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요즈음 선거과정에서 10만 원이라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들은 당선에 무효화될 정도로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기사계재를 전제로 한 촌지수수는 물론이려니와 떡값형 촌지에 대해서도 윤리강령에 따른 언론사 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아니라 보다 엄격한 타율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sup>14)</sup>

### 2. 신분사칭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

국민, 즉 독자들의 알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언론인들이 행하는 비윤리적인 취재의 유형 중 하나는 신분사칭 취재 및 몰래카메라 사용이다. 신분사칭은 많은 기자들이 조금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정보를 요구했던 취재 방식인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신문 가운데서 가장 신생매체인 <굿데이>가 한 개그우먼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사 가운과 청진기 등의 소품을 준비하고 회진의사를 가장해 병실에 들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짜의사임이 탄로나 각서까지 썼지만 잠시 나눈 대화내용을 특종인양 보도함으로써 신분사칭이라는 취재방식의 비윤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sup>15)</sup>

13) <Editor&Publisher>, 2003년 12월 15일. 송은아(편역),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팔다/이라크전 중군기자들의 비윤리적 행동 폭로한 NYT 존 번스 기자”, <Media Worldwide>, 2004년 2월호: 42-45쪽에서 재인용. 유명인과의 인터뷰에 고액을 지불하는 전통을 가진 유럽언론들을 비판하였던 미국 언론들도 닉슨 전 대통령(CBS, 50만 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하였다고 주장했던 제니퍼 플라워스(타블로이드 대중지 Star, 15만 불) 그리고 로드니 킹 구타사건에 대한 소송 중에 돈을 받지 않고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LA 경찰 2명(도나휴쇼, 2만 5천 불 씩) 등에서 나타났듯이 특종과 방송의 시청률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14) 대법원 1991. 1. 15. 90도2257. (가수출연 청탁사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2002. 3. 21. (벤처기업 홍보 기사 작성사건).

15) 프레시안. 2003. 2. 14. 자. 이영태, “이경실 폭행사건이 가십거리인가/<미디어비평> 스포츠 신문들의 비윤리적 보도태도”.

현재 배아줄기세포 배양 및 논문작성에 관련된 연구자들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PD수첩>의 PD가 김선중 연구원을 인터뷰하면서 조만간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은 검찰과의 친밀한 관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 기자 자신의 위상을 검사의 그것과 거의 동일시하는 신분사칭의 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사칭의 문제는 다시금 윤리적 잣대의 눈금아래 위치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사실 신분사칭의 취재방식은 ‘폭로 저널리즘’의 역사적 측면에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우리가 상업적이고 원색적인 언론을 비난할 때 흔히 사용하는 ‘엘로 저널리즘’의 독특한 취재방식 중의 하나는 신분사칭이었다. 다시 말해 신분사칭은 기자가 정치·사회적인 강자의 신분을 사칭할 때만을 뜻하지 않고 청소부 또는 웨이터의 신분으로 엘리트들의 연회장에 들어가 이들이 어떠한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가를 취재하는데 종종 사용되곤 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였던 미국에서 그 당시 최상류 계급의 변호사인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렌다이스(Louis D. Brandeis)의 사생활도 신분을 속인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서 이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사생활 침해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인 반격으로 이들은 그 유명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논문을 1890년 하버드 법 학지(Harvard Law Review)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론 스미스(Ron Smith)는 신분사칭형의 취재에는 ㉠ 비리를 폭로하려고 사건을 연출하는(staging events) 능동적 속임(active deception)과 ㉡ 자신이 기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지 않는 수동적 속임(passive deception) 그리고 ㉢ 다른 지위의 사람인 것

처럼 가장하기(masquerading)로 구분하였다. 1890년대 정신이상자로 행세하며 “정신병동에서의 10일”이라는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한 넬리 블라이(Nellie Bly)는 최초의 사칭형 잠입취재 기사로서 두 번째의 유형이고, 1973년 선거감독원 행세를 하여 선거부정을 폭로한 기사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경우는 세 번째 유형의 신분사칭이며, 시카고 선타임즈의 두 기자가 1979년 미라지(Mirage)라는 술집을 인수하여 시카고 시의 공무원들과 회계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탈루한다는 기사와 사진을 4주간에 걸쳐서 게재한 것은 첫 번째 유형이겠다.

스미스는 이 3가지 유형 모두 미국에서 거의 100년 동안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는데 사용되었지만 1979년 미라지 시리즈 기사가 사칭의 비윤리성 때문에 폴리처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1982년의 잠입취재 기사 또한 수상하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1990년 초에 이르러서는 위의 3가지 형태의 신분사칭형 취재관행은, 몰래카메라의 취재형태로 방송에는 유행하게 되지만, 적어도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폭로하는데 있어서 기자가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사회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이 두 시리즈 기사에 폴리처상을 수여하지 않은 폴리처상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이러한 신분사칭 기사에 대해 상을 계속 수여할 경우 향후 신분사칭이라는 비윤리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지난 일 년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주재하는 40명의 신문·방송기자들이 인터넷신문 <평화뉴스>에 “기자들의 고백”이라는 자성적 연재물에 참여하였고, <영남일보> 유명철 편집국장의 “지도

16)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Ames: Iowa State University, 1999, pp. 213-220.

‘하급자 윤리학’과 ‘윤리 타임아웃 제도’ 등을  
 통해 사칭취재의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층에 소금을 뿌려라”라는 글을 끝으로 최근 마치게 되었다. 유 편집국장은 자신의 대학교 신문 대선배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1961년 5·16 직후 그 선배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총장실에 미리 들어가 총장이 교내 상황과 교수들의 성향을 군 요원에게 보고한 사실과 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좌중을 전율하게 한” 취재담을 소개하였다. 비록 기사화 되지 않았다고는 하는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청소부 복장으로 잠입하여 취재한 것이므로 이 또한 사칭의 한 유형이라고 보겠다.

사실 <평화뉴스>의 “기자들의 고백”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한국일보> 전준호 기자의 “기자의 사칭은 무죄?”라는 자성적 글이 실리고 나서이다. 자신의 글에서 전 기자는 사칭이 자신이 배우고 체득한 취재방식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비윤리적이라고 응변하고 있다. 론 스미스의 분류로는 ‘가장하기’에 속하는 전 기자의 고백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녹취 중인 테이프의 내용을 취재한 녹취사무소에서 경찰사칭과 윤리적으로 반성할만한 칠순 노인으로부터 ‘변사자 사진 구하기’의 형사사칭 일화가 담겨있다. “기자라고 하면 경계심을 갖다가도 권력기관을 사칭하면 쉽게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분위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칭이] 습관화” 되었다는 전 기자의 고백에는 기자의 신분사칭이 “취재편의”를 위해 “기자로 있는 동안에는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 것이다.<sup>17)</sup>

우리나라 개별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사칭취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2조

제1항에는 취재를 위한 사칭과 위장 및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여 기자 자신이 상황별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윤리적 사칭취재가 어떠한 정도의 사회적 비리를 파헤쳐 공익에 이바지해야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은 음식·여행 담당 기자가 식당 및 숙박시설을 취재하는 경우와 같이 기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수동적으로 취재대상을 속이게 되는) 경우의 신분 위장적인 취재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기자가 무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취재하는 경우와 같은 위장취재는 허용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형태의 ‘사건연출’ 방식 또는 ‘가장하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하급자 윤리학’(low power ethics)과 ‘윤리 타임아웃’ 제도는 사칭취재의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겠다. 1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후 현재 웨스턴미시간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크리스티안(Sue Ellen Christian)이 제기한 ‘하급자 윤리학’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저널리즘 윤리학 교과서들이 다루는 윤리적 문제들이 지나치게 편집국 고위 간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신입 및 초년병 기자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윤리적 결정에 필요한 대답은 찾기

17) <www.pn.co.kr> 사이트의 우측 하단부 배너에 개별 “기자들의 고백”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들을 수집하고 또 가정해서 일선 기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또한 ‘윤리 타임아웃’은 기자와 데스크가 사안별로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담당기자와 데스크뿐만 아니라 편집국 내에서 상시적으로 누구라도 ‘윤리 타임아웃’을 신청하면 주위의 동료들이 진지하게 취재·보도상의 윤리적 측면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윤리적 취재를 위한 사전점검 제도인 ‘윤리 타임아웃’은 우리나라의 상명하복적인 (언론계) 문화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칭취재의 윤리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 볼 수도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sup>19)</sup>

‘윤리 타임아웃’ 제도는 향후 방송의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윤리적 판단도 언론사 내부의 토론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몰래카메라의 ‘몰래’라는 말이 의미하듯 몰래카메라의 사용 또한 사칭취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위의 3가지 유형의 사칭취재보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욱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취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취재원의 사생활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견 방송 프로그램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 제작자

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의 경우 오락성 프로그램은 물론이려니와 사회고발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출동〉, 〈시사매거진 2580〉 등에서 몰래카메라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초상권 및 사생활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2004년 6월 기존의 방송심의규정 제19조 제3항의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를 “흥미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비리고발과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 것이며, 과도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사용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은 방송위원회가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몰래카메라 사용에 따른 법적 이슈들은 초상권 및 사생활권 침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무단침입 또는 위장취업인 경우에는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장취업 등의 사칭취재를 당한 업체나 몰래카메라 또는 녹음기에 녹화 및 녹음된 취재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sup>20)</sup> 그러나 미국의

18) 〈Quill〉 2003년 4월호. 천세익(편역), “위기의 언론윤리/윤리교육, 신입 기자 눈높이 맞춰 실용성 강화해야.”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9) 김종수(편역), “‘윤리 타임 아웃’과 ‘스탠더드 에디터’ 운영.” 〈Media Worldwide〉, 2005년 6월호: 24-27쪽.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8. 7. 선고 (신입생 환영회 보도, 초상권 및 촬영거절권 침해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음성변조 및 모자이크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취재원의 신원노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언론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바이올린 교수 개인 교습실 내의 불법레슨 보도 사생활권 침해판결); 2005년 초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패스트 푸드점에 위장취업한 뒤 문제점을 기사화하였지만 그 패스트 푸드점은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설원태, “취재기법과 언론윤리”, 〈기자협회보〉, 2005년 8월 31일.

### 몰래카메라 사용에 앞서 정당성과 대체 수단 여부 등을 먼저 고려해야

경우 권위 일간지들이 사칭취재를 자제하기 시작할 시점인 1990년대 초부터 방송에서의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보편화(?)되었고, 1997년 위장취재 및 몰래카메라 사용의 방법으로 식품체인점 '푸드 라이온(Food Lion)'이 유효기간이 지난 고기를 판다는 사실을 보도한 ABC 방송의 충격적인 보도를 기점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보도의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다. 푸드 라이온이 A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인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이 5백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벌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더욱 국민적 관심을 끈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고등법원인 순회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확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무효화시킨 이 사건의 최종판결에 의하면, ㉠ 위장취업을 사기(fraud)로 볼 수 없으며, ㉡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약속이행 의무(duty of loyalty)를 파기한 것이고, ㉢ 약속이행 의무를 파기한 것은 식품체인점을 들어가기 위한 기자의 동의(consent)를 무효화한 것이므로 무단침입(trespass)죄를 범한 것이며, ㉣ 수정헌법 제1조는 사기나 약속이행 의무파기에 대한 배상을 금하는 정도까지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 푸드 라이온 식품체인점은 (비록 주가가 폭락하고 고객이 현격히 줄었지만) 뉴스 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1)</sup>

'푸드 라이온' 사건의 판결문에 언급된 유사사건의 판결을 보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

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취제한 정보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언론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취할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향후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몰래카메라 사용에 따른 문제는 5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해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첫째, 단순히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였는가? 둘째, 비리를 폭로한다는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셋째, 사생활권 침해는 없었는가? 넷째, 취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다섯째, 보도될 내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취재 전에 이러한 질문을 기자와 PD들 자신이 던져봄으로써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본다.<sup>23)</sup>

'푸드 라이온' 판결에서 도출한 기준과 스미스의 자문적 점검요목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취재의 한 유형이라고 할 '털킹'(lurking)에 대한 윤리성 및 적법성을 따지는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털킹이란 도청과 비슷한 형태로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채 대화방이나 토론 포럼

21)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ABC, Inc., 194 F.3d 505 (1999).

22) 방송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 재연프로그램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방영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때 그 당위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총괄적으로 (categorically) 규정할 수 있겠다.

23) Ron F. Smith, *Groping for Ethics in Journalism*, pp. 220-226.

또는 뉴스그룹에 가입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방이나 토론 포럼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대화내용이나 의견을 외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생활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대화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사에 인용하는 행위는 언론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초조사나 취재 대상이 공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지닌 인물이나 집단일 경우엔나 링크를 통한 취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을 취재하기 위해서 요즈음 인터넷을 통해 매우 다양한 소스로부터 더욱 신속하고 쉽사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만큼 링크를 통한 취재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 또한 언론사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sup>24)</sup>

### 3. 오보와 날조 및 표절

오보란 보도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과 다른 보도를 뜻하고, 날조는 오보에 더해 작성자의 '고의성'에 의한 "작문성 오보"를 뜻한다. 또한 표절은 남의 기사나 사설 등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훔쳐 쓰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보도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비교적 쉽고 분명하게 내릴 수 있다.<sup>25)</sup> 날조와 표절은 데스크에 기사를 송고

하기 전까지의 단계인 작성시기부터 그 동기(motive)가 지극히 비윤리적인 보도행위라는데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단순오보의 경우에는 그것도 편집 또는 인쇄나 방송 단계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취재단계의 윤리성 유무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에 대한 언론사 내의 엄격한 윤리강령과 그에 따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가 날조 및 표절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날조보도의 대표적인 사례인 <워싱턴포스트>의 Janet Cooke(제넷 쿡)이 날조한 '지미의 세계(Jimmy's World)'와 <보스턴글로브>의 패트리샤 스미스(Patricia Smith)가 자신의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 및 인용을 조작한 것과 같은 날조보도는 보도되는 기사 자체가 허구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 구체적인 당사자는 독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날조보도를 작성한 기자 자신과 이러한 보도를 냄으로써 인하여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해당 언론사가 된다. 또한 통신사 기사의 내용을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바이라인(by-line)을 달아 보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표절보도의 경우, 그 피해자는 표절을 당한 원저자와 표절을 한 기자 및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 국한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날조와 표절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기자와 편집간부를 해임시키고 정정보도를 게재함으로써 날조와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반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sup>26)</sup>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동안 표절에 대해 비교적

24) "Digital Dilemmas: Ethical Issues for Online Media Professionals," <Online Journalism Review>, 2003년 10월 1일, 홈페이지. 홍수원(번역), "언론인, 대화방 내용 몰래 엿볼 수 있다? : 언론인 취재도 언론윤리기본원칙 지켜야," <Media Worldwide>, 2003년 12월호: 7-10쪽에서 재인용.

25) 김옥조(2004), 앞의 책, p.203: p.219.

26) NBC 방송의 GM 픽업트릭 결함 조작보도 사건의 경우에는 날조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GM이었다. GM은 NBC가 성의 있는 사과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였고, NBC 뉴스의 고위 간부들과 사장은 이 날조보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조작보도의 비윤리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NBC가 이들에게 사퇴보다 더욱 엄격한 형태인 해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설원태, "미국 언론보도의 정정 메커니즘," <저널리즘 평론: 오보>, 한국언론재단, 2003년 1호: 175-215쪽.

표절, 날조, 오보 등은 언론인과 언론사  
양측에게 신뢰성 상실 등의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 외국 언론사들에 비해 기자 수는 적는데 메워야하는 지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고 최소한의 확인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다보면 표절보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표절 의혹이 일더라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대충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 언론도 신뢰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쌓아야 한다고 인지하면서 이제는 표절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2005년 9월 28일자 신문 2면에 실은 “기사 표절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표절이 “중대한 잘못”임을 시인하고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표절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문책하는 한편 취재와 기사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쏟겠다”고 하였다.<sup>27)</sup> 이보다 앞서 <문화일보>도 표절기사에 대해 사과문을 제1면에 게재하면서 “엄중한 문책”과 “출고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은 개별 언론사의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와 표절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해 우리 언론이 통렬하게 자각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우리 언론(학)계는 표절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수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켜야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표절에 대한 언론사 내의

징계는 표절한 기자의 해고는 물론 편집간부들이 경질되며 심지어는 최고책임자가 사퇴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날조보도와 표절과는 달리 오보는 그 사례가 다양하고 그 피해 또한 더욱 광범위하며 막대하다. 김옥조에 따르면, 오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내리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하게 되며, 심지어 [관동대지진 때 경우와 같이] 수많은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기도 한다. 오보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밝혀져서는 안 될 사생활의 공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sup>30)</sup> 인터넷 언론과의 속보 및 특종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던 1999년에 언론연구원(현 언론재단)이 오보의 원인에 대해 703명의 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오보는 ‘사실관계 미확인’이 61.7%, ‘기자의 실수 및 부주의’가 22%, ‘구조상의 제약’이 11.7% 등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오보의 원인에 대한 순위는 오보에 대해 각 언론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어느 정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미확인’이나 ‘기자의 실수 및 부주의’에 의한 오보는 언론사 내의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오

27) “기사 표절 사과합니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8일, 2면. 기사가 아닌 사실의 표절로 논설위원이 경질된 경우는 2001년 4월 <한겨레>와 2004년 5월 <경향신문>의 경우가 있다.

28) 문화일보, 2005. 9. 25. 자. “‘기사표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9) 한국일보, 1991. 7. 20. 자. “표절 물의 일 공동통신 사장 사임”. 아사히신문의 날조기사 게재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의 현직 사장뿐만 아니라 전직 사장 겸 임원상담역을 맡았던 일본신문협회 회장까지 사퇴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적인 인사교체가 진행된다. 한국일보, 2005. 9. 9. 자. “일 언론의 오보반성”.

30) 김옥조(2004), 앞의 책, p.221.

31) 한국언론재단(1999), 「한국의 언론인」, 서울: 한국언론재단, p.84.

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제조치가 있다.<sup>32)</sup> 그러나 오보의 방지를 위해서는 언론사 내의 엄한 징계 조치와 아울러 제도적인 점검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보에 대한 언론사 내의 징계조치는 엄격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보의 주된 원인인 '사실관계 미확인'에 의한 오보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 언론의 경우 가장 최근의 오보사례의 피해자(?)는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서 85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밀러(Judith Miller) 기자이다. 밀러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85일 동안은,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1977년부터 <뉴욕타임스>에서 국가안보 탐사전문기자로 2002년 풀리처상까지 수상한 밀러는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흘리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라크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자신이 받은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에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다른 언론매체도 아닌 자신이 소속된 <뉴욕타임스>에서 받아 결국에는 기자

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임사유를 밝힌 글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자신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했다.<sup>33)</sup>

미국에서 오보에 따른 기자의 징계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의 오보사례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폭스뉴스가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매니큐어 칠하기를 즐기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C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 II>(60 Minutes II)의 부시 대통령의 병역특혜 논란 보도이다. 두 보도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폭스뉴스는 “악의보다는 [기자의] 피로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기사가 웹사이트에 올려 졌다고 정정보도문에서 밝히면서, 그 기사의 책임자인 정치부 수석기자인 칼 캐머론(Carl Cameron)을 징계했다고 밝혔다.<sup>34)</sup> 또한 CBS의 경우에는 CBS 저녁뉴스의 간판 앵커이자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댄 래더(Dan Rather)는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만 하였으므로 CBS 저녁뉴스 앵커자리만 내놓는 상징적인 징계를 하였지만, 보도와 관련된 최고 간부급 인사 4명은 즉각 해고시키는 중징계를 취하는 조치로 오보에 대처했다.<sup>35)</sup>

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에 관한 방송사의 정치적

32)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사와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업자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보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제24조), 중재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고 하였다. 물론 오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26조), 재판부는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제27조 제1항,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향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오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33) 한겨레, 2005. 11. 11. 자. “‘리크게이트’ 밀러 기자 결국 사직”.

34) 박재현(번역), “폭스뉴스, 케리후보 발언 조작기사 정정보도”, <Media Worldwide>, 2004년 11월호: 4-5쪽.

35) 홍수원(번역), “CBS, 부시 병역특혜 논란 보도와 관련 사과”, <Media Worldwide>, 2004년 11월호: 6-9쪽. Jacques Steinberg and Bill Carter, “Placing Blame: The Overview: CBS Dismisses 4 Over Broadcast on Bush Service”, <New York Times>, Jan. 11, 2005.

신속한 정정보도와 자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오보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

편향성을 드러낸 오보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보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미국 언론(학)계가 인식하는 바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언론학부 카펠라 교수와 제이미슨 학장은 특히 정치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가되는 것은 정치에 관한 정보를 경쟁 전략적 보도(strategic reporting)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경쟁 전략적 보도는 선정적 보도(28%), 편향적 보도(22%) 그리고 오보(15%)로 인식되어 언론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러니와 대중의 정치에 대한 냉소감(cynicism)과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까지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오보는 물론 날조 및 표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언론사 내에 구축할 것인가? 우선 시걸위원회의 보고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걸위원회 보고서(Siegal Committee Report)란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자 제이슨 블레이어(Jayson Blair)가 다른 신문 기사를 표절하거나 가공의 취재원을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자 블레이어는 물론 담

당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사직한 후, 편집부국장인 앨런 시걸(Allan Siegal)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와 기사 심의기준 그리고 편집국 문화의 3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sup>37)</sup>

시걸위원회 보고서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뉴욕타임스>가 취한 3가지 시스템적 변화들을 살펴보면, 첫째, 비보도 보장성(off-the-record) 인터뷰와 익명의 취재원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익명취재원에 의거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데스크에는 알려야한다.<sup>38)</sup> 둘째, 표절기사는 편집국 내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sup>39)</sup> 일선기자들과 편집간부 및 경영진과 “신선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기사와 논평을 분석·비판하고 정기적으로 지면을 통해 활동을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 편집인(public editor)의 활동과<sup>40)</sup> “취재 과정의 청렴성”과 “윤리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기준감독 편집인(standard editor)의 활동을 적극 독려한다.<sup>41)</sup> 셋째,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인 사항까지 개정하여 일선기자들이 취재할 때 즉각적으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

36) Joseph N. Cappella & Kathleen H. Jamieson,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10.

37) 동아일보, 2005. 5. 11. 자. “뉴욕타임스 ‘익명 취재원 줄이겠습니다’ ... 독자 신뢰회복방안 발표”.

38) <Editor & Publisher>, 2004년 5월호. 이종욱(편역), “자체점검 수준 강화하는 NYT, WP, USA투데이: 편집인에게 익명취재원 고지 의무 부여” <Media Worldwide>, 2004년 7월호: 13-17쪽에서 재인용.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 쿠란트(<The Hartford Courant>) 신문사의 경우, 사설-여론면(Op-Ed)에 대한 새로운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여 주립대 총장이 기고한 칼럼이 표절되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16쪽).

39) 백병규(편역), “뉴욕타임스 기자표절 - 편집국 의사소통 부재가 주원인”, <Media Worldwide>, 2003년 6월 호: 4-9쪽.

40) 조선일보, 2004. 7. 14. 자. “NYT, 외부영입 공익편집인제로 신선한 긴장”. 공익편집인으로 인해서 “신선한” 긴장이 아닌 갈등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있다. 동아일보, 2004. 7. 4. 자. “NYT 공익편집인, 신문체면 살리라니까 되레 칼질”. 안기택(편역), “마이니치 ‘열린신문위원회’ 내외부 반향 커: 파격적인 독자비판 수용, 반영 등”. <Media Worldwide>, 2004년 7월호: 8-12쪽에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도입한 열린신문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41) 김종수(편역), “‘윤리 타임 아웃’과 ‘스탠더드 에디터’ 운영: 미국 신문기사 조작사건 후 변화된 편집국”. <Media Worldwide>, 2005년 6월호: 24-27쪽.

면 개정된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은 “취재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25달러(3만원) 가치가 넘는 선물·티켓·할인권·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떡값형’ 춘지의 상한선까지 제시하는 등의 구체성을 갖추었다.<sup>42)</sup>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행정 각 부처는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망라해 청와대에 보고하되 오보성 기사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사안별 대응조치 내용도 함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sup>43)</sup> 청와대가 지나치게 언론의 비판을 오보라고하며 사사건건 언론중재 및 소송에 치중한다는 비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청와대가 언론 오보의 피해자를 차치하며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44)</sup>

오보구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속한 정정보도이다.<sup>45)</sup> 인쇄매체의 경우 가급적 오보가 나간 지면이나 위치에 그리고 방송뉴스의 경우에는 오보가 된 이슈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방송을 시작하며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론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는 그 주체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사과의 뜻이 담겨야함은 물론이다. 오보에 의한 정정보도를 자주 낸다는 것은 기자 개인에게는 감봉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sup>46)</sup>

궁극적으로는 오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개별 언론사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47)</sup>

### III. 소 결

신문윤리강령, 기자협회 윤리강령, 방송프로듀서 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등 외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잘 갖추어진 윤리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계속해서 취재윤리 위반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언론(계) 전체가 비난과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를 거치며 인권의 확장적 개념의 발전에 근간이 되었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이제 적어도 신문의 기사와 방송의 프로그램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가치와 상충되게 되었다. 단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지고(至高)의 가치라서가 아니라 타율적 규제가 없는 소극적(부정적) 의미를 가진 “freedom from(government restraint)”적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적극적(긍정적)인 뜻을 내포한 “freedom for(democratic self-government)”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accountability)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취재 및 보도의 윤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괄적인 기준(categorical standard)을 정하는 일은 가

42) 기자협회보, 2003. 6. 30. 자. “가혹한(?)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 미디어뉴스, 2003. 7. 8. 자.

43) 김옥조(2004), 앞의 책, p.222.

44) 최영재·김남두, “언론의 오보·편파보도 생산구조” <저널리즘 평론: 오보>, 한국언론재단, 2003년, p.75.

45)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오보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천요강 제10조 제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46) 우승용(편역), “‘오보 많으면 감봉’: 언론윤리 극복 방안” <Media Worldwide>, 2003년 8월호: 46-50쪽.

47) 강명구·양승목·염기열(2001), 「한국언론의 신뢰도: 위기 현황분석과 극복 방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비윤리적 취재 · 보도행위가  
자신들은 물론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윤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 · 상황별로 비교형량(ad hoc balancing)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비교형량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철)학자(ethicist) 시셀라 보크(Sissela Bok)가 제안한 3가지 단계의 고려할 사항은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어떤 취재행위가 정당한가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취재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상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윤리 타임아웃’과 비슷한 형태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가능한 한 취재 · 보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자로서 자신의 행동이 취재원들이나 자신의 동료 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크가 비록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3단계의 성찰과정을 거치게 되면 취재 · 보도에 대한 윤리성 점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sup>48)</sup>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점검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취재윤리 제고를 위한 보크의 조언은 “회황찬란한 윤리강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쟁매체보다 앞서 보도하거나 특종 기사를 쓰는 일이 언론윤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와 항상 병행되는 환경을 언론사 고위간부와 경영진이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9)</sup>

언론인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인이든 진보적 성향의 언론인이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취재 · 보도 행위는 자신들은 물론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율적 규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재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와 보도의 단계에서는 물론 판매부수 또는 시청률 경쟁의 전략을 구상하는 경영적 측면의 단계에서도 자체적 윤리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윤리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8) Sissela Bok,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Random House, 1978. 필립페터슨 · 리 윌킨스, <언론윤리: 이론과 실제>, 장하용(역), 동서학술서적, 2000년, 20-24쪽에서 재인용.

49) Kelly McBride, <Poynter Ethics Journal>, 2003년 5월 1일자 포인터연구소 홈페이지. 신윤진(편역), “미 솔트레이크 트리뷴 기자 돈 받고 취재원 정보 팔아” <Media Worldwide>, 2003년 6월호: 10-13쪽에서 재인용.

#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 (I)

윤길용

MBC 시사교양국 부장

- 고려대 영문학과 및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졸업
- MBC 「PD 수첩」 창설 멤버 및 담당 PD 역임
- PD 연합회 '올해의 PD상', 엠네스티 인권상 등 수상
- 「소쩍새 마을의 진실」, 「대순진리회를 아십니까」, 「이단시비, 목자님, 우리 목자님」 외 다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 진실보도와 취재윤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타협을 한다면 프로그램도 역시 타협처럼 되고 만다”.

미국 CBS의 <60분>(60Minutes)의 책임 프로듀서인 돈 휴이트의 말이다. 긴 시간에 걸쳐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면, ‘이것도 들어가야 하고, 저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타협이야말로 바로 휴이트의 첫 번째 금기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시사교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 말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서 시작된 언론의 취재윤리 문제로 온 사회가 뜨겁다. 이중 특히 취재현장에서 취재원에 대한 강압적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sup>1)</sup>이 주요 논란거리다.

흔히 강력사건에서 ‘현장은 사건 해결의 보고’라고 말한다. 그만큼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고발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취재윤리만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고발프로에 등장하는 주인공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며 권력과 자본력을 지닌 기득권층이자 파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나 잘못 했소’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게 현실이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힘든 작업일지도 모른다.

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국민도 인격권 보호에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걸까? 단지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

1) 이를 ‘은폐적 취재방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 언론의 가장 기본임무인 사회비리 고발시 취재윤리에 반하는 상황 생길 수밖에 없어

가?’라는 의문을 품은 채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알권리라는 것도 언론인 자신의 위법사실을 변명하려는 궁색한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에게 고발프로, 탐사보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수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라는 표현이 옳다. 취재기법을 직업적 탐정의 수사기법에서 원용하나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진실추구라는 명분이 좋더라도 가명취재나 잠행취재는 예외적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sup>2)</sup>

강압취재는 취재 시 상대방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로 공포감을 줘 강요된 답변을 이끌어내는 취재방법으로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정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법원도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지 않은지 오래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피의자의 위치에 설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내용, 이를테면 상습적인 아동 성학대범이나 파렴치범을 다룰 때 취재진 스스로 감정을 조절 못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개연성은 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강압취재로 얻은 취재물이 방송된다면 이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당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일 뿐이다. 또한 취재진이 원래 추구했던 진실마저 밝히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관한 논란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취재윤리와 진실추구라는 이율배반적 요소, 언론의 가장 기본임무인 사회비리

고발의 경우 취재윤리에 반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 양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절차가 비윤리적이라면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벤담이나 J. S. 밀 등이 주장한 공리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경우 언론의 취재윤리에 대해 절대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sup>3)</sup>

그간의 취재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 두 가지 의견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인간의 어느 한 모습을 보고 전체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편이다.

### ‘보다 중요한 도덕적 명분’이 전제조건

몰래카메라 취재에 의한 논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2년 11월, 미국 ABC의 인기프로그램인 「프라임 타임 라이브」(Prime Time Live)에서 보도한 ‘푸드 라이언’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대형 체인점인 ‘푸드 라이언’이 유효기간 표시를 고쳐 유효기간이 지난 고기를 판다는 정보를 입수해 자사의 기자와 PD를 ‘위장 취업’시켜 이 회사에 들여보낸다. 이들

2) 한겨레 2005. 12. 6.자. 김영호, ‘피디수첩만의 문제가 아니다’.

3) 연합뉴스 2005. 12. 6.자. 이영섭, [저널리즘의 위기] 고발기능 없앨 썬인가’.

은 유효기간 표시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에 그대로 담았고 「프라임 타임 라이브」는 특종보도를 하게 되었다.

전 미국이 발각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미 전역의 '푸드 라이언' 체인점에는 시민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으며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푸드 라이언'은 오히려 ABC를 사유재산침해로 고소했고 주법원은 5백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ABC가 배상하라며 '푸드 라이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몇 년에 걸친 엇치락뒤치락 재판 끝에 연방대법원이 ABC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 줌으로써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다.

몰래카메라의 취재기준을 정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ABC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도덕적 명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언론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sup>4)</sup>

## 실제 취재 사례들

### 〈사례 1〉 소쩍새 마을의 진실

1995년 5월, 치악산 자락의 강원도 원주 관부면 금대리. 사방은 천지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치악산의 위용이 취재진을 압도하고 있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30여 분 차로 달리자 인적이 끊어진 채 초여름이 무색할 만큼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어둡고 나타난 소쩍새 마을. 200여 명의 정신지체아, 미혼모, 치매노인 등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한 스님의 보살핌아래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어는 봄,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려 밤에 애를 업고 밖으로 나왔지요. 마침 뒷산에서 우는 소쩍새의 소리와 엄마를 그

리는 아이의 울음이 묘한 대조를 일으켰어요. '저 말 못하는 새도 엄마를 그리워 하는데 너도 그렇구나' 하구요. 그래서 이름을 소쩍새 마을이라고 지었지요”. 아빠스님으로 불리던 원장은 취재진을 참 만나던 날 이렇게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며 감격으로 다가왔다.

차가 입구에 멈추자 낯선 사람을 만난 것이 신기한 듯 원생들이 차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부자연스런 몸짓의 맑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오몸으로 기쁨을 표시하고 있었다.

‘침착하자, 당황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며 나는 8mm카메라를 힘주어 쥐었다. 며칠 전 소쩍새 마을의 자원봉사자라는 젊은이들이 제보해 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 ‘제2의 원효’라고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안에서 겪은 아빠스님은 두 얼굴을 지닌 파렴치한이라는 것이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우선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언론에 나타난 아빠스님의 활약은 위대하였다. ‘살아있는 생불’이라며 거의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하였고 울기조차 잠지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찬사로 그를 칭송하였다. 방송은 또 어떠한가? 오히려 한술 더 뜯 정도였다. 공중파 방송 한군데는 아빠스님을 1시간짜리 대담프로에 초대하여 미화시켰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내가 하는 걸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는데 있어 더 조심하지 않을까?’ 라고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또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해 ‘부처님오신 날 특집’으로 소쩍새 마을을 1년간 취재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엄청났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만들었던지 심지어 당시 나의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보았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언론의 홍보 덕분에 소쩍새 마을은 원장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원주에서 어떤 기업보다 현금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한 번씩 들르는 순례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특종은 제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요즘과 달리 당시의 제보는 인터넷보다 전화나 편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팀 내에서도 전화를 친절하게

4) 경향신문 2004. 8. 3.자. 김동률, 「「몰카」금지하는 취재제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검증을 통해  
사건 윤곽 파악 후 본 취재에서 상대방의  
비리를 밝혀

받거나 철자법이 틀린 편지라도 소홀하게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불문을처럼 내려왔다.

이 날 소쩍새 마을에 간 것은 제보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차 내려간 것이다. 소쩍새 마을에 가기 전 1차로 원주시내에서 우리에게 제보했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녹화해두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비리를 폭로할 경우 제보자가 100% 순수하게 혹은 정의감이 투철해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깊게 들어 가보니 이 자원봉사자들도 원장의 비리를 알고 난 다음 이를 근거로 약간의 거래(?)를 제안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제보를 했던 것이고 결국 필자에게 온 것이다.

전날 알아본 자료와 제보자의 인터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쩍새 마을을 찾았다. 어쩐 일인지 원장스님은 그날 자리에 없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대신 맞았다. 필자는 “「인간시대」 주인공으로 원장스님을 촬영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해간 명함을 전달했다. 당시 「인간시대」는 휴먼다큐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다뤄 인기가 높아 방송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명함에 「인간시대」팀에서 일하고 있음이 적혀있었고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탄로나지 않도록 사전에 동료들에게 부탁도 한 상태였다.

어떤 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취재를 맞추어간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검증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비리를 완전히

게 확신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본 취재에서 밝혀야 될 사안일 것이다.

며칠 후, 연락을 하고 다시 소쩍새 마을을 찾았을 때 원장스님은 우릴 반겼고 의심 없이 촬영에 임하였다. 원장이 있을 때는 휴먼다큐로 촬영하다가 그가 자리를 비우면 비리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신지체가 많아 많다보니 인터뷰도 쉽지 않았고 비밀을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원장은 제작진을 의심하였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정체(?)를 밝히고 취재의 목적과 불가피함을 설명해야만 했다. 만일 이 기간 중에 제보의 신빙성이 허위거나 실제로 취재현장에서 비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했을 것이다.

취재 중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원장스님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정신지체아를 태우고 새벽에 서울의 병원으로 달렸는데 하필이면 그 시각 소쩍새 마을엔 비상이 걸렸다. 원생들의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순간 남아있던 취재진은 숙소에서 빠져나와 테이프를 들고 산으로 숨기도 했다. 정식 ENG카메라와 8mm카메라 수대가 촬영에 동원되었다.

취재진이 밝힌 내용은 아빠스님은 전과 7범이나 되는 되다가 정식 계를 받지 않은 무자격 승려였다. 그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해 부인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술에 취하면 원생들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수시로 일삼아 왔음도 사실로 드러났다.

취재 중 그는 원생들을 방송국에 풀어 놓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급기야 자신이 기(氣) 전문가라며 ‘너 하나 썸 죽일 수도 있다’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결국 수십 년 간 그토록 언론을 좋아하던 원장스

님과 이를 미화하며 이용했던 언론에 의해 그의 실체가 벗겨진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방송 후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빼돌려 달아났고 이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추적당해 결국 국내로 압송, 사법처리 되면서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사례2〉 OO 도사를 만나다

“OO도사는 지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을 취재해주세요”. 1997년 3월 한 중년부인이 제보를 했다.

OO도사가 누구인가?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1인자로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일약 유명세를 탔으며 전직 대통령들과 장관, 국회의원들의 조상과 관련하여 묘지를 봐주는 지관이 아니던가? 전직 모 대통령은 자신의 조상의 묘 터를 부탁해 이장했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선거 전 부모의 묘소를 옮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도사는 중국 등소평, 대만의 장개석 총통 심지어 일본 왕의 어머니 묘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줬다고 했으며 월간지들은 이를 대서특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 OO도사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제보내용인즉, 이 부인의 남편이 고위공무원인데 승진에서 미끄러지자 우연히 OO도사가 쓴 책을 읽은 부인은 남편의 실패가 혹시 자신이 충청도에 갖고 있던 수십만 평의 산 때문이 아닌가 싶어 OO도사를 찾았는데 도사는 ‘그 산에 귀신이 썩워 그러니 산을 처분해야 남편이 성공한다’며 매매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매가 되지 않자 결국, 부인을 부당하게 피어 산을 헐값에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당시 필자 본인은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노출의

위험으로 직접 갈 수 없었다. 결국 「PD 수첩」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가 도사를 만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식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대해 취재한다”고 연막을 친 후 도사에게 접근, 취재를 할 수가 있었다.

인터뷰 경험이 많은 도사도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고발프로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과는 취재방법이 다를 수밖에. 의심을 품던 도사는 ‘정체가 뭐냐’며 취재진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PD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 촬영감독에게 화살을 돌렸다.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촬영감독은 걸으론 도사에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촬영은 해야 하는 강심장을 필요로 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다시는 이 프로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취재를 해보니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OO도사에게 가족의 묘지를 부탁해왔음이 밝혀졌다. 도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 과장 왜곡하였으며 언론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의 허명을 대서특필 선전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OO도사가 외국인수들의 묘를 봐줬다는 얘기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지금도 해당국 대사관에 팩스를 넣어 진위여부를 확인했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대사관 직원들을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을 잊을 수가 없다.

### 〈사례 3〉 H 교주를 만나다.

1997년 10월, 경찰청 특수기동대에서 전화가 왔다.

“말하기 뒤틀린 사건인데요. 여성들을 훈미케 해서 성폭행하고 세상이 끝난다고 미혹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이들에게 당한 여성이 20여 명이나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엔 모녀도 있었어요. 진술을 들어보니 진실인 것 같은데 공소기간이 애매해 우선 방송에서 날날이 밝혀 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해 주십시오”. 제보한 박 형사는 베테

고발프로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기에 취재에 있어  
늘 신중을 기해

랑 여형사였다.

세기말을 앞둔 1990년대는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론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 '곧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바친 채 가정을 버리는 가장과 주부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로 뉴스의 홍수를 이루었다. 심지어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고발하던 종교연구가가 「PD 수첩」에 출연한 이후 백주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서울 한 북판에서 △△ 종교라는 시설을 지어놓고 교주는 자신이 온 세상을 구하려고 내려온 정 도령이라며 아픈 사람에게 진찰도 하고 약도 조제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무면허였다. 또한 교주는 지방에 기도를 간다는 명목으로 여신도들을 데리고 가서 정조를 유린하였는데 피해여성의 나이가 20대부터 60대에 이르고 있다. 그뿐인가? 교주는 종말론을 부르짖어 신도들이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어 결국은 가정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바보가 아닌가? 그러나 피해자 7명을 직접 만나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피해자들은 병을 고쳐준다거나 집안의 액운을 막아준다는 교주의 말을 믿었다가 당했으며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까지 하였다.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여성은 결국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교주를 만날 수 있을까?

종교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항상 문이 잠겨있고 감시카메라로 일일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다. 더구나 교주는 걸핏하면 지방으로 기도를 간다고 해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체포할 당시, 이들은 이곳에 출입을 하지 않아 교주 측으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었다.

예배장소는 한옥 여러 채를 구입해 안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부는 미로같이 얽혀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해외유학생 출신도 포함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믿기도 어려웠다. 현장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그 내부를 꼭 한 번 확인해야만 했다.

취재진은 사전에 이 종교에 입문을 원하는 신도를 가장하여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예상대로 끊임없는 의심에 찬 질문공세로 건물진입이 쉽지 않았다. 3번째 시도 끝에 집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교주를 만날 수는 없었다.

고발프로에서 취재의 양과 범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다.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시 「PD 수첩」은 평균 5주에 한 번 방송한다면 2주일 동안 아이템을 찾거나 이에 관해 스테디하고 촬영은 2주일을 밤낮으로 집중 취재하게 된다. 마지막 1주일은 보충 촬영 겸 편집을 하는데 촬영 테이프는 방송되는 양의 100배 정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소홀하게 다루서는 안 된다. 막상 취재하다보면 문제가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로 큰 문제다 싶으면 완벽하게 되도록 이중삼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된다. 드디어 사건의 실체를 대부분 파악하게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문제의 당사자를 찾아가

취재한 것에 대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도 때  
 번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번 경우, 방송을 포기해야만 할 것인가? 교주는  
 거짓으로 점철된 과거에다 복잡한 사생활, 무슨 무슨  
 인 총재로 전국에 따르는 제자가 수십만이라고도 했  
 다. 실제로 취재 중에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를 배회  
 하며 무언의 시위를 하였고 그만둘 것을 위협하며  
 증거로 삼는다며 우리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교주  
 의 딸까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거짓으로 점철  
 된 인생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음에도 잠적과 교묘한  
 피하기 등으로 미뤄볼 때 교주는 상당한 지능범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  
 릴 것이다.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보고 의문되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야 함은 고발프로그램의 당연한 의무  
 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  
 다. 또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러다보니 주인공을 찾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의문점을 밝히려는 취재시간과 맞먹는 편이  
 다. 만나기 위해 전화를 수십 차례 걸고 기관인 경우  
 공문을 발송한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집에까지 찾  
 아가 아예 집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러나 교주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면 교주  
 는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처에 콕 처박힌 채 측근들과 대책  
 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소도 수시로  
 옮겨 다녀 정확한 거처를 아는 사람도 극소수다. 방  
 송 전이라면 방송이 원천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법  
 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제출하고, 여의치 않아 방송  
 이 나간 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 또한 검찰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을,

손을,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줄줄이 걸어 올 것  
 이다. 실제로 교주는 언론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모  
 든 소송을 실현시켰다.

묘수가 없었다. 그때 한 신도가 얼마 전 교주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릇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  
 겼다. 이 신도는 아직까지 교주의 신뢰가 남아 있었  
 다. 그를 설득하여 몰래카메라를 맡기기로 하고 날짜  
 를 기다렸다. 교주가 머무는 곳은 신도들이 종교의식  
 을 갖곤 하는 종교시설인데도 사람을 구별하여 입장  
 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중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교  
 주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주변에는 교주  
 의 승용차도 보였다. 집안에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혹시나 교주가 바깥으로 달아날 경우를 대비, 취재진  
 을 입구에다 배치해 놓았다. 이제 정말로 교주를 만  
 날 시간인 것이다. 그릇을 찾아 나선 신도를 뒤따라  
 교주의 처소로 향했다. 그 신도가 초인종을 눌렀다.  
 방심했던지 안에서 문을 연 순간 취재진이 밀고 들  
 어갔다.

교주는 없었다. 온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끝내 교주  
 를 만날 수 없었고 그 과정은 고스란히 방송 때 전  
 파를 뒀다.

방송 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교주를 상대로 제  
 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는 힘들 것이다. 취재를 시작  
 한 이후 지금까지 나는 교주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취재 중 해외로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  
 순이 된 교주의 해외도피생활을 그 나름의 죄값을  
 치른다고 위로해야만 할까? 교주 측의 법적인 소송  
 은 끈질기고도 집요했다. 오히려 친고죄의 일종인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나는 소송의 붓물에 오  
 랫동안 신음해야만 했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직접 겪고 체험한 것들이다.

**무조건 취재윤리를 따르기 보다  
취재윤리의 위반 정도와 밝혀진 진실과의 비중을  
계량해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어**

그럼 고발프로그램 제작진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문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십 번 진정이나 고소를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종교의 경우에는 수사당국과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맡기를 꺼린다. 몇 년 전 자신들의 비리를 방송한다고 신도 수백 명이 방송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송시설을 파괴시키면서 강제로 방송을 중단시킨 모 교회의 무법성과 광폭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현장에서 취재윤리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언론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정보력과 자본을 가진 그들은 취재진이 언론윤리만 강조하는 사이 진실과 함께 저 멀리 달아나 버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처럼 취재윤리의 위반 정도와 밝혀진 진실과의 비중을 계량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조건 취재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언론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면 취재가 가능했을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PD들에게도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3D업종이 된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시사고발 피디들은 순수하고 정의감에 불탄다. 이들은 세상의 비리를 파헤치고 고발하여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가져오길 꿈꾼다. 연예인들의 시시껄렁한 신변잡기가 난무하는 프

로그램이 판을 치는 세상에 비리를 찾아 며칠씩 잠도 못자며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즐기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고발프로를 하다보면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해 수시로 법원과 검찰에 출입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가슴을 짓누른다. 갈수록 뻣뻣해지는 여건과 자신이 막상 고발프로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보여주는 취재원의 이중성으로 인해 취재진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재영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취재여건이 OECD국가 중에서도 열악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나 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나름대로의 취재윤리 규정이 있다. 문화방송의 방송강령, 윤리강령에도 몰래카메라에 관한 준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기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호를 침해하는 등 실정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문화방송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탐사형 고발 프로그램이나 단체, 기업, 정부 등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중대한 공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었다.

첫째,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둘째, 몰래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

셋째,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한 기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고, 취재원의 동의를 구해서 사용할 경우이다.

시사 고발프를 맡고 있는 어느 누구도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취재의 결과물이 단지 몰래카메라 기법으로 된 것이

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진도 다시 한 번 이 규정을 숙지하고 취재윤리에 엄격해진 국민의 의식을 인식하여 앞으로 취재 시 관례적으로 행하던 구습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맑아지고 나아진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에 힘입은 바가 아니었을까? 만일 언론이 언론의 당연한 임무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환경감시 기능을 포기했을 때 정말로 이를 반기는 것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 (Ⅱ)

류 순 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장

- 고려대 무역학과 졸업
- 세계일보 공채 4기
- 재정경제부, 국회 등 출입
- 현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장

## 1. 반성과 변명

언론중재위원회의 원고 청탁은 지난 14년간의 기자 생활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였다. 나에게 취재윤리는 무엇이었던가. 취재 과정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가, 아니 그런 인식이라도 있기는 있었던가.

고백하건대 적잖은 시간을 취재 현장에서 보내는 동안 취재 윤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취재 윤리를 위반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정도 윤리 위반쯤이야...”.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라는 대의명분은 든든한 방패이자 핑곗거리였다. 보다 높은 가치 실현을 위해 작은 가치는 희생시킬 수 있다는 단순 논리는 취재 과정의 윤리위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잊게 했다. 하지만 돌아켜보니 그건 그야말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는 명분 뒤엔 언제나 ‘특종 욕심’이 뿌리를 틀고 있었다. 기자가 특종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윤리위반을 동반하

는 특종 욕심이 늘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 도청 취재와 공익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취재윤리를 처음으로 꼼꼼히 뒤져봤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를 보니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조항이 눈에 띄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낯 뜨거운 기억이 있다.

1995년 가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였다. 기자들의 관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친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거물들에게 쏠려 있었다. 누가 얼마를 줬는지, 오늘 누가 소환되는지 등 기자들은 연일 검찰에 소환될 새로운 이름들을 알아내려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자들의 취재 경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환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실에서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서초동 서울지검검사 곳곳에서 펼쳐졌다. 4년차 기자인 나에게 할당된 임무는 서울지검장실을 지키는 것이었다. 검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만으로는 기사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검장 부속실에 죽치고 앉아 보고를 위해 드나드는 '차장검사'나 어쩌다 마주치는 검사장에게 몇 마디라도 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판 마감 뒤 서울지검장실에 올라갔더니 부속실 계장이 "차장 세분과 회의중"이라고 했다. 마침 타사 기자들은 없었다. 동행한 H사 후배 기자에게 긴급 제안을 했다. "마침 다른 기자들이 없으니 계장과 얘기를 나누며 시선을 붙잡아줘라. 난 벽에 귀를 대고 회의 내용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 즉 "난 검찰 간부들 얘기를 도청할 테니 난 바람을 잡으라"는 얘기였다. 그 순간 우리는 명백한 공범이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공모한 뒤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계장과 잡담을 시작했고 난 복도에 세워진 자주색 통제선을 넘어 복도 쪽으로 연결되는 지검장실의 옆문을 귀를 붙였다.

5분쯤 지났을까. 낮게 깔리는 음성들 사이로 어렵 뜻이 몇몇 익숙한 이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드리운 낚싯대에 고기가 걸려 팽팽한 손맛을 느낄 때처럼 짜릿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온 신경은 문 너머로 오가는 대화에 쏠렸다. 그 때였다. 정적을 깨듯 "내 이럴 줄 알았어"라는 노기 띤 목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계장이 눈치를 채고 뛰어나온 것이다. 그는 슬리퍼 차림에도 날렵하게 자주색 통제선을 뛰어넘어오더니 우악스럽게 먹살을 움켜쥐었다. 갑작스런 소란에 놀란 검찰 간부들은 옆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고 나는 얼굴이 벌게진 채 계장의 손을 뿌리치고 정신없이 자리를 피해야 했다. 그때의 당혹감과 창피함이라니. 그 뒤로 한동안 나는 지검장실에 발길을 끊었다.

선배는 "취재하다 그런 건데 뭐 어쩌냐"고 했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취재 현장에서 도청은 하지 않는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청

에 의한 기사 작성이 공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그 때 검찰 수사 내용을 무사히 도청한 뒤 이를 기사화했다면 어찌 됐을 것인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수사 내용을 기사화해 수사 차질을 빚고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인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될 뻔한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계장 덕분에 화를 막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서울지검장실 도청 미수 사건'은 낮 뜨겁지만 값진 교훈을 남겼다.

### # 응급실 취재와 환자의 안전

'기자는 병원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 ③ '병원 등 취재' 조항에서도 걸리는 기억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취재과정에서다. 사고 다음날 오전 20대 초반의 식품매장 직원 권모 씨가 폭삭 무너진 백화점 잔해 더미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응급실은 통제됐고 기자들은 그 앞에 진을 쳤다. "그 직원 얘기를 어떻게든 초판에 실어야 해!" 데스크의 주문은 단호했다. 그러나 몇 마디라도 듣지 않고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기회를 엿보다 의료진이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용케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진부 선배는 내가 응급실로 들어가자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해 카메라를 건넸다. 서둘러 침상에 누워있는 권 씨의 얼굴 사진을 찍고 취재를 시작했다. 짧은 시간 권

취재와 기사작성은 성공적이지만  
취재과정이 떳떳하지 못하면  
문제될 수 있어

씨는 태풍같은 바람을 맞으며 주류판매대와 함께 넘어진 뒤 칠후 속에 갇혀 15시간을 견딘 과정을 힘겹게 얘기했다. 밖에서 진을 치던 타사 기자들의 향의로 얼마 되지 않아 의료진에 의해 쫓겨났지만 그날 초판 신문에 권 씨 구조 스토리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취재와 기사작성은 성공적이었지만 취재 과정은 떳떳하지 못했다.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응급실에 침입한 점이 그렇고, 권 씨의 허락 없이 카메라를 눌러대고 취재를 한 점이 또한 그렇다. 한마디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권 씨의 건강과 치료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런 방식의 취재로 당시 권 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경우에 따라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취재 방식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 신분사칭과 이정연 몸무게 특종

취재윤리 위반이 늘 후회와 반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또 다시 그 상황이 닥쳐도 그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변명거리도 없지 않다.

1997년 대선을 세 달 남짓 남겨둔 7월 29일 오후, 시경 캡의 지시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장남 정연 씨를 인터뷰하려 양재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찾았다. 이 대표의 두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간, 같은 목적으로 타사 기자들도 하나 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로비에 나타났다. 하지만 정연 씨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연구원측 설명이 정연 씨가 전날 사무실에 잠시 들러 “휴가를 가야겠다”고 말한 뒤 29일 출근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회사에 보고한 뒤 하나 둘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기가 웬지 억울해 자리를 뜨지 않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직원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였다. 1983년에 키 179센티미터 몸무게 55킬로그램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정연 씨는 미국 유학 후 1991년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5킬로그램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의 몸무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건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물음에 “서초동의 주클리닉”이라고 말해줬다. 주클리닉은 임창렬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문제는 건강검진 기록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이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신분사칭이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강검진 담당자인데요, 검진 기록을 확인하게 있어서요”. 신분 사칭은 성공적이었다.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은 의심 없이 몇 분 뒤 6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정연 씨의 키와 몸무게를 알려줬다. 취재내용은 30일자 세계일보 사회면에 ‘병역기피 논란 이회창 대표 장남 최근 몸무게는 58킬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이는 정연 씨 몸무게를 둘러싸고 주장과 의혹만이 난무하던 당시, 보다 진실에 접근해가는 거의 유일한 팩트였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정연이는 유학시절 고생해 몸무게가 많이 줄었으며 지금도 51킬로그램 정

도”라고 밝혔었다.

당시 이 기사는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기여한 기사였다고 지금도 자평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를 과연 신분을 사칭하지 않고 취재해 작성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분사칭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원칙적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신분사칭·위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정연 씨 몸무게 취재를 위한 신분사칭은 이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 2. 현장에서 느끼는 취재윤리

앞에서 10여년 기자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 윤리 위반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같은 사례가 기자 개인의 경험만은 아니다. 특종을 쫓는 기자들 누구라도 도청, 신분사칭에서부터 강압적 취재, 함정 취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뒤통수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 취재한 경험이 적어도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실제 과거 취재현장에서 만난 동료 기자들 중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수사 중인 검사방에서 수사자료를 훔치려다 들켜 범정에 서야 했던 이들도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검사방에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했을 정도면 ‘특종 의욕’에 사로잡혀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마비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계의 분위기는 ‘기자 감싸기’로 흘렀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취재윤리 위

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설 자리가 없었다. 기자는 그저 열심히 취재하다 ‘재수 없게’ 걸린 것으로 인식되기 십상이었다. 방법이야 어찌 됐든 특종만 하면 된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진실 확인을 위해 어느 정도의 취재윤리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잖다. 10년 전 사건기자 시절이었다. 야근을 하는데 TV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국에 물어보니 공중파 방송을 중계하는 남산 송신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야근 기자 집결지인 강남경찰서 기자실에서 경쟁적으로 취재가 시작됐다. 모두들 마감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현장으로 달려가기에 앞서 전화기부터 들었다.

A기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일보 기자인데요, 송신탑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한마디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어 B기자가 전화를 걸었다. “저 ××신문 기잔데요”, “에이 참 바쁘데...”. 송신소 관계자는 짜증을 내며 기자가 질문하기도 전에 냅다 끊어버렸다.

이어 C기자가 전화를 걸어 낮은 음성으로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나 안기부(현 국정원) 김 부장인데 거기 무슨 일이요”, “아, 예...”. 송신소 관계자는 그 제서야 사고 원인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기자들은 기사 1보를 회사로 보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짓게 하는 이 장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촉박한 마감 시간에 맞춰 신분을 사칭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해 기사를 써 보내야 하는 기자들의 급박한 현장 상황을 실감케 한다. 이처럼 취재 현장에서는 기사를 쓰기 위해 원칙적인 취재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과거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이나 정보를 파헤치는 탐사보도가 언론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엔

취재 윤리 위반이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함정 취재’나 ‘몰래 카메라’, ‘강압적 취재’ 같은 탈·불법적 방법들이 동원되는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기자들은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주장을 완전하게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취재 윤리 위반이 관성화하면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현장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 윤리 위반이 불가피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성·타성에 젖어 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취재 윤리 위반이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려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타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에서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순이 결코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실 추

구를 위한 취재 윤리 위반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취재방법이 정말 없었는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고도 취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과정을 거친 뒤 어쩔 수 없이 진실 확인을 위해 취재 윤리를 위반했을 때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취재 윤리는 기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불법적 행위 자체가 기사의 본질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며 기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사례는 심심찮다.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한 취재’를 통해 이뤄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원론이다. 이런 원칙론 위에서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필요할 듯하다. □

# 2005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 I. 서론

이 글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에 관한 주요판결(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을 포함한다)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에 관한 판결이라 함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주가 될 것이나, 언론의 자유, 넓게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판결도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문검색시스템에 의하여 검색되는 판결도 함께 살펴보았다.

2005년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판결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적 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되 사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또한 언론사간 소송에 대한 판결도 많이 나오고 하급심에서는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실제사건을 모델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관련인물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방영이나 상영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이어져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상의 검열금지과 관련하여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舊)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결<sup>1)</sup>하였고,

## 한 위 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법과대학원(법학석사, LL.M)
- 제2회 사법시험합격
- 서울지방법원 판사, 시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헌재 2005.02.03. 2004헌가8, 판례집 17-1, 51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sup>2)</sup>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보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 1.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이론의 전개<sup>3)</sup>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범위가 넓다.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공적 사항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를 본령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과도 상충된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sup>4)</sup>에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 보장(헌법 제20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밑줄은 필자가 첨가)

고 판시하여 명예 등 인격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한 바 있다.

한편, 1990년을 전후하여 민주화의 진전과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였고, 나아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 언론의 비판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확립된 '현실적 악의의 법리'<sup>5)</sup>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sup>6)</sup>과,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sup>7)</sup>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sup>8)</sup>은

2) 헌재 2005.10.27. 2003헌가3, 공보 109, 1089.

3) 이에 대하여는, 한위수(2004, 봄),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통권90호, p.22이하 참조.

4) 공1988, 1392.

5) '公인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with knowledge that it i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이를 공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6) 공1997하, 3279.

7) 공1998상, 1575.

8) 공2002상, 522. 이는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잡지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한위수(2002),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와 명예훼손-현실적 악의 원칙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민사실무연구회), p.611 이하 참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밀줄은 필자 첨가)

고 실시하면서,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sup>9)</sup>

고 판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인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한 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그 후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1) 좌와 우의 이념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되며<sup>10)</sup>, (2)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고<sup>11)</sup>, (3)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sup>12)</sup>,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표현의

9) 대법원은, 그 이유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0)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공2003상, 425). 이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그 제작자를 주사파라고 비난한 글에 대한 것이다.

1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공2003하, 1683). 이는 야당대변인이 여당소속 도지사 자택에서의 회화도난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1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공2003하, 1770) (야당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검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공2003하, 1936)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공2004, 594) (검사가 착오로 이중기소를 하였다는 보도에 대한 것이다) 등.

폭을 확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언론보도가 문제된 민사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sup>13)</sup>이,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여,<sup>14)</sup> 같은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 2. 2005년도의 명예훼손 판결

### 가. 공인관련 보도에 대한 판결

#### (1) 대법원 판결

앞서본 바와 같이 공인 관련 보도에 대하여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비판의 폭을 넓게 인정하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2005년도의 판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먼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sup>15)</sup>은,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들이 휴대폰을 도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일간신문의 사설이 문제된 사건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sup>16)</sup>,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

13) 공2003상. 876.

14) 다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입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5)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통권95호) 110면.

16) ①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② 검찰이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③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점, ④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언론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이는 앞서본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넓게 허용하고자 하는 종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당대변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sup>17)</sup>은, 국가정보원 해직자들의 단체와 관련하여 여당대변인이 야당에게 위 단체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해체하라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그 자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정당대변인의 공식적 정치적 논평이 갖는 특수성<sup>18)</sup>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앞서본 위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sup>19)</sup>의 취지를 그대로 확인하면서도, 특히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부연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 일반에 대하여도 허용의 폭을 넓게 인정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65 판결<sup>20)</sup>은, 평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언론 등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해 온 원고가 주요 일간지에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하여 한 인터넷신문에서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어떤] 기사가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공적인 의견표명에 대한 대응 내지는 비판의 의도로 작성된 경우 그 기사가 위법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비판의 대상이 된 상대방의 의견표명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일반인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를 자초하였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기사가 그 표현의 정도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광고의 게재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sup>21)</sup>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

17) 미공간(未公判).

18) 위 판결은 그 특징으로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19) 주 11 참조.

20) 미공간(未公判).

21)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사유로는, (1) 위 광고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체성이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5·18 민주화운동을 ‘소수의 좌익’, ‘폭동’, ‘소요사태’ 등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본질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이나 언론매체로부터 비난과 비평이 가해지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광고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일간신문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비난과 반발을 유발한 점, (2) 위 광고의 내용 자체가 논리적인 것이기 보다는 단순히 원고 자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광고 내용의 근거나 전체를 반박하는 등의 논리적 비판이나 비난이 용이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광고의 표현의 정도나 사용된 용어 또한 일반적인 표현의 한계를 훨씬 넘고 있어 광고에서 거론된 개인이나 단체 및 그 관련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점 등이다.

가 스스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sup>22)</sup>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본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 (2)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하급심판결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비판의 폭을 넓게 허용하려는 판례입장은 2005년도의 하급심판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sup>23)</sup>, 특히 하급심에서는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고<sup>24)</sup>, 나름대로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 적용되어야 할 독특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수용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20854 판결<sup>25)</sup>은, 원고 H신문사가 언론개혁을 주도하고 있

는 정권에 영합하기 위하여 언론개혁기획시리즈 등을 보도하여 피고 C신문사 등을 공격하고 있으며 정권 주도의 언론개혁에 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상호간의 비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판의 정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한 위 비판 내지는 의견표명은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sup>26)</sup>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16395 판결<sup>27)</sup>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원고 C일보사의 보도태도를 비판한 M방송의 보도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비록 이 사건 보도에는 참여하게 피고들과 대립하고 있던 원고의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엿보이고 보도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다소 과장된 점 등

22) 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44089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72353 판결(미공간,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나51527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대법원 계류중.) (피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I 방송사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I 방송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편파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 언론기관의 중요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하여 적시된 사실들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영역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04가합41137 판결(미공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의 위원 또는 직원들이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위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4) 언론사 상호간의 소송은 2000년을 전후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에 관하여 한 하급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16395 판결)이 “15대와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내 굴지의 대형 언론사들이 매체의 특성으로서의 보도경향이나 이념적 가치관을 넘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후보가 누구인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안을 자사의 처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언론사를 사설이나 신설한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통하여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비판이나 비난을 해 온 것도 사실임은 우리가 경험한 바이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25) 미공간, 대법원 상고중.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1가합34978 판결.

27) 미공간, 확정

이 있으나, “언론매체간의 특정 사실을 둘러싼 상호 비판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널리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sup>28)</sup>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해되었고 원고의 명예감정 역시 다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2004나85035 판결<sup>29)</sup>은, 원고 D신문사는 언론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친일신문이었고 독재정권과 결탁하였다는 피고 H신문사의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언론사간 비판의 폭을 넓게 허용하여야 할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다.

언론사간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 자신 역시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또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인하는 범위도 넓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어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기준을 심하게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밑줄은 필자 첨가)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412856 판결<sup>30)</sup>은, 피고 K방송사에서 피고 D신문사에 대하여 주한 미대사와의 회합을 가졌고 신탁통치에 관한 허위보도를 하였으며 미군정의 비호로 득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영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피고방송사의 방송은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사리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 특히 언론매체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평의 활성화는 언론의 부패를 막는 안전판이자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넓혀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밑줄은 필자가 첨가)

### (3)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한 사례

그러나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비판이라도 아

28) 그밖에 (1) 이 사건 보도가 특정 사안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2) 원고와 피고 M방송이 사회적 영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C일보 등의 언론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9) 미공간, 대법원 상고중.

30) 미공간, 확정.

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언론사를 면책시키지는 않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64487 판결<sup>31)</sup>은 상지대학교의 운영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기사의 게재 전후의 상황, 시점, 편집방법 등을 종합하면 공익목적보다는 전 이사장 측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여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4나14422 판결<sup>32)</sup>은, 원고 정당의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대서특필한 인터넷 언론사 및 주간지의 발행인과 기자,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완화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다 고도의 사실 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고도의 확인작업이나 노력이 없이 제3자의 말이나 제보 또는 소문을 단순히 인용하여 ‘의혹이 있다’거나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무책임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까지 그것이 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82497

판결<sup>33)</sup>은, 이른바 ‘병풍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인터넷언론사에서 관련인사가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야당의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34)</sup>

나아가 서울중앙지법 2005. 7. 20. 선고 2004가합62875 판결<sup>35)</sup>은, 일간신문에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과거 관내 국영기업체의 이권에 관여하였고 업자들과 자주 어울려 골프를 친다는 투서가 접수되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등의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하여, “[공직임명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까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사건 보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31) 미공간.

32) 미공간.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3332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33)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통권95호) 137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3325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34) 그 이유로서,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완화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다 고도의 사실 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5) 미공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

보도를 게재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1가합64429 판결<sup>36)</sup>은, 피고 신문사가 1980. 5.경 보안사령부가 5억 원을 호가하는 보안사 안가와 시가 2억 원에 불과한 원고 신문사 소유의 가옥을 각 1억 5천만 원 선에서 감정평가한 뒤 맞교환함으로써 피고 신문사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는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도한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안사의 요구로 피고가 위 교환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 소유 가옥의 시가가 위 안가의 시가보다 높아 특혜라고 할 수 없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임의로 추측하여 이를 특혜로 단정하고 은폐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그 근거가 전혀 없거나 매우 빈약한 근거에 기한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 3. 사인(私人)에 대한 비리 보도

일찍이 대법원 1998. 7. 14. 선고17257 판결<sup>37)</sup>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sup>38)</sup>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밑줄은 필자 첨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판례는 공인 또는 공적 사항에 대한 보도와 달리 사인에 대한 비리혹이나 범죄 보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5년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먼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1863 판결<sup>39)</sup>은,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유원지입장료와 자릿세를 받아 수십억 재산을 모으고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하여, 위 보도가 탈세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의 형평 및 정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보도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국민이 그러한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원고인 사실과 그 소유재산 내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까지 알아야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sup>40)</sup>은, 택시노조활동을 하던 원고가 택시회사 근로자 및 기업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적발되었다는

36) 미공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된 후 조정성립.

37) 공1998하, 2108.

38) 공1999상, 330.

39) 미공간.

40) 미공간.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택시노조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공적인 인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sup>41)</sup>은, 이른바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김훈 중위를 살해하였다는 단정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언론매체가 아직 사건화 되지 않은 사회비리 등을 조사·추적하여 폭로하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적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범죄보도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그와 같은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범죄보도와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sup>42)</sup>”이라고 판시하여, 사건화 되지 않은 사회비리의 폭로, 공적 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

의 표명에 대하여는 언론 매체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함을 선언하고 있어 주목된다.

### III.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 등

#### 1. 사생활의 보도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는 일찍이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sup>43)</sup>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결국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sup>44)</sup>, 2005년 하급심에서는 이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듯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sup>45)</sup>은,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원고를 취재하여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41) 미공간.

42) 위 판결은 그 이유로서, 언론매체의 범죄보도 중에서도 기자 등 언론매체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사회비리나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폭로하거나, 때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더 나아가 공적기관에 의한 수사나 재판이 완결되어 개인의 형사책임의 유무나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사건을 재구성 내지 재조명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공적기관의 판단결과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는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언론매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 없이 주관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공적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면 언론이 가진 영향력으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담당할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제적 진실이 왜곡되고 언론매체의 힘을 빈 무고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3) 공1998하, 2377.

44) 이에 대하여는, 한위수(1999, 여름), 프라이버시침해관련 국내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71호, p.55 이하 참조.

45)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통권97호) 143면, 확정.

취지로 방송한 시사프로그램이 문제된 사안에서,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 47227 판결<sup>46)</sup>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30대 독신의 여성 벤처기업가로 알려진 원고에 대하여 결혼과 이혼의 전력, 결혼생활, 자식의 양육에 관하여 보도한 주간지의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성공 등의 이유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면 원고를 사회 저명인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자서전까지 출간하고, 그 이전에 언론매체와의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대외적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위 기사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생

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sup>47)</sup>

## 2. 초상권 침해 등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sup>48)</sup>, 2005년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2739 판결<sup>49)</sup>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를 직접 출연시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영업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초상의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46) 언론중재 2005년 가을호(통권96호) 121면. 확정.

47) 이 판결은,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하여 부연하고 있다.

48) 이에 대하여는 한위수(1994),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민사실무연구회), p.209 이하; 한위수(1996, 10월/11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상)/(하), 「인권과 정의」, 242/243호(대한변호사협회), p.28/p.109 이하 각 참조.

49)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통권97호) 138면. 확정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 84950 판결<sup>50)</sup>은, 학원업, 연예인 대리, 영상·음반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회사에서 투자자모집을 위한 광고전단지에 유명한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인 원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 235324 판결<sup>51)</sup>은 유명 코미디언인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그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초상권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관련업계에서 아직 이들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 IV. 반론보도관련 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구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구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떤 보도가 이에 해당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sup>52)</sup>은, 이른바 친일친상규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방영한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고 선례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분량이 다소 많지만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출연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토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 내용이 방송사의 기획의도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가 이를 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으므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다른 토론자들이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대 사실의 주장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 및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반론보도제도의 취지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허용할 경우 일방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자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도 반론보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토론과정에서 반론보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듯한 결과가 될 뿐인데 반해, 방송사로서는 매회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편집·통제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

50) 미공간. 확정.

51) 각급법원판결공보 2006. 1. 10.자 18면. 확정.

52) 미공간. 확정

방송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퇴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사가 토론자들을 특정한 의견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하거나 토론 방식이나 진행 등을 편파적으로 하는 등으로 토론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을 방송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는 당해 토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밑줄은 필자 첨가)

## V. 표현행위의 사전금지에 대한 판례

### 1. 총 설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일단 공표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출판금지나 처분 또는 방송금지가처분 등에 의하여 공표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제한은 굳이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어 선불리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2005년도에는 표현행위의 사전금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하급심에서는 실제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방영금지 및 통신비밀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수 내려져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sup>53)</sup>은 한 종교잡지에서 신청인교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문제되자 위 잡지의 인쇄, 판매, 배포의 금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밑줄은 필자가 첨가)

이 결정은, 종래에도 표현행위의 사전금지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다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허용의 당부만을 판단함에 그쳤음에 반하여, 처음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유형화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허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소명)이 필요로 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sup>54)</sup>

53) 공2005상, 391.

54) 이러한 이유로 위 결정은 2005년 언론법학회에 의하여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설로는, 이균룡(2006,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의 허용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54호, p.341이하 참조.

### 3. 하급심 판결

2005년에는 실제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영화 속 인물의 유족이 인격권침해 등을 이유로 상영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또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내용에 대한 방송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들은 모두 사전금지가 예술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 또는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상영 또는 방송을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부분적, 제한적인 사전금지만을 허용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2005. 1. 17.자 2004라439 결정<sup>55)</sup>은, 영화 ‘실미도’와 관련하여 그에 등장하는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용공주의자로 오인할 수 있는 대사 장면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영하거나 DVD 등으로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 등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 영화가 훈련병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묘사를 한 부분이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위 영화가 다큐멘터리영화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및 영화내용에 대한 수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들이 위 영화내용이 역사적 진실을 재현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 홍보를 계속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31.자 2005카합106 결정<sup>56)</sup>은, 이른바 ‘10. 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영의 금지 또는 문제 장면의 삭제를 구하는 사안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작가가 직접 제작한 영화내용에 관한 수정이나 삭제를 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sup>57)</sup>, 이 사건 영화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실제 인물이 상당수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장시간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 전체를 실제상황을 엿보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하거나 극중 배역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 고인을 묘사한 것으로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모델인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삽입장면에 대한 삭제를 명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21.자 2005카합1743 결정<sup>58)</sup>은, 전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일간신문사의 사주와 대기업 임원 사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하여 녹음한 테이프(이른바 ‘안기부 X파일’)의 내용에 대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방송의 전면금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위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기제가 없으나, 위 테이프의 대화당사자가 공적 인물이고 내용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불법

55) 미공간. 확정.

56) 미공간. 확정.

57) 그 이유로서, “[위]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로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형태에서는 과장, 왜곡 및 희화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는 풍자, 흉내, 비꼼, 농담의 일부로 하는 대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여야 할 것인 점”, “가사 이 사건 대화에서 고인의 모습이 실제 생활모습과 달리 묘사되었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어 유족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부분적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고인은 성인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고인과 그의 유족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58) 미공간. 확정.

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그 내용의 공개는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sup>59)</sup>

## VI.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먼저,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가8 결정<sup>60)</sup>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舊)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에 대하여,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 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사전검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영화 등의 사전심의가 검

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결정<sup>61)</sup>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가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sup>62)</sup>과 동일한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sup>63)</sup>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및 위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69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과 같은 중요한 의료정보의 유통제한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상업광고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59) 불법 취득된 통신비밀에 대한 보도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한위수(2005, 12월), 통신비밀의 공개와 보도에 관련한 민·형사적 제문제, 「저스티스」, 88호(한국법학원), p.28 이하 참조.

60) 판례집 17-1, 51.

61)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62)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13-2, 134.

63) 공보 109, 1089.

종래의 판례가 대부분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데 비하여<sup>64)</sup> 이번 결정은 광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여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드문 사례<sup>65)</sup>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 VII. 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언론에 관한 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판례는 없었으나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적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의 판

례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유형별(예컨대, 이념문제, 정치적 언론, 언론사간 비판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거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가 집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영화산업의 융성으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를 구하는 사건 및 광고 산업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광고규제의 철폐를 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판례의 전개가 주목된다. □

64)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결정(헌재 2004. 9. 23. 2003헌바6; 헌재 2000. 3. 30. 97헌마108, 판례집 12-1, 375)이다.

65) 위헌으로 판시한 다른 사례로는,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의 규정은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결정(헌재 2000. 3. 30. 99헌마143, 판례집 12-1, 404)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Invasion of Privacy)

김 경 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I. 이 글의 범위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민사적 의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의 의미에 관하여 보통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 및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법적 권능'이라고 하고, 사법(私法)분야에서는 전자의 측면이 주로 문제된다고 설명한다.<sup>1)</sup>

우리 대법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민사상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sup>2)</sup>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

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 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인격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그 인격권의 한 종류로

1) 양창수(2003, 12월), 사생활 비밀의 보호-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76호, p.45.

김재형(1998, 5월),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 39권 1호(106호), p.195.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문제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아직까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현재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위법성 판단 기준의 필요성

민사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하 '사생활의 침해'라고 줄여 부른다)는 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다른 인격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해결원칙이 존재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언론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 사례의 이익형량은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 적법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가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불안하게 한다는 결함을 갖는다. 이는 곧 언론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sup>3)</sup> 이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인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도 이익형량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체계화, 구체화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익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

력이 학설,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밝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다. 즉, 위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sup>4)</sup>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라고 판시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판결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sup>5)</sup>를 들고 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sup>6)</sup>은 아예 명문으로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도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하에서는 언론<sup>7)</sup>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이익형량의 기준을 우리 재판례와 위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현재 인격권 침해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법을 우리 법리를 분석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펴본다.

3) 박용상(1997),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서울:조선일보사, pp.252- 255.

4) 이는 뒤에서 보는 미국에서의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인 허근영(1999, 5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판례해설」, 31호 (98년 하반기), pp108-109. 참조.

5)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 '승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이 글에서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위 법률의 국회에서 논의 과정은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0600\\_300.hwp](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0600_300.hwp) 참조

7)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이 글의 논의 범위 밖에 있다.

수용되어 미국법에서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11)</sup>

## II. 미국 프라이버시법의 요약

### 1. 논의의 발단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가 법적 권리로 인정된 것은 명예권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프라이버시권을 독자적인 법적 권리로 구성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는 Warren과 Brandeis가 1890년 Harvard Law School의 Law Review에 기고한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였다고 한다. 위 논문은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의 폐해<sup>8)</sup>를 지적하면서 ‘개인(個人)의 것’에 대한 불법침해적인 공개에 대하여 Common Law 상 인정되어 온 피해구제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구제들은 Common Law 상 독자적인 것(기존의 명예훼손, 저작권 또는 재산권 침해 등과 구별되는)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보다 광범한 법리에 근거를 둔 것이고 바로 그 광범한 법리에 입각한 총체적인 권리가 Privacy의 권리라고 주장했다.<sup>9)</sup>

프라이버시권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그 인정에 관한 논란을 거치면서 차츰 여러 주(州)의 법률이나 판례 그리고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sup>10)</sup>를 통하여

### 2. 법리의 전개

#### 가. 4가지 분류법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논의는 판례들에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Prosser의 4가지 분류법<sup>12)</sup>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Second Restatement of Torts도 따르고 있는<sup>13)</sup> 위 4가지 분류법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 a.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Intrusion upon seclusion)<sup>14)</sup>

타인의 배타적인 공간(solitude or seclusion)이나 사적인 사항(private affairs or concerns)을 물리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행위이다. 주거나 호텔 객실 등에서의 무단 침입, 엿보기, 도청, 비밀 녹음, 몰래 카메라에 의한 촬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공표된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가 수집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8) 위 논문은 당시 지역 신문이 Warren의 딸 결혼 축하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호스티스인 Warren의 부인의 사사로운 처신을 자세하게 다루고 초청 인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Warren이 법적 대응을 위하여 Brandeis와 상의하게 된 것이 그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서주실(1995, 7월),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6호, p.45이하.

9) 서주실(1995, 7월), 앞의 논문 pp.77-78.

10) Restatement of the Law. Torts(1938), § 867 프라이버시의 “불합리하고 중대한”(unreasonable and serious) 방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양창수(2003, 12월), 앞의 논문, p.41에서 재인용

11) 1965년에 이르러는 연방대법원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 <http://laws.findlaw.com/us/381/479.htm>

이 판결은 피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한 Connecticut 주법이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12) California 법대 학장인 Prosser가 1960년에 California Law Review에 기고한 “Privacy”라는 논문에서 300개 이상의 프라이버시 판례를 분석한 후 서로 다른 유형으로서 체계화한 것이다.

13)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Chapter 28A

14)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B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범의 대상이 은밀한 사적 장소 또는 사상이어야 하고,<sup>15)</sup> 그 침범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라야 한다(highly offensive to a reasonable person).

b. 사적 사항의 공표(Publicity given to private life)<sup>16)</sup>

사적인 사항을 공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Warren과 Brandeis가 프라이버시권을 구성함에 있어 원래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가 공연한 것이어서 공중에게 알려져야 하고(publicity), 공표된 사실이 '사적 사항' 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고,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어야(not of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한다.

c.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Publicity placing person in false light)<sup>17)</sup>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적인 인상을 일반인에게 심어줌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이나 발언을 허위로 발표하거나 다른 상황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허위의 인상을 주는 등 '허위성'이 있어야 하고, 그 허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어야 하며, 공표를 한 자가 공표된 것이 허위라는 것과 일반인으로부터 허위적인 인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서 공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유형은 명예훼손과 중복되는 면이 많다 는 등의 이유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sup>18)</sup>

d. 성명 또는 초상 등에 대한 침해(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sup>19)</sup>

원고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징표를, 즉 성명, 초상, 사진, 경력 등을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프라이버시권이 불법행위법에 수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이 유형이 주로 문제되었다고 한다.

나. 면책사유

위와 같이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라는 용어로 설명되더라도 위 4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법리로 설명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도 위 유형별로 따져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유형별 구별 없이 면책사유 중 주요한 내용만 살펴본다.

1) 뉴스가치성(newsworthiness) 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legitimate public concern)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뉴스가치성이 인정되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로서 면책(privilege) 된다.<sup>20)</sup>

15)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16)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D

17)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E

18) 엽규호(1994, 겨울),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언론의 자유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53호, p.64.

19)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C

20) 이는 common law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범리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D, comment d.

뉴스가 보도적, 교육적, 계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면책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경우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sup>21)</sup> 그러나 이 양자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의 관습이나 관례를 참고해야 하고, 무엇이 정당한 것이냐는 결국 사회 관습(community mores)의 문제라고 한다.<sup>22)</sup>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특히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 기록(public record) 등이 그 인정 근거로 논의되고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 언론을 보호하는 ‘공적 인물론’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도 대체로 적용되어 공적 인물의 경우 보호받는 사생활의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한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Time, Inc. v. Hill 사건<sup>23)</sup>에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을 프라이버시 침해(구체적으로 위 c. 유형)에서도 적용하였다.<sup>24)</sup>

공적 기록에서 수집된 자료의 공표는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면책된다. 연방대법원은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sup>25)</sup>에서 정부의 공공 문서에 들어있는 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sup>26)</sup>

## 2) 동의

Warren과 Brandeis가 프라이버시권을 법적 권리로 구성할 당시부터 ‘동의’는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중 하나로서 인정되었고,<sup>27)</sup>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 4가지 유형 모두에 있어 면책사유로 주장된다.

21) 법원은 Sweeney v. Pathe News, Inc., [6 F. Supp. 746 (1936)] 사건에서 피고인 영화회사가 뉴스영화의 일부분으로 원고 등 비만한 여자들이 새로 고안된 살 빼는 기구를 이용하여 체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상영한 경우 많은 여성들이 살 빼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고 하였다(천병태(1994, 12월), 표현의 자유와 Privacy :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본, 부산대 「법학연구」, 43호, p.193에서 인용).

그러나, Barber v. Time Inc. [348 Mo. 1199(1942)] 사건에서 계속 먹어도 체중이 줄어드는 희귀한 병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의 사진을 찍어 ‘굶주린 대식가’라는 표제 아래 원고의 성명을 밝혀 보도한 경우 프라이버시권에는 사적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공중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재형(1998, 5월), 앞의 논문, p.215에서 인용.)

22)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1977), § 652D, comment h.

23) 385 U.S. 374 (1967)

이 사건은 탈주범에게 인질로 잡힌 가족의 시련과 저항 등을 그린 브로드웨이 연극에 관하여 Life잡지가 기사를 실으면서 그 연극이 Hill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탈주범으로부터 아무런 구타나 모욕을 당한 바 없는 Hill이 위 기사가 그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허위적인 인상을 일반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승고 판결을 내린 주법원의 결정을 actual malice 원칙을 적용하여 번복하였다.

24) 한편, Cantrell v. Forest City Publishing Co.[419 U.S. 245 (1974)] 사건은 원고의 남편이 다리 붕괴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집에 있지도 않았던 원고를 인터뷰한 것처럼 원고의 꾀꿉한 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기사로 실은 사안인데, 위 기사의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었다.

25) 420 U.S. 469 (1975)이 사건은 17세의 여학생이 강간살인 당한 재판기록을 방송국 기자가 열람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방송에서 밝히자 그 학생의 아버지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공식 재판기록에 들어있는 진실한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린 주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26) 연방대법원은 The Florida Star v. B. J. F. 사건[491 U.S. 524 (1989)]에 관한 판단에서 경우에 따라 정부기록문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이 면책될 수 없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27) 서주실(1995, 7월), 앞의 논문 p.79.

명시적인 동의는 물론이고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책될 여지가 있다. 다만 동의는 사적 공간이나 사적 사항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가 담당 공무원의 허락 하에 그와 동행하여 혐의자의 주거에 들어가 취재를 하더라도 면책될 수는 없다.<sup>28)</sup> 그러나 그러한 취재도 언론기관의 취재관행(custom and usage)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sup>29)</sup>

### 3. 미국 프라이버시법의 평가

미국 프라이버시법은 우리 사생활 침해 분야에서 충분한 참고의 여지가 있다. 위 4분류법이라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판례가 전개한 법리를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 a. b. 유형에 관하여는 우리 재판례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구분에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법체계와 인격권에 관한 기존의 법리에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적용이 곤란

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위 d. 유형은 이미 성명권,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별도로 논의되어 오고 있고<sup>30)</sup>,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도 제5조 제1항에서 ‘초상, 성명’ 등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독립된 종류의 인격권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위 c. 유형은 우리 실무에서는 통상 명예훼손의 문제로 처리된다.<sup>31)</sup>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개인에 대한 허위적인 공표가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sup>32)</sup>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때<sup>33)</sup>에 있어 위 c. 유형의 효용이 발휘되었고, 이는 우리 실무에서도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 훌륭한 신부감과 결혼을 한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결혼 예정 사실이 없는 경우의 사안이다.<sup>34)</sup>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접근 방식은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허위 공표된 내용이 ‘사적 사항’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것에 대한 고도의 심리적 불쾌감을 구제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28) *Ayeni v. CBS, Inc.* [22 Media L. Rep. (BNA) 1466 (E.D.N.Y. 1994)] 염규호(1994, 겨울), 앞의 논문, p. 61에서 인용.  
이 사건은 CBS 기자가 연방재무성 직원의 허락 하에 그와 동행하여 신용카드 사기 혐의자인 원고의 아파트에 가서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색영장 집행을 취재한 것인데, CBS는 정부 관리의 허락 하에 원고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부 관리들에게 인정되는 제한적인 면책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연방지방법원은 ‘CBS 카메라에 찍힌 모습은 원고 집안의 일부이고, 그 비디오테이프는 정부의 공식 목적과는 관계없는 정보의 강탈이다’고 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했다.

29) *Florida Publishing Co. v. Fletcher* [340 So. 2d 914 (Fla. 1976)] 염규호(1994, 겨울), 앞의 논문, p.61에서 인용.  
이 사건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딸이 사망하자, 기사가 원고의 불탄 집을 소방대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취재하면서 소방서장의 부탁으로 화재현장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제공함과 동시에 기사화한 것인데, 원고는 만일 자신이 집에 있었다면 기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일반인이 매우 흥미를 갖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개인의 주택이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인 취재관행이라는 근거로 면책을 인정하였다.

30) 한위수(1999, 여름),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 71호, p.50.; 양창수(2003, 12월), 앞의 논문, p.45.

31) 한위수(1999, 여름), 앞의 논문, pp.53-54.

32) 연방대법원 판결로 소개한 위 Hill 사건 및 Cantrell 사건의 사안은 보도 내용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염규호(1994, 겨울), 앞의 논문, p.66.

33)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경우라야 한다.

34) 뒤에서 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의 사안이 그러하다.

우리 재판례<sup>35)</sup>에서는 공표된 내용이 '사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다만 언론의 진실보도의무<sup>36)</sup>에 비추어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위 재판례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에게 진실성 내지 상당성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위 c. 유형이 본격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sup>37)</sup>, 현재 우리 실무상 굳이 독립된 사생활 침해 유형으로 다룰 필요는 없고, 위 c. 유형 중 공표 내용이 사적 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위 b. 유형과 함께 검토하면 될 것이다.<sup>38)</sup>

### Ⅲ. 우리의 재판례

앞서 본 바에 비추어, 우리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언론의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① '언론의 취재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 (위 분류법 중 a. 유형)와 ② '언

론의 보도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 (b. 유형 및 공표 내용이 사적 사항인 c.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39)</sup>

#### 1. 언론의 취재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

언론이 취재 단계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즉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대개 미국의 위 분류법 중 'a.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의 유형이다. 우리 재판례에서<sup>40)</sup> 이것이 독립된 사생활 침해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대개 취재가 보도로 이어지고 당사자가 이를 한꺼번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재행위 중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통 초상권 침해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 가. 초기의 재판례

취재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sup>41)</sup>로서, 방송국 기자가 원고의 실기 과외교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을

35) 뒤에서 보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3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37) 그러한 경우에도 필자의 줄건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라기보다 '오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라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38) 양창수(2003, 12월), 앞의 논문. p.45는 위 c. 유형에 대하여 대체로는 명예훼손과 중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한다.

39) 이러한 구분은 언론에게 이의형량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좀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40) 과거부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의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 사안은 많았고(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등 이후 많은 판결), 국가기관이 사생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도 있으나(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는 직접 관계는 없다.

41) 그 이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0. 25. 선고 2000가단21636 판결은 몰래 카메라 방식으로 취재, 보도한 사안에 관하여 "통상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된다"고 판시하여 취재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과외교습 현장인 연습실에 들어가 기자라는 신문을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인터뷰 등의 취재행위를 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연습실에서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sup>42)</sup> 나아가 위 취재행위는 일반인의 통념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시하면서 배척하였다.<sup>43)</sup>

이는 언론이 경찰관의 동의 하에 그와 동행하여 범죄현장인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의 미국의 판례와 유사하다.

종교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원고들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판결<sup>44)</sup>도 개인의 은밀한 주거 영역에 대한 보호의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2. 6. 선고 2002가합 13985 판결은,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문제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신문기자가 이웃 건물에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원고가 그의 아파

트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 게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 범위 내에 침입하여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최고위원, 상임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또한 그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도뿐만 아니라 취재행위의 위법성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법성조각의 근거로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 장소가 비록 원고의 주거라도 측근들과의 회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sup>45)</sup>, 설사 사적 공간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나.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 제시

나아가,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42) 위 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4672 판결은 원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에 대하여 증거 부족 내지 목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43)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사생활 침해 외에 원고의 위 방송국에 대한 명예 훼손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 적시가 없다거나 공공성 및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44) 서울고등법원 2003. 3. 20. 선고 2002나23408 판결.

45) 이 정도 사유만으로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으로 전이된다는 논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차별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① 취재 목적의 공익성, ② 취재행위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을 제시한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은, 탈세범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기 위하여 그 제작진이 원고를 미행하고 원고의 사무실 및 공장을 찾아가 그 내부를 촬영하거나 원고의 주택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를 만나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으로서 위 방송들의 기획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 방송들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2가단368619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고인 모 문화재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여자관계 폭로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미

행 및 비디오 촬영행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sup>46)</sup>,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전제한 후 “위 피고들이 촬영한 내용이 원고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나, 원고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내용은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이러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 외에 원고와 (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었으며,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역시 실제로 이러한 목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2. 언론의 보도 단계에서의 사생활 침해

언론이 보도 단계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즉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우리 실무에서도 주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명예훼손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개 당사자나 법원이 명예훼손의 문제로 주장, 판단하였고, 사생활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명예훼손과 구별됨이 없이 한꺼번에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sup>47)</sup>

46)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미행 및 비디오 촬영 행위는 가사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우리 법상 용인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나 미국의 불법행위학자인 William L. Prosser의 이론에 의하면, 진실성 입증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프라이버시권(the right of privacy)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 점은 그 당부를 떠나 흥미롭다.

47)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2. 26. 96가합31227,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이 사건은 방송국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다른 방송사 차장의 모습을 촬영, 보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 재판례 개요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독립적으로 주장되고 판단된 초기의 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핵물리학자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들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소설 이휘소”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왜곡하였고, 이휘소의 일기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휘소가 이를 쓴 것처럼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휘소와 신청인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들의 이휘소에 대한 경건 감정과 추모의 정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이휘소의 사적 사실(private facts)을 무단으로 공표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표하여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므로, 이휘소와 신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는 ...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위 소설을 읽는 우리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대체로 위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위 이휘소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모습이 실제 생활과 달리 묘사되어 신청인들이 주관적인 감정에는 부분적으로 위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볼 수도 없으며 ... 또한 위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sup>48)</sup>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위 이휘소와 그 유족인 신청인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휘소와 신청인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당사자가 명예훼손 외에 위 4분류법 중 b. c. 양자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였음에도 c. 유형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sup>49)</sup> 한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공적 인물’을 내세웠지만 이 사건에서 공적 인물이 수인하여야 할 사생활 공표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 구체적 기준 제시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sup>50)</sup>

그 후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에서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및 ‘승낙’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51)</sup>

이 판결은 방송사의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실리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하여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던 원고를 만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 하에

48) 서울고등법원 1998. 9. 29.자 98라35 결정도 “공적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그러한 인물에 대한 공표내용이 흥미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적인 비윤리, 비도덕적인 부분 등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 지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내세워 이를 저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49) 명예훼손이 되는 않는 경우 c. 유형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c. 유형의 경우에도 공적 인물은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설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50) 양창수(2003, 12월), 앞의 논문. p.49도 같은 취지.

51) 그 이전에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 방송한 사안에서 유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거론되기는 하였다. 즉 위 사안에 관한 1심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에서 당초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한 것인데, 이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고(승낙의 범위 문제),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위 프로그램의 공익성 항변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그 촬영 후에도 원고들로부터 그 방영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과 내용에 비추어 그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정당한 공적 관심사 여부).

승낙을 받고 취재한 후 방영하면서 그림자 처리된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여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먼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실리콘 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로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원고임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승낙의 범위’와 관련하여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 방송함으로써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명예훼손과 구별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판결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성행위 비디오테이프 내용 공개<sup>52)</sup>,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sup>53)</sup>,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 공개<sup>54)</sup>, 원고의 침실, 이혼과 관련된 내력 등의 공개<sup>55)</sup>,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 보도<sup>56)</sup>, 원고의 비밀에 속하는 편지의 내용, 나체사진의 공개<sup>57)</sup>, 누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터뷰 방영<sup>58)</sup>, 미혼 여성의 성적 체험 내용 공개<sup>59)</sup>, 사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보도<sup>60)</sup>, 구체적인 재산내역 공개<sup>61)</sup> 등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의 성립 및 위법성 요건이 검토되었다.

### 나. 위법성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53)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가합111257(본소), 99가합46565(반소) 판결.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3가단12162 판결.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19. 선고 2003가합21594 판결.

60) 서울고등법원 2000. 3. 9. 선고 99나43440 판결, 보도 내용 중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부분 외에 원고의 인격적 동일성, 주소지, 재산관계의 변동 및 분쟁의 발생 등 원고의 사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그 보도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의 성립을 인정하고, 다만, 공익성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6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1863 판결, 원고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의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례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은 원고와 후에 유명 연예인이 된 여자와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테이프 장면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것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공인으로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배척하고 있다.<sup>62)</sup>

서울고등법원 2001. 5. 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에서는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방송인을 공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① 보도 내용이 그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점, ②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하여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에서는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을 보도한 데 대하여 그 가수 및 상대방 여자가 허위의 사생활 사항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일반론으로서 “언론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물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언론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실시한 후<sup>63)</sup>, 위 가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니<sup>64)</sup> 그것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실명의 게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아<sup>65)</sup>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적 사항에 관한 보도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진실보도의무에 비추어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운다는 것으로, 결국 미국의 위 c. 유형 중 공표 내용이 사적 사항인 경우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기준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에서는 원고가 여성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동봉

62) 피고는 그 외에 공지의 사실, 공개 위협의 감수, 범의 포기 내지 침해의 추인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63) 유명 연예인의 결혼 소식 보도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4) 위 가수의 경우 공적 인물로서 결혼 예정 사실이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고 보도 내용에 다른 내밀한 영역의 사항이나 노출되어서는 안 될 사적인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연예문화의 현황과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65) 상대방 여자를 공적 인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을 보도한 사안에서, '원고의 비밀에 속하는 편지의 내용, 사진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으나, 피고들이 공개한 원고의 편지 및 사진들은 원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sup>66)</sup>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가합111257(본소), 99가합46565(반소)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사안에서, "원고의 앞서 본 여러 비리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침실 등도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촬영, 공표한 부분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적시된 원고의 이혼과 관련된 내력, 학적부, 이력서, 세계정교 신도들이 성경투를 보면서 절하는 모습, 원고의 재산현황을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방영한 장면들은 앞서 본 원고의 범죄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원고의 공격 활동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정당한 공중의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은 원고의 결혼과 이혼 전력, 결혼 생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사안에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이익형량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분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sup>67)</sup>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은 공공성이나 진실성 요건에 관한 판단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언론의 표현 방법의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표현 방법의 상당성'을 뒤에서 논의되는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표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그 표현 방법 외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거나 훨씬 덜 침해하는 표현 방법이 없이 부득이 하였는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의 동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sup>68)</sup> 판결례에 따르면, 누드모델인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였고, 당시 기자가 신분노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보아 원고로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신분 노출 방영은 동의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sup>69)</sup>, 성적 체험을 기사 화함에 있어 그 내용들 중 일부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려우며<sup>70)</sup>, 콘돔캠페인과 관련하여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가합104533 판결도 보도 내용이 원고의 범죄관련적 사실이어서 공익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67) 이 사건에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부인하였다.

68)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가합9230 판결에서는 사망한 이회소의 편지 공개에 대한 그의 목시적 승낙이 인정되었다.

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3가단12162 판결. 당시 기자가 원고와의 인터뷰 전에 옆에 있던 다른 누드모델에게 모자이크 무늬로 얼굴을 가려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는 사안이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19. 선고 2003가합21594 판결.

인터뷰에 동의하면서 비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공식 행사인 콘돔캠페인과 달리 은밀한 사생활 영역인 성적 체험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sup>71)</sup>, 일간 연예 신문사 소속 기자임을 밝히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혼 사유 및 배경과 관련한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뉴스 앵커 및 기자로서 다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던 자가 전화취재에 응하여 답변한 것만으로는 보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sup>72)</sup>

#### IV. 위법성 요건에 대한 검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실무례에서도 사생활 침해가 명예훼손과는 구별된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이 정보화의 심화, 언론의 기능 및 형태의 다변화, 사회적 가치관 내지 관습의 다양화 내지 변화 등에 따라 그 의미와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까지 문제된 침해의 유형을 들여다보더라도 다소 상이한 유형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틀 내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요건이라는 것도 새로운 침해 유형의 등장 가능성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침해 유형별로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우리 재판례에서 검토되었던 위법성조각사유 및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동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즉 프라이버시권도 명예권과 같은 다른 인격권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sup>73)</sup>나 추정적 동의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재판례를 살펴보면, “동의”는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다. 전자는 무단 침입, 몰래 촬영, 미행 등 침해행위 자체에 ‘동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동의’이라는 요건은 항변사유(위법성조각사유)라기 보다 주로 청구원인(성립요건)으로 기능한다.<sup>74)</sup>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 취재(인터뷰 등)에는 동의를 받은 후 그 취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대개 항변사유로 다루어진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sup>75)</sup> 대법원도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sup>76)</sup>, 인간의 존엄의 이념에 의하면 인격권 중에서도 생명과 신체 또는 인격의 내밀 영역과 같이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 존재하고, 인격권 중 내

71) 위 판결

72) 2001. 5. 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

7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74) 형사상으로도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라고 설명한다. 이재상(1997),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p.239. 참조.

75) 법률 문언 상으로도 침해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동의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비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재상(1997), 앞의 책, p.243. 참조.

7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밀 영역이 포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내밀 영역을 침해하는 언론 활동은 사회 윤리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sup>77)</sup>도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는 요건이 새로운 사생활 침해 유형의 등장에 따라 의미를 가지게 될 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문제된 사례들을 보면 사생활 침해에 있어 처분권한 있는 피해자가 적법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그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여 민사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렵다. 극히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언론이 형사책임<sup>78)</sup>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개에 동의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제5조 제2항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동의’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인격권 중 ‘생명’, ‘신체’ 등의 침해에 국한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sup>79)</sup>

### 2. 공공성(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우리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조각사유로 들고 있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나 미국에서 거론되는 ‘뉴스가치성’이나 모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예훼손 분야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공공성’<sup>80)</sup> 요건에 관한 논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실무상 명예훼손 분야에서 ‘공공성’ 요건이 완화되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sup>81)</sup>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 분야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위법성 요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가.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

이 경우 공표된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가 수집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요건이 그대로 인용되기는 어색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재판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취재 목적의 공익성’, ② ‘취재행위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이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보도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하여 그 보도를 위한 취재행위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취재 단계에서 언론이 취하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사생활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으로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취재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취재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시킬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없다. 취재가 언론사나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sup>82)</sup> 따라서 ‘취재 목적의 공익성’은 추후 보도할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재행위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은

77) 박용상(1997), 앞의 책, p.60.

78) 예를 들어 은밀하고 적나라한 성적 경험의 공표로 인한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

79) 형사상 같은 취지의 논리는 이재상(1997), 앞의 책, pp.242-243, 참조.

80) ‘사안의 공공성’ 및 ‘목적의 공익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81) 공공성 요건의 완화 경향에 대하여는 김경환(2003),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민사판례연구 XXV」, p.221 이하 참조.

82) 윤학(2003), 「뉴스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p.292도 같은 취지.

“취재행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없이 부득이 하였는가”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sup>83)</sup>. 취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취재를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면 또는 취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거나 훨씬 덜 침해하는 다른 정보 수집 방법이 있었음에도 취재를 감행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취재 목적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법성 판단의 한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취재행위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의 취재관행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취재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수준의 정보 수집 방식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 나.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실무상 대법원이 밝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익형량의 기준으로서 이익형량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체계화된 것이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sup>84)</sup>

이에 따라 우리 재판례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구체적 인정 근거로 ‘공적 인물’, ‘범죄관련 보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례에서 ‘범죄관련 보도’는 대부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인정되고 있지만, ‘공적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

에 있어서와 같이 ‘공공성’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sup>85)</sup>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 정부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공중의 건강 내지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 등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유명 연예인의 결혼 소식’과 같이 문화적 여건과 사회 관습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대중의 호기심 자극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따라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를 고민하여야 하는 것들도 있다.

향후 실무상 위법성 판단에 관한 구체화,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더불어 ‘표현 방법의 상당성’을 제시하는 재판례도 있는데, 그 의미를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논의 및 뒤에서 보는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비추어, ‘표현 방법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앞서 보았다. 다만, 그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이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서와 같은 정도로 고려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현 방법 선택의 자유’는 ‘취재 방식 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보다 핵심적인 ‘언론의 자유’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다. 법률상의 위법성조각사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동의’ 외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인격권의 침해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를 규정하고 있다.<sup>86)</sup>

83) 이 점에서 ‘취재행위의 상당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다.

84) 양창수(2003, 12월), 앞의 논문, p.57도 같은 취지.

85) 이는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공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황색 언론에 대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86) 위 조항의 규정 형식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라는 요건이 여기에서도 중첩적으로 요구되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설명되는 ‘사회상규’를 위와 같이 중첩적인 요건으로 보아 버리면 나머지 요건은 무의미하게 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곧 ‘위법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라는 요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의’로 인한 위법성조각을 제한하기 위한 의미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적인 관심사’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요건은 우리 재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up>87)</sup> 또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라는 요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재행위 또는 표현 방법의 필요성 내지 부득이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조항이 인격권 전반에 관한 동일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권에도 여러 종류의 권리들이 있고,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처럼 그 개념이 발전 단계에 있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만으로 인격권 침해 특히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이익형량 기준을 구체화, 체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어차피 실무상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언론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있어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사적 사항 공표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있어 피해자가 그 사적 사항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즉 미국의 위 c. 유형 중 공표 내용이 사적 사항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는 아니고, 명예훼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성(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 인정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하다.

결국, 언론의 사생활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기준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진실보도의무에 비추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의 한 기준으로서 수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 맺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 ‘사생활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아니라 유동적인 발전 단계에 있고,<sup>88)</sup> 따라서 그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구체화, 체계화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의 심화, 언론의 기능 및 형태의 다변화, 사회적 가치관 내지 관습의 다양화 내지 변화 등을 생각하면 그 기준 설정은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니라는 염려도 든다.

우리 실무에서도 ‘사생활 침해’가 ‘명예훼손’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고, 그 ‘사생활 침해’ 중에서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새로이 문제되는 과정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심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사생활 침해의 유형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도 보았다. 지금까지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들은 큰 관점에서 보아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실무상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위법성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

87) 다만 ‘중대한’이라는 문언이 무엇인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분야에서 위법성조각 조항인 형법 제310조 규정의 ‘오로지’라는 문언상 엄격성을 판례와 학설이 공공성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 해석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

88) 우리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침해’가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다소 상이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2005년도 조정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883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던 2004년보다도 124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조정신청 사건 처리결과 합의율은 37.8%(334건)로 전년도 37.3%(283건)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32.0%(283건)로 전년도 33.6%(255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조정불성립결정률은 20.5%(181건)로 전년도 18.5%(140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직권조정결정률은 5.8%(51건)로 전년도 8.9%(68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2004년에 비해 124건의 조정신청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은 매년 점증하는 조정신청의 추세와 더불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신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로 인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졌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던 것이 3개월로 늘어났고,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던 방식을 탈피해 구술과 온라인으로도 조정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2.4%로 2004년에 비해 4.0%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60%대의 피해구제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550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278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2,35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68

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조정신청 처리현황 ◇

### I. 조정신청처리현황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합의 334건(37.8%), 직권조정결정 51건(5.8%), 조정불성립결정 181건(20.5%), 기각 19건(2.2%), 각하 15건(1.7%), 취하 283건(32.0%)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합의한 사건과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 기타 처리 결과 중에서 정정 또는 반론 등이 보도된 사건을 포함하여 849건(기각·각하사건 제외)의 조정건수 중에서 530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2.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구제율 66.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전년도에 비해 합의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직권조정결정이 줄고, 조정불성립결정과 각하가 늘어났다. 이는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손해의 배상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법 시행이전·이후의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비교해보면 시행이전에는 합의율이 42.3%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34.0%로 다소 낮아졌다. 또한 취하율은 시행이전이 31.4%로 시행이후의 32.6%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불성립결정률은 시행이전의 17.2%에서

23.3%로 증가하였다.

조정신청 청구권별 신청건수는 정정보도청구 531건(60.1%), 반론보도청구 194건(22.0%), 추후보도청구 17건(1.9%), 손해배상청구 141건(16.0%)으로 전년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2004년 414건, 54.5%) 한편 반론보도청구 대비 정정보도청구의 비율은 약 2.7배로 지난해 반론보도청구 대비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1.4배였던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선호경향이 예년보다 더 한층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정보도청구 요건이 완화된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정정보도청구 사건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법이 시행된 7월 27일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정정보도청구는 287건, 반론보도청구는 120건으로 반론보도청구 대비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약 2.4배였으나 신법 시행후 정정보도청구는 244건, 반론보도청구는 74건으로 반론보도청구 대비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무려 3.3배나 되었다.

언론중재법 시행후 처음으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141건으로 2005년도에 접수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총 건수보다는 적지만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7월 28일 이후의 신청건수는 정정보도청구 244건, 손해배상청구 141건, 반론보도청구 74건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접수되었다.

청구권별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반론보도청구 66.7%, 정정보도청구 63.5%, 추후보도청구 64.7%, 손해배상청구 51.9%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권별 합의율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2.4%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43.3%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1.3%에 머물렀다. 그러나 청구권별 취하율은 정정보도청구가 29.0%로 반론보도청구의 27.8%보다 약간 높은 반면 손해배상청구 취하율은 무려 47.5%를 기록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합의율이 낮고 취하율이 높은 것은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시 요구하는 액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합의율이 낮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정신청의 주된 목적이 언

론보도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으로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언론사와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구권별 불성립결정률은 정정보도청구가 20.3%, 반론보도청구가 16.5%인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29.1%로 다소 높았다.

직권조정결정은 총 51건으로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 28건, 반론보도 19건, 손해배상 7건이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직권조정결정된 51건중 31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20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였다. 이의신청비율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32.4%→39.2%)

##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현황

조정신청인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보면 개인의 조정신청이 385건(43.6%)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가기관 146건(16.5%), 기업체 103건(11.7%), 조합 및 협회 87건(9.9%), 일반단체 58건(6.6%),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31건(3.5%), 공공단체 22건(2.5%), 종교단체 19건(2.2%), 교육기관 12건(1.4%), 언론사 10건(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에 비해 개인의 조정신청이 120건이나 증가한 것은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아울러 위원회가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년 대비 2.5배(2004년 158회, 2005년 393회)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광고를 내보낸 것도 개인의 조정신청건수 증가의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국가기관의 청구건수가 2004년에 비해 44건이나 줄어들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61건(15.9%)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군인·경찰이 39건(10.1%), 공무원 31건(8.1%), 교육자, 무직 각 30건(7.8%), 회사원 27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비해 공무원이 신청한 건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군인·경찰 그리고 교육자의 조정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신청인 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 각각 47.3%, 54.6%로 비교적 높은 반면 조정불성립결정률은 9.6%, 4.5%로 매우 낮았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합의율이 33.0%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조정불성립결정률은 23.9%로 비교적 높은 양상을 보였다.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단체가 66.7%로 개인의 56.6%보다 10% 이상 높았다. 단체의 경우 정당 및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는 모두 피해구제 되었으며, 공공단체 86.4%, 종교단체 78.9%, 국가기관 78.5% 등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기업체는 56.0%,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54.8%, 언론사는 30.0%의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종교인 84.6%, 교육자 72.4%, 언론인 71.4%, 공공기관장 및 조합대표 70.0%, 개인사업자 67.2% 등이 높은 피해구제를 받은 반면 의료인 7.7%, 연예인 9.1%, 군인·경찰 37.8%, 공무원 41.4%, 국회의원 42.9%,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47.1% 등은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 Ⅲ. 조정신청 매체별 현황

매체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 보면 일간지가 492건(55.7%), 방송 151건(17.1%), 주간신문 113건(12.8%), 인터넷신문 48건(5.4%), 월간지 33건(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일간지와 주간신문의 청구가 다소 늘어났으며,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조정대상매체에 포함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도 48건이 있었다. 반면 방송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다소 감소했다. 또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한 조정건수도 2004년 14건에서 2005년에는 4건으로 감소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9.8%로 2004년도의 55.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지방일간지는 31.6%를 차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주간신문은 18.7%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방송매체의 경우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85.1%로, 방송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케이블TV가 13.2%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조정대상 매체로 들어온 인터넷신문의 경우 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접수된 476건중 48건(10.1%)이 접수되었으며 일간신문, 방송, 주간신문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주간신문과 잡지의 합의율이 각각 47.8%, 46.0%로 타매체의 합의율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지방일간지의 직권조정결정과 기각결정 건수가 각각 2건(1.1%)과 1건(0.5%)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각하가 6건(12.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잡지 64.9%, 신문 64.1%, 인터넷신문 59.5%, 방송 57.2%, 통신 53.3%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 일간신문 63.9%, 주간신문 67.0%로 주간신문이 일간신문보다 다소 높았으며, 일간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64.8%로 지방일간지의 62.4%에 비해 약간 높았다. 방송의 경우 라디오 66.7%, TV 58.6%, 케이블TV 47.8% 순으로 나타났다.

### Ⅳ. 조정대상기사 현황

조정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453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행정관련 기사 152건(17.2%), 산업·경제관련 기사 70건(7.9%), 교육관련 기사 35건(4.0%), 종교관련 기사 32건(3.6%), 의료·건강 관련기사 28건(3.2%), 과학·환경관련 기사 25건(2.8%), 연예·스포츠 관련기사, 언론관련 기사 각 15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사회기사 263건(51.6%)에 이어 정치행정기사 111건(21.8%), 경제기사 54건(10.6%) 순으로 청구가 많은데 비해 방송은 사회기사가 122건(70.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건강기사가 12건(6.9%)으로 정치행정기

사 10건(5.7%) 보다 다소 많았으며 주간신문의 경우 사회기사 50건(44.2%), 정치행정기사 18건(15.9%), 종교기사 11건(9.7%) 순이었다. 반면 인터넷신문은 사회기사는 전체 청구 48건 중 10건(20.8%)을 차지하였으며, 연예·스포츠 및 종교기사가 각 8건(16.7%)을 차지해 타 매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411건(80.6%), 해설 및 심층기사 각 25건(4.9%), 사설 20건(3.9%), 논단 및 칼럼 17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이 136건(78.6%), 시사교양프로그램이 21건(12.1%), 교양정보프로그램이 11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66.9%(89건), 2004년 72.7%(128건), 2005년 78.6%(136건)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기자가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32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민원 및 제보 228건(25.8%),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142건(16.1%), 민·형사사건기록 11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로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 6개 중재부가 592건(67.0%), 지방 10개 중재부가 291건(33.0%)을 접수·처리하였다. 서울과 지방 중재부의 합의율은 각 37.8%로 동일했으나, 서울의 경우 직권조정결정 45건(7.6%), 조정불성립결정 130건(22.0%), 기각 17건(2.9%), 각하 9건(1.5%), 취하 167건(28.2%)이었으며, 이에 비해 지방은 직권조정결정 건수 6건(2.1%), 조정불성립결정 51건(17.5%), 기각 2건(0.7%), 각하 6건(2.1%), 취하 116건(39.9%)으로 나타났다. 지방중재부의 취하율이 서울중재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서울중재부의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지방중재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87건(9.9%)으

로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광주중재부 45건(5.1%), 부산중재부 35건(4.0%), 전북중재부 29건(3.3%), 경남중재부 25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재부와 제주중재부, 충북중재부는 2004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방중재부 가운데 경남중재부의 합의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중재부 51.7%, 강원중재부 46.7%, 대전중재부 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경남중재부가 95.2%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강원중재부 93.3%, 제주중재부 91.7%, 충북중재부 70.0%, 대전중재부 66.7%, 전북중재부 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건이 많은 서울과 경기중재부는 각각 62.2%, 51.1%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 VI. 법원 자동 소 제기 현황

새법 시행으로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이의신청되어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건이 2건, 정정 및 손해배상 병합건이 2건, 반론보도청구건이 4건, 손해배상 청구건이 1건이며 9건 모두 계류중이다. 신청인에 의해 이의신청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였다.

### ◇ 시정권고 현황 ◇

2005년에는 일간지 93종, 주간지8종, 주간신문 268종, 월간지 6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173종 등 총 550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278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275건이며 언론중재법 제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17건 가운데 3건을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기사가 88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기사가 85건(30.6%), 마약용량·용법공개기사가 47건(16.9%),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24건(8.6%) 순이었다. 2004년에 비해 자

살관련 상세묘사기사가 급증(7.4%→30.6%)한 반면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의 시정권고 건수는 급감했으며(24.0%→8.6%),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시정권고 건수 역시 급감했다.(40.3%→31.7%)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246건(88.5%)을 차지하였으며 뉴스통신 19건(6.8%), 주간신문 8건(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새로운 심의대상이 된 인터넷 신문의 경우 3건(1.1%)을 차지했다.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이중 3건은 시정권고되었고, 9건은 기각되었으며 4건은 취하되고, 나머지 한건은 유관기관으로 이첩되었다.

#### ◇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 I.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총 2,353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815건(77.1%)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 267건(11.3%), 인터넷실시간 상담 147건(6.2%)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인터넷 실시간 상담 비율(9.8%→6.2%)은 줄어든 반면, 방문 상담은 다소 증가했다.(9.7%→11.3%)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실시간상담 147건 외에 인터넷 게시판상담 94건(40%), 이메일상담 16건(0.7%) 등 총 257건(10.9%)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1,663건(63.2%)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소송제기 등의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554건(21.0%), 타기관 안내 246건(9.3%) 등이었다. 2004년에 비해 조정절차로 안내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55.6%→63.2%)

전체 상담처리 건수 중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는 446건이었으며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26.8%의 접수율을 보였다. 이는 2004년도의 조정신청 접수율 27.6%와 비슷한 수치이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710건(71.0%)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성명권·음성권 등 침해가 172건(7.1%), 신용훼손이 51건(2.1%) 등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도에 비해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55.4%→71.0%)

##### II. 상담신청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매체 987건(39.1%), 방송매체 595건(23.5%), 인터넷 215건(8.5%), 잡지 84건(3.4%), 통신 7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780건(7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4년에 비해 신문매체, 방송매체 모두 감소한 반면(신문: 42.9%→39.1%, 방송: 29.4%→23.5%) 인터넷매체의 상담비율이 대폭 증가했다.(5.4%→8.5%)

##### III. 상담신청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241건(52.7%), 회사 228건(9.7%), 일반단체 120건(5.1%)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개인 상담이 대폭 늘어난 반면(45.6%→52.7%) 회사 및 일반단체의 상담은 크게 감소하였다.(20.4%→14.8%)

상담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비율은 2004년 29.5%, 2005년 29.6%로 큰 차이가 없었다.

##### IV. 교육 현황

2005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평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68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45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14건(20.6%), 공·사기업,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각 2건(각 2.9%), 정당, 공공기관 및 기타 각 1건 이었다. □

## ◇ 조정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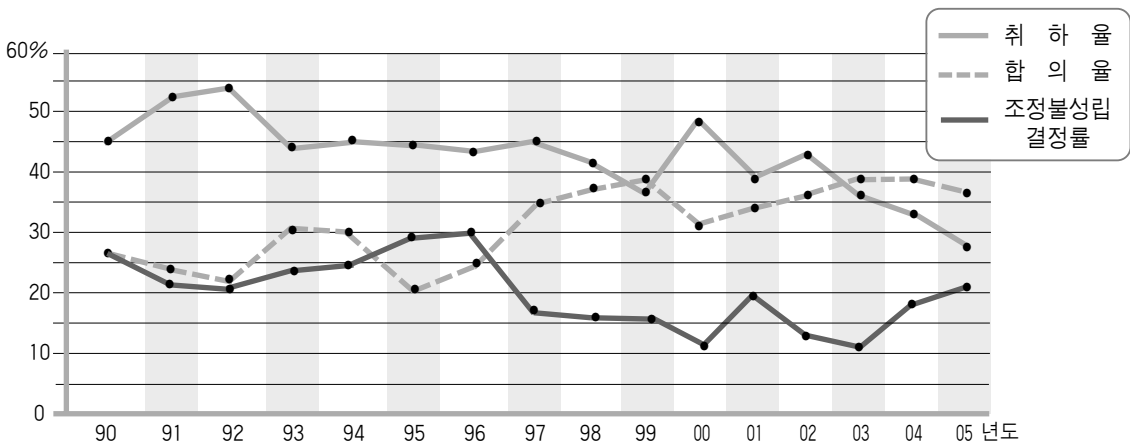
### 1. 조정신청처리현황

조정신청사건 처리결과

\* ( )안은 %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05	883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조정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실질적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연도	구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1981~2002	6,868	196	6,672	3,845	57.6
2003	724	30	694	474	68.3
2004	759	13	746	495	66.4
2005	883	34	849	530	62.4
계	9,234	273	8,961	5,344	59.6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과 이후 처리결과

※ ( )안은 %

구 분	청 구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구 법 (05. 1. 1~7. 27.)	407	172 (42.3)	22 (5.4)	70 (17.2)	14 (3.5)	1 (0.2)	128 (31.4)
신 법 (05. 7. 28~12.31.)	476	162 (34.0)	29 (6.1)	111 (23.3)	5 (1.1)	14 (2.9)	155 (32.6)
계	883	334	51	181	19	15	283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신청현황

(2001. 1. 1. ~ 2005. 12. 31.)

구 분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청구건수	659	511	724	759	883
전년대비 증감		△148	213	35	124

청구권별 처리결과

※ ( )안은 %

구 분	청 구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531(60.1)	225(42.4)	28(5.3)	108(20.3)	9(1.7)	7(1.3)	154(29.0)
반 론	194(22.0)	84(43.3)	16(8.3)	32(16.5)	7(3.6)	1(0.5)	54(27.8)
추 후	17(1.9)	9(52.9)					8(47.1)
손 배	141(16.0)	16(11.3)	7(5.0)	41(29.1)	3(2.1)	7(5.0)	67(47.5)
계	883(100.0)	334(37.8)	51(5.8)	181(20.5)	19(2.2)	15(1.7)	283(32.0)

최근 5년간 청구권별 조정신청현황

※ ( )안은 %

구 분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정 정	418	307	503	414	531	2,173(61.5)
반 론	221	201	216	301	194	1,133(32.0)
추 후	20	3	5	44	17	89(2.5)
손 배					141	141(4.0)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 청구권별 피해구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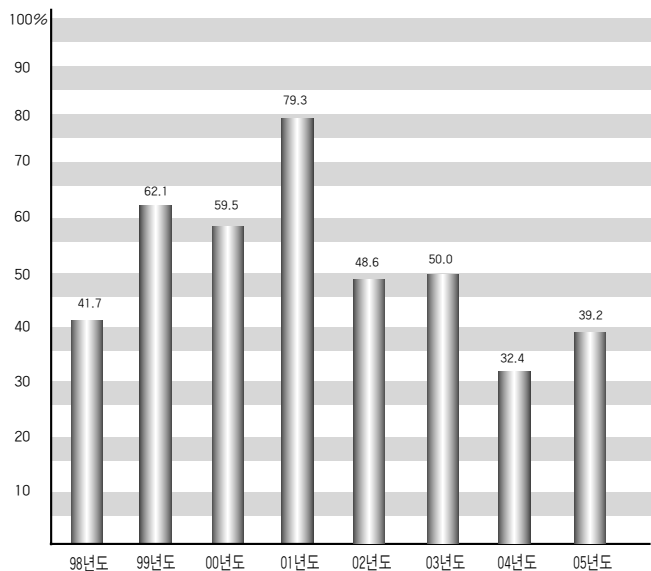
구분 \ 유형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정정	531	16	515	327	56.6
반론	194	8	186	124	78.5
추후	17		17	11	54.8
손배	141	10	131	68	86.4
계	883	34	849	530	62.4

###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 조정신청현황

※ ( )안은 %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명예 및 사생활침해	643	493	698	718	845	3,397(96.1)
신용훼손	9	10	10	39	36	104(2.9)
기타	7	8	16	2	2	35 (1.0)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 조정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 )안은 %

신청인 유형	구 분	청 구 건 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 인		385(43.6)	375	10		127(33.0)	22(5.7)	92(23.9)	13(3.4)	10(2.6)	121(31.4)
국가기관		146(16.5)	145		1	69(47.3)	13(8.9)	14(9.6)	1(0.7)	1(0.7)	48(32.9)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31(3.5)	31			12(38.7)	4(12.9)	9(29.0)			6(19.4)
공공단체		22(2.5)	22			12(54.6)		1(4.5)			9(40.9)
정 당		7(0.8)	7			5(71.4)					2(28.6)
조합 및 협회		87(9.9)	87			37(42.6)		22(25.3)	1(1.1)	1(1.1)	26(29.9)
일반단체		58(6.6)	57		1	23(39.7)	2(3.4)	13(22.4)	1(1.7)	3(5.2)	16(27.6)
종교단체		19(2.2)	19			7(36.8)	1(5.3)	3(15.8)			8(42.1)
기업체		103(11.7)	80	23		35(33.9)	5(4.8)	21(20.4)	3(3.0)		39(37.9)
언론사		10(1.1)	10			2(20.0)	2(20.0)	5(50.0)			1(10.0)
금융기관		3(0.3)	3				2(66.7)				1(33.3)
교육기관		12(1.4)	12			5(41.7)		1(8.3)			6(50.0)
계		883(96.0)	848(96.0)	33(3.7)	2(0.2)	334(37.8)	51(5.8)	181(20.5)	19(2.2)	15(1.7)	283(32.0)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처리결과

※ ( )안은 %

직업	구 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국회의원		14(3.6)	3	1	6			4
법 조 인		2(0.5)	1		1			
공 무 원		31(8.1)	6	4	4	2		15
군인/경찰		39(10.1)	7	2	10	2		18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4.4)	5		7			5
정당정치인		4(1.0)	4					
의 료 인		15(3.9)		2	2		2	9
문화예술인		6(1.6)	1		5			
종 교 인		14(3.6)	6	2	2		1	3
회 사 원		27(7.0)	3	2	4	1		17
언 론 인		15(3.9)	6		3	1		5
교 육 자		30(7.8)	18		7	1		4
개인사업가		61(15.9)	19	5	16		3	18
금융업종사자		5(1.3)			4			1
연 예 인		11(2.9)	1		10			
학 생		10(2.6)	4		1	1		4
시민활동가		6(1.6)	3	1	1		1	
공공기관장/조합대표 협회장		10(2.6)	6		3			1
주 부		4(1.0)	1			2		1
무 직		30(7.8)	21	1	3	2	3	
기 타		34(8.8)	12	2	3	1		16
계		385	127(33.0)	22(5.7)	92(23.9)	13(3.4)	10(2.6)	121(31.4)

최근 5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 ( )안은 %

유형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개인	307	216	247	265	385	1,420(40.1)
국가기관	48	22	164	190	146	570(16.1)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23	26	43	33	31	156(4.4)
공공단체	14	17	17	30	22	100(2.8)
정당	4	10	1	3	7	25(0.7)
조합 및 협회	87	49	60	69	87	352(10.0)
일반단체	61	35	71	34	58	259(7.3)
종교단체	7	12	16	11	19	65(1.8)
기업체	66	90	71	98	103	428(12.1)
언론사	19	20	10	15	10	74(2.1)
금융기관	3	3	1	1	3	11(0.3)
교육기관	10	7	14	8	12	51(1.4)
의료기관	10	4	9	2		25(0.7)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

유형 \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개인	385	23	362	205	56.6
국가기관	146	2	144	113	78.5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31		31	17	54.8
공공단체	22		22	19	86.4
정당	7		7	7	100.0
조합 및 협회	87	2	85	50	58.8
일반단체	58	4	54	35	64.8
종교단체	19		19	15	78.9
기업체	103	3	100	56	56.0
언론사	10		10	3	30.0
금융기관	3		3	3	100.0
교육기관	12		12	7	58.3
계	883	34	849	530	62.4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

구 분 직업	청구건수(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국회의원	14		14	6	42.9
법조인	2		2	1	50.0
공무원	31	2	29	12	41.4
군인/경찰	39	2	37	14	37.8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		17	8	47.1
정당정치인	4		4	4	100.0
의료인	15	2	13	1	7.7
문화예술인	6		6	1	16.7
종교인	14	1	13	11	84.6
회사원	27	1	26	9	34.6
언론인	15	1	14	10	71.4
교육자	30	1	29	21	72.4
개인사업가	61	3	58	39	67.2
금융업종사자	5		5	1	20.0
연예인	11		11	1	9.1
학생	10	1	9	6	66.7
시민활동가	6	1	5	3	60.0
공공기관장/ 조합대표 협회장	10		10	7	70.0
주부	4	2	2	2	100.0
무직	30	5	25	22	88.0
기타	34	1	33	26	75.8
계	385	23	362	205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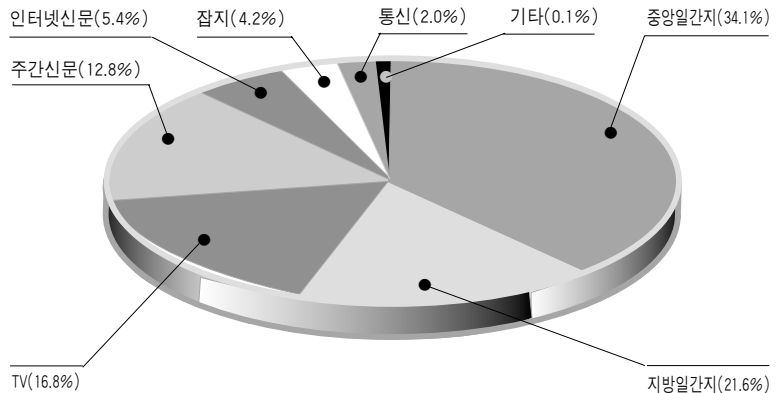
### Ⅲ. 조정대상 매체별 처리현황

####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처리결과		신 청 건 수	합 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매체유형								
신 문	중 앙 일 간 지	301	113 (37.5)	17 (5.7)	55 (18.3)	10 (3.3)	1 (0.3)	105 (34.9)
	지 방 일 간 지	191	70 (36.6)	2 (1.1)	32 (16.8)	1 (0.5)	4 (2.1)	82 (42.9)
	주 간 신 문	113	54 (47.8)	4 (3.5)	26 (23.0)		1 (0.9)	28 (24.8)
방 송	T V	148	50 (33.8)	18 (12.2)	30 (20.2)	7 (4.7)	1 (0.7)	42 (28.4)
	라 디 오	3		2 (66.7)	1 (33.3)			
	C A T V	23	8 (34.8)		7 (30.4)			8 (34.8)
잡 지		37	17 (46.0)	6 (16.2)	11 (29.7)			3 (8.1)
통 신		18	6 (33.3)		6 (33.3)	1 (5.6)	2 (11.1)	3 (16.7)
인 터 넷 신 문		48	15 (31.2)	2 (4.2)	13 (27.1)		6 (12.5)	12 (25.0)
기 타		1	1 (100.0)					
계		883	334 (37.8)	51 (5.8)	181 (20.5)	19 (2.2)	15 (1.7)	283 (32.0)

#### 매체별 조정신청률



최근 5년간 매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 ( )안은 %

연도 \ 매체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
일간지	416	303	485	449	492	2,145(60.7)
주간신문	85	89	60	89	113	436(12.3)
시사주간지	18	10	10	14	4	56(1.6)
방송	105	89	121	161	151	627(17.7)
CATV	9	1	12	15	23	60(1.7)
월간지	16	14	22	18	33	103(2.9)
통신	8	4	13	10	18	53(1.5)
인터넷신문					48	48(1.4)
기타	2	1	1	3	1	8(0.2)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조정대상 매체별 피해구제율

\* ( )안은 %

매체유형 \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신문	중앙일간지	301	11	290	188	64.8
	지방일간지	191	5	186	116	62.4
신문	주간신문	113	1	112	73	65.2
방송	TV	148	8	140	82	58.6
	라디오	3		3	2	66.7
	CATV	23		23	11	47.8
잡지	37		37	24	64.9	
통신	18	3	15	8	53.3	
인터넷신문	48	6	42	25	59.5	
기타	1		1	1	100.0	
계	883	34	849	530	62.4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손 훼손	신용손 훼손	기타	합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 지	경향신문	24	24			12	1	3			8
	국민일보	22	20	2		6		1			15
	내일신문	10	10			4		4			2
	동아일보	25	25			7	3	7	1		7
	문화일보	22	22			9	3	4			6
	서울신문	5	5			3					2
	세계일보	26	26			10		6	2		8
	조선일보	47	46	1		16	4	12	3	1	11
	중앙일보	12	11		1	5	1	2	2		2
	한겨레	29	28	1		13	1	6	1		8
	한국일보	18	16	2		7	2	2			7
	소계	240	233	6	1	92	15	47	9	1	76
	지방 일간 지	부산									
국제신문		8	8			2	1				5
부산일보		12	12			4		2			6
부산신문		2	2			1		1			
대구											
대구신문		1	1								1
매일신문		5	5			2					3
영남일보		1	1			1					
광주											
광주매일		2	2								2
광주일보		1	1			1					
광주일보		5	4		1	4					1
남도일보		2	2			1		1			
대한일보		3	3			2					1
무등일보		9	9			1		6		1	1
전남도민일보		1	1								1
전남매일		2	2			1					1
전남일보		2	2			1					1
호남매일		4	4								4
호남일보	1	1								1	
대전											
대전일보	4	2	2		2					2	
충도일보	3	3			1					2	
경기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매일	5	5			1		3			1	
경기일보	3	3					1			2	
경도일보	2	2								2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3	3								3	
도민일보	1	1								1	
기호일보	2	2			2						
서울일보	2	2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인	시대일보	6	6		3	1				2	
		신아매일	2	2		1					1	
	천·경 기	아세아일보	1	1		1						
		우리일보	3	3				1			2	
		인천일보	9	9				4			5	
		중부일보	11	11		3		3			5	
		전국매일	2	2		2						
		현대일보	1	1		1						
방	강원	강원일보	5	5							5	
		동양일보	5	5		2					3	
	충북	한빛일보	3	3		2					1	
		충청투데이	5	5		2		2			1	
		한민일보	1	1		1						
		매일전북	3	3		3						
	일 간	전북	새전북신문	4	4		2		2			
			전라일보	2	2		2					
전민일보			2	2		1					1	
전북도민일보			3	3				1			2	
울산·경남		전북매일	1	1		1						
		전북일보	6	6		3		1			2	
		전북중앙신문	2	2		1					1	
		경남도민일보	7	7		3				1	3	
지	경남신문	2	2		1				1			
	경남일보	6	6		4			1	1	1		
	경상일보	2	2		1		1					
	광역일보	1	1							1		
	울산매일	2	2				1			1		
제주	제민일보	4	4		2					2		
	제주일보	4	4				1	1		2		
소계		193	190	2	1	71	2	33	1	4	82	
경 제 지	경제	매일경제	9	9		4		1			4	
		머니투데이	5	5				4			1	
		서울경제	15	15		5	1	1			8	
		제일경제	4	4		4						
		파이낸셜뉴스	3	3		2					1	
		한국경제	7	7				1	1		5	
		헤럴드경제	12	11	1		6	1	1		4	
		소계	55	54	1		21	2	8	1		23
스포츠지	스포츠지	스포츠조선	2	2							2	
		소계	2	2							2	
특수 일간지	특수 일간지	농민신문	1	1							1	
		매일노동뉴스	1	1							1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 해 유 형			치 리 결 과					
			명 예 손	신 용 손	기 타	합 의	직권조정 결 정	조 불 성 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특수 일간지	전 자 신 문	1	1								1
	데일리포커스	1	1								1
	소 계	4	4								4
중 앙 방 송	KBS-1TV	26	25	1		7	5	8	1		5
	KBS-2TV	10	8	2		1	1	3	2		3
	MBC-TV	43	38	5		15	6	9	3		10
	SBS-TV	39	33	6		18	4	4			13
	EBS-TV	2	2					2			
	MBC-R	1	1					1			
	SBS-R	2	2				2				
	소 계	123	109	14		41	18	27	6		31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3	3					2			1
	춘천KBS-1TV	1	1			1					
	청주KBS-1TV	1	1								1
	울산KBS-1TV	1	1						1		
	전주KBS-1TV	2	2				2				
	창원KBS-1TV	1	1								1
	제주KBS-1TV	2	2			1					1
	부산MBC-TV	1	1								1
	원주MBC-TV	2	2			1					1
	대구MBC-TV	1	1			1					
	마산MBC-TV	1	1							1	
	여수MBC-TV	1	1								1
	제주MBC-TV	2	2			1					1
소 계	19	19			5	2	2	1	1	8	
지 역 민 방	GTB-TV	2	2			1					1
	KC-TV	1	1			1					1
	PSB-TV	1	1								1
	CJB-TV	1		1							1
	KBC-TV	1	1			1					
	TJB-TV	2	1	1				2			
	소 계	8	6	2		3		2			3
CA TV	M B N	1		1							1
	한국케이블TV중부	2	2			1					1
	Y T N	21	16	5		8		7			6
	소 계	24	18	6		9		7			8
통 신	뉴 시 스	6	6			3		1		1	1
	연합 뉴스	12	12			3		5	1	1	2
	소 계	18	18			6		6	1	2	3
시사 주간지	주간 동아	2	2				2				
	주간 한국	2	2			2					
	소 계	4	4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 해 유 형			치 리 결 과					
			명 혜 손	신 용 손	기 타	합 의	직권조정 결 정	조 정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사 주간 신문	시 민 의 신 문	2	2			1		1			
	일 요 시 사	3	3			3					
	일 요 신 문	3	3			1		1		1	
	토 요 신 문	1	1							1	
	소 계	9	9			5		2		2	
지 역	대 구 신 문	1	1							1	
	강원북부신문	1	1			1					
	주간해진신문	1	1					1			
	평택신문	1	1							1	
	안성시민신문	1	1					1			
	씨티21신문	1	1			1					
	동대문신문	2	2			2					
	부천오늘신문	1	1			1					
	홍성신문	1	1			1					
	합천신문	2	2			1				1	
주 간 신 문	강원사회복지신문	2	2			2					
	부천자치신문	6	6			2		3	1		
	백제신문	1	1			1					
	강남신문	1	1							1	
	양주신문	3	3			3					
	여주신문	2	2							2	
	보령신문	2	2			1		1			
	주간김포신문	4	4			1				3	
	장성닷컴신문	3	3			1				2	
	주간하나로신문	4	4			1				3	
신 문	세종신문	4	4			1		2		1	
	사하신문	2	2							2	
	전북장애인신문	1	1			1					
	함안신문	1	1			1					
	나주신문	2	2			1				1	
	영산강포커스	2	2			1				1	
	망운신문	2	2			2					
	반월신문	2	2					2			
	리더	2	2					2			
	상주자치신문	2	2					2			
특수주간 신문	칠곡신문	2	2							2	
	의령신문	1	1			1					
	소 계	63	63			27		14	1	21	
	현대불교신문	1	1					1			
	SP투데이	1	1					1			
	아파트관리신문	1	1			1					
	불교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 수 주 간 신 문	코스메틱퀵슈머	2	2			1		1			
	목회자신문	1	1			1					
	한국주택신문	1	1			1					
	한국에너지신문	1	1			1					
	의협신문	1	1			1					
	한국마케팅신문	1	1			1					
	한국금융	1	1					1			
	기자협회보	1	1				1				
	농수축산신문	1	1				1				
	총신원보	2	2			1					1
	크리스천투데이	3	3			3					
	주간교수신문	1	1			1					
	기독교보	1	1			1					
	법률신문	1	1				1				
	문화경제신문	1	1			1					
	미디어오늘	4	4			1		2			1
	패션인사이트	1		1				1			
	교육희망	2	2			1	1				
	한국농어민신문	1	1			1					
	한국농기계신문	2	2			1					1
기독교신문	2	2					2				
여행미디어	1	1			1						
한국전기신문	2	2			1					1	
농업정보신문	1	1								1	
한국불교신문	1	1					1				
소계	40	39	1		21	4	10			5	
월 간 지	월간군사저널	1	1					1			
	월간조선	8	8			2	2	4			
	주부생활	2	2			1					1
	소비자시대	1	1					1			
	댄스포럼	1	1			1					
	신동아	5	5			2	1	1			1
	코렘	1	1					1			
	교회와이단	4	4			3					1
	앙앙	2	2			2					
	퀵	2	2			1	1				
	현대종교	3	3			1		2			
	월간거제	2	2			2					
소계	32	32			15	4	10			3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5	5					3		1	1
	프레시안	2	2					2			
	노컷뉴스	3	3			1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직권조정 결 정	조 정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데 일 리 안	1	1							1	
	브레이크뉴스	1	1			1					
	이 데 일 리	2		2				2			
	데 일 리 팜	4	2	2						2	2
	디시인사이드	1	1			1					
	인터넷뉴스바이러스	2	2			2					
	인터넷미디어오늘	3	3			2					1
	인터넷서울경제	1	1							1	
	인터넷시민의신문	1	1			1					
	대 자 보	1	1			1					
	엑스포즈뉴스	2	2			1					1
	교회와신앙	2	2			1					1
	뉴스앤조이	6	6			1					5
	마이데일리	3	3					2		1	
	투데이뉴스	2	2			2					
	코리아포커스	2	2					2			
	정읍뉴스	2	2				2				
	강원E좋은뉴스	2	2			1					1
	소 계	48	44	4		15	2	13		6	12
기 타	청담교회주보	1	1			1					
	소 계	1	1			1					
총	계	883	845	36	2	334	51	181	19	15	283

#### Ⅳ. 조정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조정대상기사 내용 현황

\* ( )안은 %

매체유형	구분	기사내용	신청건수	조정대상기사 내용 현황											
				정치행정	경제	사회	과학환경	문화	종교	의료건강	스포츠연예	부고동정	교육	언론	기타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240	73	22	112	8	1		3		3	3	3	12
	지방지		191	26	8	128	7	6		3		1	8	1	3
	경제지		55	10	21	11	4			1			4		4
	스포츠지		2			2									
	특수일간지		4	1	2								1		
	통신		18	1	1	10		2		1	2		1		
	소계		510	111	54	263	19	9		8	2	4	17	4	19
방송	전국방송		124	10	3	83	3	2	4	8			5	1	5
	지역방송		26			22				2			1		1
	C A T V		24		2	17		2		2					1
	소계		174	10	5	122	3	4	4	12			6	1	7
주간신문		113	18	6	50	3	1	11	3	2	2	6	5	6	
잡지		37	9		8			8	1	3	4		2	2	
인터넷신문		48	4	5	10			8	4	8		6	3		
기타		1						1							
합계		883 (100.0)	152 (17.2)	70 (7.9)	453 (51.3)	25 (2.8)	14 (1.6)	32 (3.6)	28 (3.2)	15 (1.7)	10 (1.1)	35 (4.0)	15 (1.7)	34 (3.9)	

매체유형별 조정대상 기사의 종류

\* ( )안은 %

매체	구분	기사종류	신청건수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	411 (80.6)
		해설	25 (4.9)
		사설	20 (3.9)
		논단·칼럼	17 (3.3)
		인터뷰	1 (0.2)
		비평	3 (0.6)
		가설	2 (0.4)
		인물·동정	2 (0.4)
		심층(조사분석)	25 (4.9)
		사진	1 (0.2)
		발표문	2 (0.4)
		기타	1 (0.2)
	계	510 (100.0)	
방송		뉴스해설	112 (64.7)
		뉴스내고발프로	24 (13.9)
		시사고발프로	21 (12.1)
		교양정보	11 (6.4)
		퀴즈게임프로	1 (0.6)
		인터뷰정보	2 (1.2)
		다큐멘터리	2 (1.2)
	계	173 (10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 ( )안은 %

매체유형 \ 취재원	기자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기록	보도자료 및 발표 자료	통신·타매체 보도	인터넷 사이트	기 타	합 계
일간지·통신	181	100	86	111	11	4	17	510
방 송	53	66	29	17	2	1	6	174
주간신문	62	36	1	3	4	3	4	113
잡 지	14	15	1	1	3	3		37
인터넷신문	15	11	2	10		1	9	48
기 타							1	1
합 계	325 (36.8)	228 (25.8)	119 (13.5)	142 (16.1)	20 (2.3)	12 (1.3)	37 (4.2)	883 (100.0)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 ( )안은 %

구 분 청구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29 (60.4)	13 (44.8)	1 (3.5)	6 (20.7)		5 (17.2)	4 (13.8)
반 론	2 (4.2)	2 (100.0)					
손 배	17 (35.4)		1 (5.9)	7 (41.2)		1 (5.9)	8 (47.0)
계	48 (100.0)	15 (31.2)	2 (4.2)	13 (27.1)		6 (12.5)	12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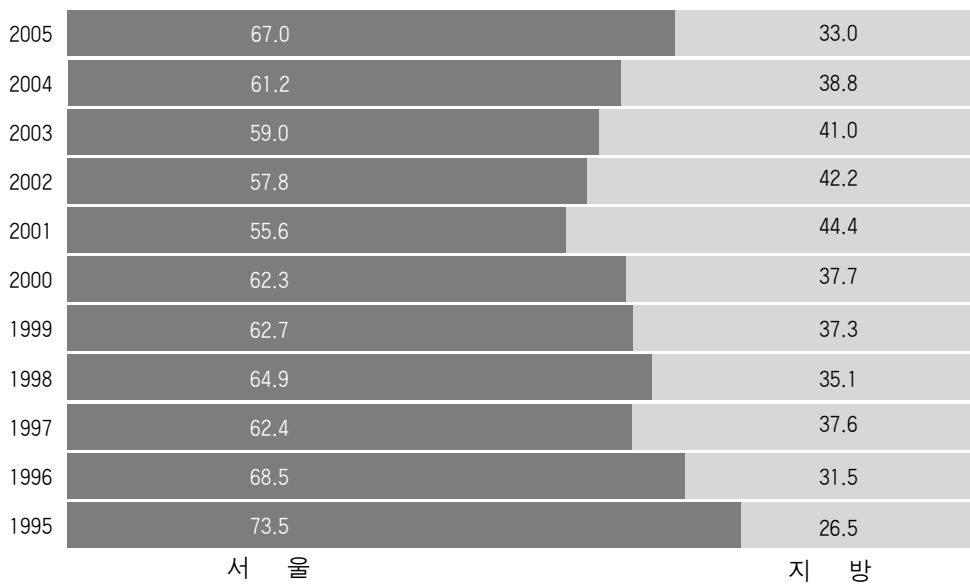
## V. 중재부별 처리결과

### 중재부별 처리결과

※ ( )안은 %

중재부	청구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서울	592(67.0)	224(37.8)	45(7.6)	130(22.0)	17(2.9)	9(1.5)	167(28.2)
부산	35(4.0)	8(22.8)	1(2.9)	7(20.0)	1(2.9)		18(51.4)
대구	14(1.6)	4(28.6)		2(14.3)			8(57.1)
광주	45(5.1)	17(37.8)		8(17.8)		1(2.2)	19(42.2)
대전	18(2.0)	8(44.4)		5(27.8)			5(27.8)
경기	87(9.9)	27(31.0)	1(1.1)	24(27.6)		1(1.1)	34(39.2)
강원	15(1.7)	7(46.7)					8(53.3)
충북	10(1.1)	4(40.0)					6(60.0)
전북	29(3.3)	15(51.7)	4(13.8)	4(13.8)			6(20.7)
경남	25(2.8)	15(60.0)				4(16.0)	6(24.0)
제주	13(1.5)	5(38.5)		1(7.7)	1(7.7)		6(46.1)
계	883	334(37.8)	51(5.8)	181(20.5)	19(2.2)	15(1.7)	283(32.0)

###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최근 5년간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 ( )안은 %

연 도 중재부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
서울중재부	428	307	496	558	592	2,381(67.3)
부산중재부	21	15	18	27	35	116(3.3)
대구중재부	18	14	20	17	14	83(2.3)
광주중재부	32	39	40	32	45	188(5.3)
대전중재부	19	16	20	15	18	88(2.5)
경기중재부	62	45	64	41	87	299(8.5)
강원중재부	9	7	10	13	15	54(1.5)
충북중재부	16	16	6	4	10	52(1.5)
전북중재부	36	25	25	27	29	142(4.0)
경남중재부	17	20	16	20	25	98(2.8)
제주중재부	1	7	9	5	13	35(1.0)
계	659	511	724	759	883	3,536(100.0)

중재부별 피해구제율

구 분 중재부	청구건수(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서울중재부	592	26	566	352	62.2
부산중재부	35	1	34	19	55.9
대구중재부	14		14	8	57.1
광주중재부	45	1	44	24	54.5
대전중재부	18		18	12	66.7
경기중재부	87	1	86	44	51.1
강원중재부	15		15	14	93.3
충북중재부	10		10	7	70.0
전북중재부	29		29	19	65.5
경남중재부	25	4	21	20	95.2
제주중재부	13	1	12	11	91.7
계	883	34	849	530	100.0

## Ⅵ. 자동 소 제기 현황

구 분 매 체 명	건 수	청 구 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정정손배	신청인	피신청인	계 속
조 선 일 보	2	2				1	1	2
법 률 신 문	1		1			1		1
정 음 뉴 스	1				1		1	1
교 육 희 망	1			1			1	1
월 간 조 선	1				1		1	1
M B C - T V	3		3				3	3
계	9	2	4	1	2	2	7	9

## ◇ 2005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 Ⅰ.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개인적 범익침해					사회적범익침해			국가적 범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싱세묘사	기 타	
일 서 간 지 울	경 향 신 문	1				1					
	국 민 일 보	3			2				1		
	내 일 신 문	3			1		1		1		
	동 아 일 보	1						1			
	문 화 일 보	2			1				1		
	서 울 신 문	6			2	1		1	2		
	세 계 일 보	1								1	
	조 선 일 보	6			1		2		2	1	
	중 앙 일 보	0									
	한 겨 레	4			1			2	1		
	한 국 일 보	3			1				2		
시 민 일 보	1	1									

매 체		시정권고 건수	개인적 범익침해					사회적 범익침해			국가적 범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	서	매 일 경 제	1		1						
		서 울 경 제	1					1			
		한 국 경 제	1		1						
		헤 렐 드 경 제	1				1				
		스 포 츠 서 울	0								
		스 포 츠 조 선	2						1	1	
		스 포 츠 투 데 이	1						1		
	울	스 포 츠 한 국	0								
		일 간 스포 츠	0								
		더 데 일 리 포 커 스	1					1			
		데 일 리 줌	0								
		메 트 로	0								
		에 이 엠 세 븐	0								
		소 계	39	1	11	2	4	6	12	3	
간	부 산	국 제 신 문	1					1			
		부 산 일 보	4		2				2		
	대 구 · 경 북	경 북 매 일 신 문	6		3	1			2		
		경 북 일 보	2		1				1		
		대 구 신 문	0								
		대 구 일 보	7		2			1	4		
		동 남 일 보	2			1			1		
		매 일 신 문	2						2		
	대 전 · 충 남	영 남 일 보	8	1	4	1		1	1		
		대 전 일 보	3					1	2		
중 도 일 보		4					1	3			
충 남 도 민 일 보		2			1		1				
지	광 주 · 전 남	충 남 일 보	3					2	1		
		충 청 투 데 이	1		1						
		광 남 일 보	3		2		1				
		광 주 매 일	1		1						
		광 주 일 보	9		4				5		
		남 도 일 보	2		1				1		
		대 한 일 보	3		1	1				1	
		무 등 일 보	3		2				1		
전 광 일 보	1		1								
전 남 매 일	2		1	1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개인적 범익침해					사회적 범익침해			국가적 범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 간 지	울 산·경 남	경남도민일보	5		1	1		3			
		경 남 매 일	2					1	1		
		경 남 신 문	6		2			2	1	1	
		경 남 일 보	4					3	1		
		경 상 일 보	0								
	제 주	광 역 일 보	0								
		울 산 매 일	1		1						
		제 민 일 보	0								
		제 주 일 보	1		1						
		한 라 일 보	2						2		
	소 계	207	8	70	20	3	35	65	6		
뉴스 통신	연 합 뉴 스	13		3	1	1	4	4			
	뉴 시 스	6	2	1	1		2				
	소 계	19	2	4	2	1	6	4			
주 간 지 · 주 간 신 문	뉴스메이커	0									
	시 사 저 널	0									
	주 간 동 아	0									
	주 간 조 선	0									
	주 간 한 국	0									
	한 겨 레 2 1	0									
	매경ECONOMY	0									
	ECONOMIC REVIEW	0									
	월 요 신 문	1								1	
	일 요 시 사	1		1							
	일 요 신 문	1								1	
	거 제 통 영 고 성 타임즈	1						1			
	거 제 신 문	1						1			
	연 합 신 문	1						1			
	주간한산신문	1						1			
함안군민신문	1		1								
소 계	8		2				4	2			
월 간 지	말	0									
	신 동 아	0									
	월 간 조 선	1							1		
	월 간 중 앙	0									
	여 성 동 아	0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개인적 법익침해					사회적 법익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지	여 성 중 앙	0										
	소 계	1									1	
인터넷 신문	노 컷 뉴 스	1					1					
	머 니 투 데 이	1					1					
	새 충 청 일 보	1		1								
	소 계	3		1		2						
방 송	M B C - T V	1									1	
	소 계	1									1	
총 계		278	11		88	24	10	47	85	13		

## II. 매체별 신청심의 매체별 의결현황

2005. 7. 28. ~ 2005. 12. 31.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및 결과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 타	시 정 권 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지	조 선 일 보	1	1	1				1				
	일 간 스포 츠	1	1	1					1			
	경 기도 민 일 보	1	1	1					1			
주간지	주 간 한 국	1	1	1							1	
일간지	월 간 양 양	3	3	3					3			
뉴스통신	연 합 뉴 스	2	2	2							2	
인터넷 신문	머 니 투 데 이	1	1	1				1				
	오 토 데 일 리	1	1	1							1	
	한 겨 레 플 러 스	2	2	2					2			
방 송	M B C - T V	1		1				1				
	S B S - T V	2	2	2					2			
	큐 립 스 케 이 블	1			1							1
총 계		17	15	15	1		1	3	9		4	1

##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 I. 언론피해상담 처리현황

#### 상담신청유형

※ ( )안은 %

연 도	상담건수	전 화	방 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 담	기 타
2004 (4.1.~12.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계	4,169 (100.0)	3,161 (75.8)	443 (10.6)	324 (7.8)	171 (4.1)	31 (0.7)	39 (0.8)

#### 상담처리결과

※ ( )안은 %

연 도	구 분 건 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 체 종 결	기 타	총 계	
2004 (4.1.~12.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31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446
계	4,169	2,814 (59.8)	1,087 (23.1)	154 (3.3)	429 (9.1)	145 (3.1)	75 (1.6)	4,704 (100.0)	764 (27.1)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 피해유형

※ ( )안은 %

연 도	구 분 건 수	피 해 유 형					총 계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초상권·성명권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 해	기 타	
2004 (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계	4,169	2,744 (64.2)	204 (4.8)	309 (7.2)	57 (1.3)	962 (22.5)	4,276 (100.0)

\*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총계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매체유형

※ ( )안은 %

연도	구분 건수	매체유형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월간지	통신	인터넷	기타	불명	
2004 (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계	4,169	1,421 (31.9)	435 (9.8)	1,160 (26.1)	92 (2.1)	109 (2.4)	318 (7.1)	23 (0.5)	894 (20.1)	4,452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시사주간지는 편의상 주간신문에 포함시켰음.

## 신청인유형

※ ( )안은 %

연도	상담건수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등	기타	불명
2004 (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0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계	4,169 (100.0)	2,070 (49.7)	261 (6.3)	457 (11.0)	47 (1.1)	15 (0.3)	86 (2.1)	2 (0.1)	1,231 (29.5)

## 월별 상담신청유형

※ ( )안은 %

월	상담건수	방문	전화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타
1월	171	16	126	15	10	2	2
2월	152	15	122	11	4	0	0
3월	232	30	179	12	5	3	3
4월	187	25	137	14	8	3	0
5월	218	18	177	17	2	2	2
6월	196	34	142	14	3	2	1
7월	198	22	152	18	6	0	0
8월	239	30	180	18	10	0	1
9월	197	21	155	8	13	0	0
10월	211	20	168	8	12	0	3
11월	193	21	149	6	14	2	1
12월	159	15	128	6	7	2	1
계	2,353 (100.0)	267 (11.3)	1,815 (77.1)	147 (6.2)	94 (4.0)	16 (0.7)	14 (0.6)

◇ 연도별 조정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조정처리결과

( )안은 %

구 분 연 도	처 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2001	659	229	6	23	132	18	2	249
2002	511	182	18	17	62	8	1	223
2003	724	287	15	15	101	27	3	276
2004	759	283	46	22	140	13		255
2005	883	334	31	20	181	19	15	283
계	9,234 (100.0)	2,995 (32.4)	163 (1.8)	152 (1.6)	1,848 (20.0)	220 (2.4)	53 (0.6)	3,803 (41.2)

연도별 피해구제율

구 분 연 도	처리건수 A	계속·기각 각하·계류 B	조정건수 (A-B)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취 하	소 계	
					동 의	이 의				
1981	44	3	41	9			12	20	41	39.0
1982	50	2	48	19			19	10	48	58.3
1983	71	2	69	21			22	26	69	52.2
1984	54	3	51	12			29	10	51	49.0
1985	59	4	55	12			28	15	55	43.6
1986	49	1	48	14			10	24	48	56.3
1987	47	1	46	10			9	27	46	34.8
1988	55	1	54	16			12	26	54	63.0
1989	121	6	115	29			35	51	115	52.2
1990	159	3	156	42			43	71	156	59.0
1991	220	4	216	52			48	116	216	48.1
1992	381	19	362	81			79	202	362	55.2
1993	423	10	413	132			96	185	413	56.2
1994	541	7	534	162			127	245	534	56.2
1995	528	29	499	111			150	238	499	52.1
1996	556	10	546	129	2	7	169	239	546	53.1
1997	490	12	478	161	10	5	79	223	478	61.3
1998	602	5	597	226	14	10	97	250	597	59.6
1999	641	29	612	244	11	18	102	237	612	59.6
2000	607	16	591	198	10	15	66	302	591	63.6
2001	659	20	639	229	6	23	132	249	639	62.3
2002	511	9	502	182	18	17	62	223	502	62.4
2003	724	30	694	287	15	15	101	276	694	68.3
2004	759	13	746	283	46	22	140	255	746	66.4
2005	883	34	849	334	31	20	181	283	849	62.4
계	9,234	273	8,961	2,995	163	152	1,848	3,803	8,961	59.6

증재부별 조정신청건수

( )안은 %

구분 연도	신청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2003	724	496	18	20	40	20	64	10	6	25	16	9
2004	759	558	27	17	32	15	41	13	4	27	20	5
2005	883	592	35	14	45	18	87	15	10	29	25	13
계	9,234 (100.0)	5,929 (64.2)	421 (4.6)	266 (2.9)	485 (5.3)	267 (2.9)	798 (8.6)	160 (1.7)	223 (2.4)	323 (3.5)	280 (3.0)	82 (0.9)

손해배상관련청구 사건 처리결과

※ ( )안은 %

구 분 청구유형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 권 조정결정	조 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청구 유형	정정 손배	정 정	76	29	4	27	2	1	13
		손 배	76	1	4	29	3	1	38
	소 계		152	30(19.7)	8(5.3)	56(36.8)	5(3.3)	2(1.3)	51(33.6)
	반론 손배	반 론	19	14	1	1			3
		손 배	19		1	2			16
	소 계		38	14(36.8)	2(5.3)	3(7.9)			19(50.0)
	추후 손배	추 후	8	3					5
		손 배	8						8
	소 계		16	3(18.8)					13(81.2)
	정정 반론 손배	정 정	4	1		2			1
		반 론	4	2		2			
		손 배	4			2			2
	소 계		12	3(25.0)		6(50.0)			3(25.0)
	손배 단독청구		34	15(44.1)	2(5.9)	8(23.5)		6(17.6)	3(8.8)
	계		252	65(25.7)	12(4.8)	73(29.0)	5(2.0)	8(3.2)	89(35.3)

II.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2005. 12. 31.

연 도	구 분  시 정 권 고 건 수	침 해 유 형									간 별							
		개인적 법익침해					사회적 법익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 간 신 문	주 간 신 문	월 간 지	뉴 스 통 신	인 터 넷 신 문	방 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등 공개	자살 및 타살 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 신문								주간 신문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1	8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6	1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계	4,796 (100.0)	708 (14.8)	129 (2.9)	1,629 (34.0)	982 (20.5)	242 (5.0)	937 (19.5)	118 (2.5)	51 (1.1)		4,535 (94.6)	58 (1.2)	14 (0.3)	185 (3.9)	3 (0.1)		1 (0.0)	

##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성 경쟁과 연예인의 인격권

신 순 철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글에서 논의할 주제인 언론의 속보경쟁과 인격권 침해에 에들러 감을 무릅쓰고 극작가 코르네이유<sup>1)</sup>의 <르 시드>라는 작품을 글머리에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 서구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더럽혀진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면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해야 했다. 그리고 결투결과에 따라 승자의 인격은 보호되고, 패자의 인격은 무참히 내동댕이쳐졌다. 사건의 진상이나 전후팩타야 어찌되었든 결투에서 이긴 자가 모든 권리와 정당성을 독점하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형국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만일 갈등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도저히 무력으로 결투를 벌이기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주체가 노약자이고, 훼손을 가한 자가 우락부락한 투사라면 어떻게 하겠

느냐는 말이다. 그런 경우라면 애초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있었으니 바로 대리 결투이다. 즉,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에 임하고 싶지만 그것이 힘든 노인이나 여성은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줄 다른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대리로 싸워줄 사람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연줄을 동원해야 하니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란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업 삼아 대리결투에 나서는 자들이 생기고 했는데 그들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르 시드>의 상황은 이렇다. 출중한 전투영웅 로드리고는 자신의 연로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어느 백작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결투를 신청한다. 그런데 그 백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약혼녀의 아버지이다. 사랑이나, 명예나

를 두고 다소 신파적인 고뇌와 갈등이 빚어진다. 비록 <르 시드> 극중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항상 만사가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나도 무기를 들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챔피언을 물색해야 하는가?

다행히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근대국가는 이러한 문제발생과 갈등폭발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예견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 중재장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르 시드>의 경우처럼 강자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한 약자가 반드시 자신을 위해 대리전에 나서줄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 Pierre Corneille, (1606~1684), 프랑스의 작가

라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닌건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위법이며 (형법 제307조 1항), 산 자와 죽은 자의 명예를 모두 존중하며 (형법 제308조), 대중매체를 통한 비방은 금지됨은 물론, 그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건 허위이건 모두 위법이며 (형법 제309조), 과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고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함 (민법 제750조, 제764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제4부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이 종종 범하는 인격권 침해의 양상이 최근 들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왜 언론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

첫 번째는 명예와 인격의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

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관적 감정으로 명예감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예의 정확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는 상당성의 원리와 위법성조각사유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언론계의 뿌리 깊은 취재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세 번째 문제점인 취재편의주의와 결탁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어찌면 이미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언론계에 만연한 취재편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이  
종종 범하는 인격권 침해 양상이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 취재편의주의와 속보성 경쟁

어느 언론인을 막론하고 선망하는 것이 바로 특종을 낚는 것이다. 동시에 어느 언론인을 막론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낙종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언론계에서는 위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 풀(pool)제도<sup>3)</sup>를 운영한다든지, 경쟁 신문사의 가판을 보고 서둘러 기사를 채워 낙종을 피한다든지 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다. 이것은 과거 언론매체의 종류와 접근이 제한적이던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매체환경이 급격히 변한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할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오로지 공공의 목적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형법 309조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제한하여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이른바 상당성의 원리이다.<sup>2)</sup> 따라서 결과

2) 헌재 1999, 6. 24.선고, 97헌마265.

3) 과거에는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기자 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간섭이 사라진 이후에도 언론계는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기자 풀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날에는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다. 하지만 작금 우리의 언론이 뉴스 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TV 뉴스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을 퍼 나르기에 바쁘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지하철 결혼식”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몇몇 연극전공 대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마치 실재인 것처럼 결혼식을 연출했고, 그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중과 방송의 저녁종합뉴스에는 이 장면이 방송되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내용과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동영상에 취재내용의 전부였을 뿐 충분한 사실 확인은 생략되었다. 다음날 어느 방송사에서 후속 취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언급임이 밝혀졌지만 그 방송사도 전날 저녁종합뉴스에서는 결혼식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속보를 중요시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취재편의주의가 부른 오보였던 것이다.

근래에는 공중파의 낮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중파 방송사들은 부족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시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낮에도 종합뉴스 포맷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인터넷의 화제나 이미 보도된 사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하는 꼭지를 순서로 마련하고 있다

는 것이다. 방송은 속보성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아울러 방송은 그 매체의 성격상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매체이다. 반면 인터넷은 속보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방송보다 유리하다. 방송은 속보성의 한계와 표현의 제약을 인터넷에 의지하여 그 내용을 퍼 날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문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번 발행된다. 그리고 취재, 편집, 제작, 배포과정에서 수많은 인력과 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 생득적으로 불리한 속보성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다른 매체에 비해 신문만이 지닌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심층취재나 탐사보도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신문사에서 특종보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층건물 위를 점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뉴스전광판과 어느 신문사나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판(版)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들이 습관적으로 기사표절, 오보, 혹은 인격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속보성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모두 속보성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심층취재나 탐사보도는 찾기 어렵고, 취재 과정을 단축시키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취재편의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명예나 인격권에 대한 배려는 점차 입지를 잃고 있다.

## 뉴스가치와 이슈가치의 혼동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 혹은 제4부로 불리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여론의 형성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우선 그 사회에서 논의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이슈들을 발굴해야 하고,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고, 때로는 스스로 그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때 마땅히 공론되어야 할 의제의 중요도를 이슈 가치(issue value)라 한다. 문제는 이슈 가치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가치 있는 이슈는 늘 숨겨져 있고, 부각되지 못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온당 그러려니 하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누적적이고, 간접적인 요인들까지 면밀히 파고들어야 이슈 발굴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슈 가치가 있는 의제는 단순히 뉴스 가치만이 있는 의제에 비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도 떨어질 뿐 아니라 시의성면에 있어서도 대중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언론은 가치 있는 이슈를 발굴하기 보다는 가치 있는 뉴스를 발굴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슈 가치를 뉴스

가치(news value)와 맞바꾸는 것이다. 뉴스 가치는 그것이 이슈로서 가치가 있건 없건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설사 보도 내용과 사실과 어긋난다 해도 “아니면 그만”으로 넘어갈만한 뉴스거리로 의미한다. 시의성이 중요한 뉴스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속보성 경쟁은 필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보성 경쟁은 당연히 취재편의주의와 면밀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 오보, 명예훼손, 사실 왜곡으로 연결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낳게 된다. 설사 추후에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낸다 하더라도 애초 성급하게 보도된 내용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늘 부족하다. 이슈 가치가 뉴스 가치와 전복되는 중심에 연예인들이 있다.

### 연예인 공인(公人)만들기

이슈 가치를 뉴스 가치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예인을 공인의 반열에 놓고, 연예인에 대한 보도를 공인에 대한 보도로 위장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맥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당사자와 대중에게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통념을 자연스럽게 심어

야 한다. 연예인에 대한 보도, 특히 속보성 경쟁을 발판으로 전달되는 보도는 이슈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공인으로 격상시켜 상당성의 원리를 내세우기에 용이하다. 시민에게도 마치 연예인을 공인처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 강박증을 갖게 한다. 연예인의 추문을 다룬 기사가 공인의 추문을 다룬 기사의 뉴스가치가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유명인과 공인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자신들의 취재에 용이하게 이용해

이슈가치를 지닌 것으로 위장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공인인가? 그렇지 않다.

연예인이 공인이 아닌 이유를 들어보자.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①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②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sup>4)</sup> 이러한 공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

련하여 이러한 도덕심이 그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언론에서 종종 공인이라 부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유명인이라 칭함이 옳다. 언론은 취재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유명인(celebrity)과 공인(public figure)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취재에 용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취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법원은 명예소송에 있어 비록 공인에 대한 고려는 있지만 한국 법원은 아직 공인에 대하여 기능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인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적 연사가 진실인지 아닌지의 진실성 여부와 공익과 관련되었는지 아닌지의 공익성 여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대법원판례를 보자면, 사건에서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하고 있다.<sup>6)</sup> 결론적으로 공인의 기준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의 기준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의 언론은 연예

4) 이희승 감수, 민중서림 엡센스 국어사전

5) 이재진(1999, 여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 pp.161-162.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인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것이 공공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갖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진실성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면 책임을 피하기도 한다.

공인은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므로 공인 아닌 사람을 취재했을 때 보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 가수나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공인의 경우는 그러한 추문은 즉각 도덕적 평가로 연결되며 법 이외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도에 비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논란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상당성의 원리에 해당될 공산이 크다.

언론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연예인들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거의 강제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한다. 사생활 공개로 뉴스 가치를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들의 사생활을 조작하기도 한다. 연예인과 그들을 관리하는 기획사도 이 점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물론 언론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까닭도 있지만, 그들도 소위 스타 시스템을 통해 유명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언론과 일정부분 공조한 까닭도 있다. 즉,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소위 “떠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조작한다. 나아가 성형수술은 기본이고, 온갖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업적으로 신비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일정부분 상호협조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필요에 따라 연예인을 공인으로 칭하면서 온갖 인격침해를 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취재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공

인이 아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 〈사례〉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살보도를 통해본 언론의 인격침해

얼마 전 사망 1주기를 맞은 영화배우 이은주 씨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먼저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서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자살로 추정되는 정황이 많았을 뿐 분명히 자살로 단정할만한 시점이 아니었다. “유서를 남기고 사체로 발견”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이은주 씨의 사인은 수사결과 자살로 판명이 되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국 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자살관련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sup>7)</sup>을 제정하였

7)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mohw.go.kr/suicide/suicide.htm>)

다. 이 권고에서는 흥미를 유발하려는 접근이나 속보나 특종 경쟁의 수단 배제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편의에 따라 속보경쟁에 집중했다. 온갖 추측성 기사와 오보를 양산하기도 했으며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사들을 남발하기도 했다. 출처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지인”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오르내렸고, 신문과 방송은 열심히 그 내용을 퍼나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공중과 3사가 모두 편성하고 있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이러한 퍼나르기의 대표적 창구가 되었다.

자살동기를 두고 모 가수와의 염문설, 영화홍행의 참패에 따른 좌절, 심지어는 동성애로 인한 고민을 암시하는 내용이 제기되었고,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죽은 자의 명복과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출연한 영화 속의 특정 장면과 결부하여 사진에 자살이 예견되었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어느 한 언론사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 사실 확인 없이 줄줄이 보도가 나갔고,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떴다

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거기에 일부 네티즌의 악성 댓글과 추측이 가미되면서 망자(亡者)의 인격은 무참히 유린되고 유가족이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맺음말: 언론은 스스로  
공기(公器)임을 잊지 말아야**

많은 사람이 잘 아는 인물이 언

**언론의 자유가 신장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 ‘공기(空氣)’  
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해야**

제나 공인은 아니다. 따라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공인 수준으로 개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명예라고 해서 산 자의 명예보다 경솔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법에 나타나있다. 죽은 연예인인 이은주 씨의 보도에서는 뉴스 가치와 속보성 경쟁과 근거 없는 내용을 퍼나르기가 횡행했고 그 점에서 <르 시

드>에서처럼 약자와 소수자는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신문사는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점이다. 연예인들에게 “공인”다운 도덕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신문사에 “공기”다운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신문윤리”라고 부르고, 각 신문사들의 연합체인 신문협회에서 “윤리강령”이란 걸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만을 의미한다”라는 어느 외국 비평가의 촌철살인은 오늘날 우리 언론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언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대통령을 빨갱이라 해도 그 다음날 남산 지하실에서 치도곤을 당하는 일이 없을 만큼 우리의 언론은 자유롭다. 얼마 전 <국경없는 기자회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는 미국보다도 높다.<sup>8)</sup>

이제 그만한 자유에 걸 맞는 책임이 있는가? 언론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혹시 언론사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

8)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87979](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87979)

## 중재부장 1년간의 단상

성 기 문

서울제3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늘도 어김없이 9시 20분경 전화벨이 울리고, 곧 이어 여직원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중재 위원회에서 차가 왔습니다”. 대충 책상을 정리하고 청사 현관을 나서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의 시작이다. 차안에서 오늘 심리할 사건들을 대략 훑어보면서 심리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의 직책을 맡은 지 어언 1년. 매주 화요일이면 반복되는 일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임지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법관으로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업무는 다소 생소한 분야다. 법관들이 외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은 단연 인기다.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교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중재부장 업무를 시작해보니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매주 2~3건씩의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프레스센터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복잡한 사안의 경우 미리 기록을 검토하고 중재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거의 하루의 일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가 과중하여 이러한 겸직 업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겸직 업무를 이유로 법원에서 사건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나 고려해 주지도 않는다.

언론의 영향력에 관하여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하나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총칼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펜은 칼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고 숭고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구제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당사자들과 사건을 만나게 된다.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사건도 많다. 뭘 이런 걸 다 중재신청까지 할까 생각하면서도 정부기관 사건은 비교적 심리가 편하기 때문에 반갑다. 신청인이 주장을 잘 정리하고 자료도 비교적 잘 첨부하여 내기 때문이다. 가장 심리가 어려운 사

건은 사이버 종교관련 사건으로서, 쌍방을 잘 설득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건은 신청인이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해대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감정적으로 심히 상처를 입었는지 위원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경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각 언론사에 따라 또 출석하는 언론사측 대리인의 성향에 따라 중재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다나 반론을 수용하고자 하는 언론사도 있으나, 권고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인색한 언론사도 있다. 뉴스의 속보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도 있으므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도에 인색하지 않은 언론사가 사실은 더 신뢰가 간다. 그러나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허용하는 것을 언론사들이 크게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

한편 요즈음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공적인 언론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포털사이트, 개인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그리고 댓글을 통해 유포되는 언론은 그 익명성과 빠른 확산성, 무한복제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 등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됨으로 말미암아 널리 사회문제가 된 것은 모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의 규제의 범위 밖에 있어 중재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중재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제도가 단일법으로 체계화되었고, 언론중재의 대상이 인터넷 신문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중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확대된 점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좋았으나, 심리기간이 부족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하는 등 신청남용의 문제점도 있다.

한편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도 정비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람이 느껴진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들 모두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2006년을 맞이하여 곧 임기 2년째로 접어든다. 중재부장으로서의 직책의 중요성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재판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전심전력을 하지 못함에 대하여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새해에는 보다 열심히 심리에 임하여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하여 본다. □

**법정 내 피고인의 사진·일러스트 게재 시  
수인한도(受忍限度) 넘으면 초상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의 독물카레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중인 林眞須美 피고가 법정 내에서의 사진과 일러스트가 사진주간지 「포커스」(휴간)에 게재되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출판원인 新潮社를 상대로 2,2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공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5년 11월 10일 문제가 된 사진 1점과 일러스트 3점 중 사진·일러스트 각각 1점에 대해 “피촬영자의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위법으로 판결, 법정 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한편 2심 판결 중 일러스트 3점 모두를 위법으로 판시, 220만 엔의 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여 오사카 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침해에 대해 “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내용, 촬영장소나 목적, 양태(樣態),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갑이나 포승을 한 모습에 대해서는 “몰래 촬영하는 양태는 온당하지 않으며, 촬영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에 대해서도 “피고를 모욕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林 피고가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있는 일러스트와 손짓을 하면서 대화하는 일

러스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내의 피고인의 동정을 보도하기 위해 용모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커스」는 1999년 5월 26일호에 법원의 허락없이 촬영한 林 피고의 사진을, 8월 25일호에는 법정 내에서의 용모 등을 그린 3점의 일러스트를 각각 게재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11월 15일자] □

**미국 AP통신사, 기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뉴스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성명」 발표**

AP 통신사는 2005년 11월 30일, 기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Statement of News Value and Principles (뉴스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익명정보원의 취급방법을 위시하여 기자의 행동에 관한 매뉴얼 류의 정보를 모아 동사의 윤리기준을 전달하는 새로운 서문과 함께, 멀티미디어용 전송사업의 전개를 반영하여 기사, 사진, 영상, 음성, 그래픽스 등에 관해 편집·가공의 기준, 크레딧의 인용방법, 프라이버시의 배려 등 주의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성명 중 「기사」의 취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명정보원에 관한 기준 및 관행

○ 가능한 한 정보는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로 한다. 만일 정보원이 백 그라운드(back ground) 또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취급

을 주장하면, AP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원칙은

① on the record = 정보는 특별한 양해없이 이용하여 정보원의 이름을 인용한다.

② off the record = 정보는 공표할 수 없다.

③ back ground = 정보는 공표할 수 있으나 정보원과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이름은 숨기되 그 입장은 묘사 가능 등. 정보원이 복수의 기자에게 백 그라운드 브리핑(back ground briefing)을 할 경우 AP의 기자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로 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deep back ground = 정보는 공표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밝히지 못한다.

○ 또한 익명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한다.

① 그 정보가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고, 기사에 불가결할 경우

② 익명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

○ 익명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재를 사용하려는 기자는, 기사를 데스크에 보내기 전에 보도부장(News Manager)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보도부장은 소재를 자세히 조사하여 AP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과 함께 기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원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재가 정밀히 조사되고 확인되어야만 보도부장은 그 소재를 전송할 수가 있다.

○ 기자는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의 전체

아래 인터뷰를 하도록 한다. 정보원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뷰를 끝낸 후 기자는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 되도록 시도한다.

○ 기자는 익명 사용에 동의하기 전에, 정보원에게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 정보원이 직접 정보를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 정보원이 추가적인 코멘트나 정보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제의하더라도 이를 동의해서는 안 된다.

○ 복수의 정보원을 갖도록 항상 노력한다. 다른 정보원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사는 보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정보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재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 기사에서는 정보원이 익명을 희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가 문서에 의존하는 경우, 기자는 그것을 입수한 경위를 가능한 한 기술한다.

○ 기사에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뒷받침 할 정보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소식통」으로는 불충분하며 「백악관 보좌관 소식통」, 「영국 외무부 고위 관리」 등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한다. 기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원의 묘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 명백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보를,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보는 「사실」로 명기해야 한다.

○ 익명정보원을 사용한 기사에는, 기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한 기자 이외의 기자가 그 기사에 익명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

자의 이름도 협력자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익명정보원을 사용한 기사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관해 회사 내외로부터 들어온 의견은 즉각 보도부장에게 전달한다. 익명정보원에 근거한 타사 기사나 뉴스릴리스를 보도할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은 적용된다.

### ▲ 서명(署名)

○ 기사의 서명은 집필자가 정보내용을 취재한 장소에 체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기자가 기사를 집필한 경우는 편집자가 집필자의 서명으로 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서명으로 한다.

○ 복수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경우 서명은 편집자가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심적인 사실을 보도한 기자의 서명으로 하며, 연재의 경우 회수마다 서명을 바꾼다.

○ 정보수집이나 기사 집필에 복수의 기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서명 혹은 '편집자주'를 사용한다. 서명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공헌을 한 기자의 이름을 명기할 수도 있다. 2명의 서명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의 한 기자가 취재장소에 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다.

### ▲ 발신지(datelines)

○ 발신지는, 기사와 관련한 기본적 정보를 입수한 장소를 독자에게 전한다. 서명이 있는 기사는 발신지에 있었음을 뜻한다. 발신지가 붙은 기사에 다른 장소에서 입수한 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다.

### ▲ 프라이버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폭행의 피해자

와 범죄로 고소되었거나 범죄를 목격하거나 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신원은 통상 밝히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전송하지 않는다.

### ▲ 인용(引用)

○ 정확하게 인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듯, 인용이 문맥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법이나 언어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을 개변(改變)하지 않는다.

(『신문협회보』 2006년 1월 24일자) □

## 수혈 실수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보도는 불법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

수혈실수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의료법인 「기상회(氣象會)」(오사카시)가 마이니찌 신문사를 상대로 2,0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2005년 12월 16일 “수혈실수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기사를 집필·게재한 점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언론사 측에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0년 4월 24일자 석간에 『점적(点滴)·수혈, 연속실수』, 『나라(奈良)의 병원 1년 후에 환자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로, 기상회가 경영하는 나라 현(縣)내의 병원에서 1998년 12월 여성이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

받아 혈뇨(血尿)가 나왔고, 1년 후에 사망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지적한 수혈실수와 여성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인정하고, 수혈양이나 혈뇨의 유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기사는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수혈실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구성이 수혈실수와 본래 관계가 없는 사망 사실과를 명확하게 구별함이 없이 막연하게 사실 경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나, 제목의 내용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수혈실수에 의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월 24일자) □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반영한 보도이므로  
윤리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영국 PCC -

PCC는 블레어 영국 총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조언자인 캐롤 채플린 씨가 the News of the World지(이하 NoW)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채플린 씨는 NoW가 지난 2005년 6월 26일자 1면과 2면에 『채플린, 제정신이 아니다』, 『쉐리, 이제는 채플린을 떠나야 할 때』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PCC에 불만신청을 냈다.

채플린 씨는 NoW의 기자들이 몰래카메라와 녹

음장치를 사용하는 등 PCC 윤리강령 제10조를 위반했으며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PCC 윤리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플린 씨는 NoW가 런던호텔과 체육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포함해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PCC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은 NoW의 조사 편집장인 매절 마무드 씨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는데, 기자들은 가명을 사용해 채플린 씨의 헬스 피트니스 회사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했다. 기사 안에는 채플린 씨와의 개인적인 대화내용도 포함됐는데 그 중에는 블레어 총리가 운동이 더 필요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내용도 있었다.

채플린 씨의 주장에 대해 NoW 측은 채플린 씨와 블레어 총리 가족 간의 ‘대단한 관계’가 대중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NoW 측은 채플린 씨가 오히려 블레어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선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CC는 NoW가 블레어 총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의 라이프스타일 조언자를 취재한 것은 대중의 관심사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PCC는 NoW가 채플린 씨의 사적인 집안일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사진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에서 찍힌 것은 맞으나 채플린 씨의 직업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채플린 씨가 주장한 기자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NoW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2월 16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인 감봉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투어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여행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11. 30.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여행미디어 :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 제하의 기사 (2005년 11월 22일자 1면)

내 용 : 조류독감과 경기침체 등 잇단 악재로 여행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F여행사가 일방적인 감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F여행사가 ‘대고객 서비스’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는 12월부터 월급의 20%는 ‘대고객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과한 직원에게만 돌려준다고 통보하자 직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감봉 통보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여행미디어는 지난 2005년 11월 21일 타블로이드 1면과 2005년 11월 22일 신문 1면에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F여행사가 일방적으로 20% 감봉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 감봉에 대한 내용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지급을 전제로 한 기본급 20% 지급 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 교육이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22일자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F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20%의 감봉조치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F 여행사는 사전에 직원들과 감봉분에 대해 협의하여 기본급 20%의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합의일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여행미디어 타블로이드 판(12일자) 2면과 대판 2면(13일자)에 상자기사로 각각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타블로이드 판)의 소제목(F여행사 일방적인 '20% 감봉')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여행미디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들이 제조·납품하는 소방용 발광선이 인테리어용품과 다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 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228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박○○ 외 2인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5년 11월 15일 20:00)

내 용 : ▷ 앵커 : 집안을 꾸미는 장식용품이 소방구조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2월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이 참사를 계기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서와 지하철 역사에 '라이트 라인' 이란 장비가 보급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 장비를 이렇게 허리춤에 묶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피할 방향을 알려주거나,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이 붙잡고 빠져 나올 수 있는 밧줄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인테리어용. 이스라엘과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나 자동차 뒷유리 장식용으로 쓰인다고 돼 있습니다. 제품의 인장 강도를 실험해 봤습니다. 중국과 이스라엘산 인테리어 제품은 30kg 내외의 힘을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소방용 라이트 라인은 100kg이 넘는 힘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용은 성인 남자가 힘껏 잡아당기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라이트 라인이 끊어지면 줄을 잡고 빠져 나오던 사람들이 엉켜 넘어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5일자 「SBS8뉴스」에서 '장식용 끈으로 인명구조?' 의 제목으로, 소방서 및 지하철 역사의 소방 구조 장비인 라이트 라인 관련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자동차 뒷유리 장식용 인테리어용으로 쓰이며, 이스라엘산 인테리어 제품은 30kg 내외의 힘을 받으면 끊어지고, 소방용 라이트 라인은 100kg이 넘는 힘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테리어용"과 "소방용"이라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이스라엘 제조사에서는 제품을 인테리어용이나 소방용 등으로 용도

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산 인테리어용이라 했던 제품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한국의 소방 구조대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철과 같이 지상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화재시 농염으로 가득찬 밀폐된 공간에 적합한 라이트 라인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고회도 발광선이며, 소방용 라이트 라인이라 했던 제품은, 고회도가 아닌 일반 제품에 제3의 업체가 피복만 굵게 입혀 인장력만 조금 높인 후 소방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써 한국의 라이트 라인 장비로서는 부적합한 제품이며 오히려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 피복을 필요이상으로 굵게 만들면 핵심기능인 밝기가 급감하여, 화재시 피난을 유도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 중 박○○에게 100,000,000원, 그 외 2인에게 각각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

###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도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8뉴스' 프로그램에 합의일로부터 2주 이내(1월 16일까지)에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시간 동안 방송하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아 래

가. 이스라엘제 이엘와이어는 인테리어 제품과 소방용 제품의 구별이 없다.

나. 라이트 라인의 기본 용도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다. 신청인 제품의 장점과 신청인 제품에 대한 신청인 측의 평가를 충분히 설명한다.

라. 신청인 제품은 화재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 신청인 측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특허출원 중인 사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월 7일 20:00)

내 용 : ▷ 앵커 : 올 겨울 특히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불이 꺼진 지하철 역사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350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가 가득찬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둠과 연기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빛을 내는 유도선이 바닥에 깔립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춰야 하며, 피난 유도선을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발광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으로 쉽게 휘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정○○(동대문소방서 구조대원) : 정전이 되고 연기가 가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이 라이트 라인을 이용해 출입구로 대피하도록 준비한다. 시민들은 비상상황에서 이 줄을 따라 대피해야.

▷ 기자 : 짙은 연기에도 길 안내가 가능할 만큼 밝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전국 소방서에 보급됐습니다. 일본의 교토소방청에도 11대가 수출돼 시험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우○○(개발업체 관계자) :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잘 휘면서 더 밝은 제품에 대한 요구 때문에 공급, 내구성, 내연성 강화된 제품 특허 출원중이다.

▷ 기자 :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춰야하며, 피난 유도선을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 신청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종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2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7면)

내 용 :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중략)

이곳은 건물소유주가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김모 씨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토지사용료와 주변정비를 하고 승낙서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 김모 씨가 돌연 주차장으로 사용을 승낙한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 봉쇄했다.

이로 인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의료보험공단 출입구마저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략)

그러나, 김모 씨가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건물신축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김모 씨의 일련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다수의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12월 20일자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 봉쇄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토지소유주 김모 씨의 행동은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모 씨의 주차장 폐쇄조치는 건물 소유주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즐기치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해진 조치로서 사건의 발단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폐쇄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음을 밝혀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주투데이 2006년 2월 6일자 7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김OO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5. 12. 21.자 고소건은 이를 취소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주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  
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본지는 지난 1월 2일자 『“잘 옳겼다” 소문나려면  
현 직장서 더 잘하세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 사진을 참고자료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서점에서 책을 고르  
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성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  
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 원

###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AM7은 2006년 1월 2일자 ‘이직의 성공  
조건’의 기사에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무  
관함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AM7 30면 매주 월요일  
일터란의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2월 20  
일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오십만 원을 2006년 2월 28  
일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 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O O  
피신청인 : AM7  
중 재 부 : 서울제1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AM 7 : 『“잘 옳겼다” 소문나려면 현 직장서 더 잘하  
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일자 30면)  
내 용 : 새해를 맞아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자기계발  
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 이들 직  
장인들에게 ‘이직’은 매우 현실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합의사항 이행결과

A M 7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송 재 성)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혼혈인은 몇 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A3면)

내 용 : 한국에는 혼혈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혼혈인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통계를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 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3일자 3면 『혼혈인은 몇 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혼혈인에 대해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 중·고등학생 학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다가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 지난 1월 13일자 기사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혼혈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정책은 없으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혼혈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2006년 2월 17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크기와 활자는 사진식자 12.5포인트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자 판결(2004나84063)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 7. 28. 자 A27면 『현대차 노조의 ‘자해 행위’』 제하의 사실(이하 제1기사)과 2003. 8. 1. 자 A27면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사실(이하 제2기사)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2003. 8. 7. 자 A1면 하단 『현대차 새 휴일 수, 미·일 추월』 제하의 기사(이하 제3기사)와 2003. 8. 7. 자 A4면 하단 『현대차 1인 연1,000만 원 올라 평균연

봉 5,000만 원 넘어서』 제하의 기사(이하 제4기사)에서 피고는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2003. 8. 8. 자 A26면 하단 『만물상』(이하 제5기사)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2003. 8. 8. 자 A27면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 제하의 사실(이하 제6기사)과 2003. 8. 9. 자 A27면 상단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제하의 기사(이하 제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의 각 기사의 위법성 존재 여부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한 제1, 2기사와 제6, 7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

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제6, 7기사의 경우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 제하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가·휴일일수가 165~177일이며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언론중재』 2005년 봄호, 136 ~ 145면 참조).

## 판 결 문

사 건 : 2004나8406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명칭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울산 북구 양정동 700

대표자 위원장 이 현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동 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 선고

2003가합66450 판결

변 론 종 결 : 2005. 9. 20.

판 결 선 고 : 2005. 10. 18.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5.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2003년 7월경에는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5만여 명을 거느리고 승용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수출액 등에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1위 기업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 말경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에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이다)는 2003. 9. 1. 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현대자동차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의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다시 2003. 8. 1. 조선

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 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4-1 기재와 같은 기사(위 기사에는 구체적인 상승 내역을 나타낸 별지 4-2 표가 그려져 있다, 이하 위 표를 합하여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준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재와 같은 의견 기사(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

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2)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

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4)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 (1) 제1, 2기사

제1, 2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피고는 제1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 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원고가 임금협상보다도 주 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나)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피고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1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연 5,400만 원(제2기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였다)」이라고 하고, 제2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고 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 (2) 제3, 4기사

제3, 4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직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에 관하여,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휴일의 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들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 피고는 위 설명에서도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나)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4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 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 원(98,000원×12개월), 성과급 4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200%),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3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100%와 현금 100만 원),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휴일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다(한편 피고는 위 기사 말미에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하여 두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제1, 2기사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위 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 (3) 제5기사

피고는 제5기사에서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주 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 근로자는 165일, 여자 근로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충분히 늘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현대자동차 노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거나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근로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4) 제6, 7기사

피고는 제6기사에서,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상 결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 원을 넘어서다」라고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편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제7기사에서는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 아래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라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지위를 ‘공무원을 능가하는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까지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울

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게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제7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기사에서 사실로 적시된 휴일의 수와 임금수준에 관하여 보면, ① 휴일의 수와 연봉액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에 관하여 ‘질편한 잔칫상’ 또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적시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 (5)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가) 제1, 2기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3, 4기사는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 2003년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5기사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

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의 존재 여부

앞서 2의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익성

위 각 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원고의 부분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는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제1, 2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한다는 사실, ②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 ③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또는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연 5,400만 원이라는 사실, ④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원고의 전임자 수에 비추어 위 ①, ②의 각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이 2003년 8월 초경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0. 20.경 위 각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반론보도를 합의함에 있어 “현대자동차의 14년(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이다) 근속 생산직의 평균적인 연봉은 4,288만 원이

고, 위와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10시간 근무 외에 휴일 근무까지 하여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며, 연 5,400만 원은 위 연봉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고 연 5,400만 원은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위 ③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위 ④의 사실도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제6, 7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되기 전인 2003년 2월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부장 이하)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224,394원이고, 생산직 근로자(25,338명으로, 그 중 95% 정도가 시급제이다)의 평균 근속연수인 14.1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346,628원(하루 10시간씩 1년 중 약 300일 동안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①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월 2,250,786원에다가 ②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이다)인 사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된 후 평균 근속연수인 14.4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기본급에 평일 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하면 연 4,288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과금과 격려금을 더하면 연 4,827만 원 정도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근무시간은 평일 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 4회(각 10시간 근무)에 의하여 '1년 중 30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으로 연간 휴일 수는 63일(= 365일-302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3) 소결론

그렇다면 제6, 7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제1, 2기사는 그 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는 제6, 7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보도 경위, 그 적시 내용과 표현방법, 조선일보의 영향력,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가 그 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담십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판결 2

보도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자 판결(2004가단25680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3단독 재판부(판사 염원섭)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출신 김○○

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조선일보사,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피고 신문

사의 2004. 7. 16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 제하의 기사, 2004. 7. 17자 ‘김대중 칼럼’의 큰 제목 『국가의 틀을 바꾼다?』와 소제목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등과 피고 박근혜의 2004. 7. 19 전당대회 발언, 2004. 8. 3 기자간담회 발언 등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에 의해 원고의 반국가단체 활동이 조작됐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고 또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원고를 간첩이라 표현하고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지칭했으며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임에도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간첩이라 칭하는 대상이 원고를 특정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

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가단256802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 승 교

Ⅲ 고 : 1. 박 근 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 (한나라당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 영 화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3. 김 대 중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5. 12. 21.

판 결 선 고 : 2006. 1. 1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박근혜는 5,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김대중은 각자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구성원 광〇〇 등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93고합2199호 국가보안법위반)되어 1994. 2. 28.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4노914)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형을 복역한 후인 1999. 2경 사면 복권되었으며, 2003. 7경 계약기간을 2003. 7. 23경부터 2004. 7. 31.까지로 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 조사관으로 채용되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4.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김대중은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마. 한나라당의 총재인 피고 박근혜는 2004. 7. 19.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을 하면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04. 7. 20. 기자회견을 하면서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2004. 7. 21. “간첩이 현역 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 장 다 본 나라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4. 8. 2.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군 장성을) 취조하는 게 미래로 가는 국가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3.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잘못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야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5.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박근혜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8. 11. 이 사건 소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야당 대표를 고발하고 그 다

음 순서가 뭐가 될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확정 후 안기부 프락치였던 백○○의 양심선언으로 위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과거의 전력일 뿐이므로 현재의 원고에 대하여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나, 원고가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인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피고 회사와 피고 김대중에 대해서는 각자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나. 원고의 특정 여부

위 각 발표를 전후 하여 중앙일보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간첩, 사노맹 출신’, ‘의문사위 조사관 K씨’ 등의 언급을 하는 발표를 한 점, 당시 원고가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에게 위 국가보안법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주위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과 위 기초사

실에 나타난 각 표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표현들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표현은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 다. 허위의 사실 적시 여부

어떠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도 적시된 내용 전체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간첩’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한 위 각 보도나 언급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으로 구속되어 형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앞서 본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고,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양심선언 등이 있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간첩’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예비역 군사령관이나 장성을 ‘군 사령관’이라고 표현하거나, 조사관인 원고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면서 의문사위 ‘위원’으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

과할 뿐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피고 회사, 김대중의 위법성 여부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한 경우 그 기사나 칼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나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나 칼럼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신문기사나 칼럼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나 칼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취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김대중이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기 전인 2004. 7. 15. 중앙일보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조사관 K씨는 1993년 일본에서 북한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검거됐다. 당시 안기부는 K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간첩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그 보도는 의문사위가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과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 후에 이어진 사실, 위 중앙일보 보도 다음날인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간하는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지만 그 제목 아래에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 ... 불응』, 『의문사위, 기무사서만 총 150명 조사』라는 소제목을 붙였고, 본문에서는 위 “지휘관출신 9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예비역)”임을 명시하였으며, “송영근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김대중이 발표한 위칼럼은 제목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이고 그 중간 제목이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보면, 우선 첫머리에서 제목에 나타난 국가의 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overlap)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나라 틀 바꾸기’가 아니라 아예 ‘나라 바꾸기’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후 “국력과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피고 박근혜의 위법성 여부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

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부의 표현만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박근혜가 위 기초사실에서 실시한 각 일자에 그와 같은 각 표현이 포함된 언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근혜가 위 각 언급을 하기 전인 2004. 7.경 의문사위가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앙일보에서 2004. 7. 15., 조선일보에서 2004. 7. 16. 각 앞서 본 바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박근혜가 전당대회, 기자회견, 상임운영위원회 등에서 기초사실 적시의 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의 경위를 보면,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현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외교, 사회질서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하였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던 중 ‘3기 의문사위 구성 및 권한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보니까 1기에서 결정한 내용을 2기에서 뒤집고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할 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참여하였던 간첩출신 조사관들의 사면경위와 임용배경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3기 의문사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3기 위원회 출범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



독일 판결 1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전후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조문 : 독일민법 제823조, 제1004조  
뒤셀도르프 주 법원,  
2005년 8월 17일자 판결 - 12 O 238/05

판결요지

1.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개토론장에서 특정 프로젝트에 그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로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표현도 의사표현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장인은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도시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설계회사의 대주주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뒤셀도르프의 시장이며 도시의 Bilk 구(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명 “Düsseldorfer Arcaden”를 열렬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명한 건축설계사이자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전시관 ‘Kö -Galerie’와 뮐하임(Mülheim)에 있는 Rhein-Ruhr-Zentrum의 공동소유자인 피청구인은 프로젝트의 맹렬한 반대자이다.

양 당사자는 프로젝트명 “Düsseldorfer Arcaden”에서 계획된 ‘Bilker Arvaden’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공개토론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2005년 3월 1일자 신문 “Express”에서 청구인은 “프로젝트 반대자의 논거에 대항하는 10가지 논거”를 주장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거 3에서 설명하고 있다.

“3. 비판자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억만장자 B는 뮐하임(Mülheim)에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고, 고객들이 뮐하임(Mülheim)이 아닌 Bilk에서 그들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5년 3월 11일자 “Express” 신문은 “Bilker Arcaden : 두 개의 상반된 견해”라는 제목으로 청구

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십자포화 속의 Arcaden. E 시장은 ‘그의’ Arcaden을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비판의 포화 한가운데 있는 장인을 변호했다. 그 때문에 누구도 프로젝트를 실패작이라고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명한 건축설계사이자 80세의 고령인 반대자는 지루한 연금생활자로서의 일상을 벗어나고자 행하는 훌륭한 프로젝트의 방해물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이 같은 신문기사에 대해 피청구인은 “10가지 논거 모두 엉터리”이고 논거 3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E 시장은 나를 억만장자(또는 채무자)라고 지칭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나는 아내를 위하여 35년 전에 뮐하임(Mülheim)에 백화점을 건설했다. 하지만 Arcaden과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05년 4월 12일자 판에서 “Express” 신문은 “10가지 반대 논거”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이 시의원들에게 보냈던 서류에 관하여 보도했다. 청구인이 가처분신청을 한 계기가 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2005년 3월 1일자 ‘Express’ 신문에 E 시장이 Bilk구의 Düsseldorf Arcaden과 관련한 본인의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비판을 겨냥하여 10가지 논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나는 10가지 반대 논거를 가지고 답변하고자 한다.

논거 3에 대한 반박 :

... 이제 인신공격대신에 솔직한 말로써!

시장의 장인이 대규모의 건축회사, 도로계획회사, 건축연합회사, 토목공학회사를 뒤셀도르프에 가지고 있고, 도시에 치명적인 Bilk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을 초기단계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CDU(기민당)가 다수당인 시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영향을 미친다. 시의회는 E 시장의 가족을 위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뒤셀도르프 시(市)중심지나 뒤셀도르프 시(市)전역의 미래에 프로젝트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도시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번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친분관계에 있는 시의회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에 걸쳐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표결해야 하는 의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장래를 위한 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뒤셀도르프의 유명하고 규모가 큰 또 하나의 토목공학회사가 Büro Sch.를 은근히 옹호하는 도시계획과의 압력으로 인해 Bilk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토목공학회사는 뮌헨(München)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똑같은 종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E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은 그 스스로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의 장인이며 Sch.-Plan Consul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Willi Sch.는 회사에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는 재차 건축과 교통로계획을 하는 유한회사인 Sch.-Plan Ingenieurgesellschaft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Düsseldorf Arcaden의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지지물을 제조하도록 되어있다. Sch. 그룹이 논란이 일고 있는 프로젝트의 토목공사 및 교통로 공사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0가지 반대논거를 주장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진실이 아닌 표현이므로 정당한 반론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반대논거에 의거하여 일반 독자들이 청구인의 장인이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을 위탁받았다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Willi Sch.는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하나 부차적인 공사를 건축과 교통계획을 하는 유한회사인 Sch.-Plan Ingenieurgesellschaft가 독자적으로 위탁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지지물 제조와 관련하여 90,000유로 정도의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의회 내에 알력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친분관계에 있는 시의원으로부터 수차례 전해 들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즉 여러 경로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툼에 대해 알린 시의원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뒤셀도르프의 이름 있는 대규모의 토목공학회사가 Büro Sch.를 옹호하는 도시계획과의 압력 때문에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피청구인이 독자들에게 알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뒤셀도르프 시가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는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자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기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은 투자회사인 mfi가 공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공공연히 표명함으로써 초래된 부정적 영향과 이른바 시장 가족이 경제적으로 연루되어 시의회의 독립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2005년 5월 3일

자 결정으로 피청구인에게 법적 규제수단을 들면서 가치분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Bilk 구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과 청구인을 관련시킨 다음의 주장들(a-c)을 하거나, 하계끔 하고 또는 전파하거나 전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였다.

a) 시장의 장인은 Bilk구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을 위탁받아 초기단계부터 수행하고 있다.

b) 시장의 가족을 위해 결정할 것인가 또는 시의 미래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시의회가 알력관계에 놓여 있다고 시의원이 피청구인에게 알렸다.

c) 뒤셀도르프의 저명한 대규모의 토목공학회사가 Büro Sch.를 옹호하는 도시계획과의 압력으로 Bilk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즉각 반박하였다. 그는 청구인의 무고에 대하여 기본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그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반응은 공개적으로 토론된 프로젝트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청구인이 Sch.-Konzern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보도된 바와 같이 시장의 특별한 가족관계라는 사실로부터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표현의 금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표현은 항상 전체적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 맥락 속에서 판단하면 본 사건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 내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 판결이유

가치분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두변론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사실이 아니므로 규정에 따라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지청구는 민법 제823조 제1항과 제1004조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는 피청구인의 반대논거에서 비판을 받는 표현이 행해진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전체 표현 자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라 모든 문제가 있는 표현은 전체적 관련성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주장보다 단계구분을 위해 정당성 심사의 판단이 논증 수단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주장과 의견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 표현의 개념은 실질적인 기본권보호라는 이익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이 입장표명(Stellungnahme), 견해(Dafürhalten) 또는 의견(Meinen)이라는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갖는 한 기본권 제5조 제1항의 표현으로써 보호된다(BVerfG, NJW 1993 S. 1845; BVerfG, AfP 1992 S. 53). 실질적 구성요소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의사표현이 거짓이거나 진실이 아닌 사실주장을 내포하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은 당사자의 인격권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법익 내에 있는 진실의무에 어떠한 다른 요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요구들은 기본권 적용을 과소평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소가 가치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주장이 정당하지 또는 터무니없이 주장되는지를 심사한다(BVerfG, AfP 1992 S. 53 [56]).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인격권과 피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형량해 볼 때, 피청구인의 표현의 자유가 우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양 당사자가 공중에게 표현한 논쟁, 즉 청구인의 논

거와 피청구인의 반대논거는 공중의 의사충돌을 불러 일으킨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신문에 표현된 양쪽의 논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예를 들면 2005년 3월 11일자 Express 신문 : "Bilker Arcaden : 두 개의 상반된 견해"라는 제목 참조). 이 논쟁에서 피청구인의 의도는 청구인의 논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었고, 시의회가 시장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있다. 피청구인은 시의원들이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면 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시장의 "가족"관계 때문에 CDU가 다수당인 시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는 청구인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행한 전체적 의사표현은 입장표명, 견해 또는 의견이라는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진 공중에 대한 표현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장인의 가족관계라는 상황 때문에 시의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Büro Sch.와의 인척관계라는 사실에서 발생한 모순, 문제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의 의사를 가치판단과 함께 표현한 내용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사표현에는 피청구인이 평가와 연관시키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금지청구를 한 피청구인의 의사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의사표현은 피청구인의 다른 진술들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실주장과 의사표현으로 묘사되는 형태로 연관되어져 있다. 피청구인은 그의 가치판단에 더 많은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실질적인 표현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구성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게 발표한 반대논거에서 청구인의 친척관계와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상황을 평가하는 노력에 의하여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총체적으로 실현된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 내에 해당하는 복잡한 표현에 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인의 침해된 명예 및 인격권과 피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지위에 대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이 거대한 건축회사, 도로계획회사, 건축연합회사, 토목공학회사를 뒤셀도르프에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을 초기단계부터 위탁받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독자들은 시장의 장인의 회사 외에는 어떤 다른 기업도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장인이 전체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이러한 포괄적인 위탁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하지는 않았다. 피청구인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시장가족관계의 “밀접성”과 CDU가 다수인 시의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로써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청구인의 장인은 Norbert Sch.의 대표이사이고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지지물 제조와 관련하여 90,000 유로에 상당한 수주를 받은 회사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이

다. 피청구인은 대규모의 공사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들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시의원들 간의 알력)를 피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시의회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전해온 바 있다고 주장할 때에도 그의 전체적 표현의 범위 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피청구인이 전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근거도 제시한 그러한 실질적인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에 의해 신문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결정에 알력을 빚고 있는 시의회가 있다. 이 때 피청구인은 시의회의 누가 이러한 문제를 전해 왔는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뒤셀도르프에 또 다른 토목공학회사가 Büro Sch.를 은근히 옹호하는 도시계획과의 압력 때문에 Bilik의 프로젝트 “Düsseldorf Arcaden”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 2005년 4월 15일자 일간지 “NRZ”에서 근거를 제시하였다.

“시장의 노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할 B는 좀 더 확고히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 Sch.의 경쟁자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결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볍게 하소연만을 할 뿐이다”.

실제로 피청구인이 표현한 내용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충돌하는 권리를 비교형량하면 결국 표현의 자유가 우위에 놓이게 된다. 비록 양 당사자들 사이에 논쟁이 거칠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표현은 청구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토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피청구인의 표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 보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쟁이 되는 법적 기본원리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표현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의미하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적 보호를 받는다.

출처 : AFP 36. Jahrgang Heft 6 - 2005 SS. 566-569

번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판결 2

##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적 모임에 모습을 드러낸 경우, 미디어는 그들의 출현에 대해 인격권 보호를 특별히 고려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도해야 한다

해당조문 :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2005년 2월 14일자 판결-1BvR 1783/02

### 판결요지

1. 자아발전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는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인격발현까지 포함하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디어가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일일이 보도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자신을 통제하며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언론에서 호의적으로 그들을 묘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적 모임에 참석하여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그들의 인격권 보호는 상대화되고, 미디어는 그들의 출현에 대해 인격권 보호를 특별히 고려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도해야 한다.

### 사실관계

헌법소원 청구인은 Monaco에서 개최된 발레 초연 공연에 관한 내용을 실은 “Auf einen Blick”이라는 잡지를 2001년도에 출판했다. 모나코의 발레 초연 공연에는 Caroline von Hanover 공주가 원심의 원고인 그녀의 딸 Charlotte Casiraghi와 함께 참석해 있었고,

잡지는 그녀의 어머니의 옆에 앉아 있는 딸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어머니와 똑같이 관능적인 입술, 똑같은 눈동자, 똑같이 오만한 듯한 표정: Caroline 공주의 딸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쏙 빼놓은 듯했다. 두 모녀는 모나코에서 개최된 ‘Oeil pour oeil’ 발레 초연 공연을 관람했으며 그날 밤 최고의 스타였다”.

14살의 어린 원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잡지가 간행될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것과 “똑같이 관능적인 입술”과 “똑같이 오만한 듯한 표정”이라는 표현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주법원은 그러한 내용의 청구와 관련한 소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보도의 내용이 독자들로 하여금 에로틱하고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딸의(원심의 원고) 성격묘사의 형성이나 발전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행동함으로써 그녀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주 상급법원도 원심과 같은 입장에 서서 양 당사자의 법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한 판결을 내렸다. 즉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공공이 관심을 갖는 사실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독자들이 가지는 오락적 요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만을 충족시켜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기본권(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

문과 제2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재판관의 범형성에 의해 의도를 가진 의사표현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내용을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억지로 양쪽의 기본권을 비교형량하면서 정당한 출판의 중요성을 오인했다고 보았다.

## 결정이유

… II.

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93a 제2조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용할 수 없다. 위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는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헌법소원의 성공가능성도 없다.

1. 일반적 법률(기본법 제5조 제2항), 즉 인격권보호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표현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중요시하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본 사건에서 출판의 자유의 내용 및 보호영역이 없다고 보았다.

a)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오인하였고, 보도의 내용과 어린이의 특별한 인격권의 내용을 이익형량하면서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침해했거나 일반적 법률에 대한 기본권의 방사전 효과를 오인했을 수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법원은 이익형량을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권 보호가 주제적 또는 공간적 차원에서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격체로 되어가는” 그러한 자아 발전에 대한 어

린리와 청소년의 권리는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인격발현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중의 앞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식도 인격의 발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부모를 가진 어린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미디어의 감시와 촌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자유영역도 그들에게는 인격의 지속적인 발전과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디어가 호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발전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일일이 보도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자신을 통제하며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적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그들의 인격권 보호가 상대화되고, 미디어는 그들의 특별한 인격권 보호를 고려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출현을 보도해야 한다(BVerfGE 101 S. 361 [385 f.] = AfP 2000 S. 76; .....; NJW 2003 S. 3262 [3263]). 특히 미디어는 그들의 특별한 인격권 보호를 고려하는 보도방식을 취해야 한다.

b) 사례에 대해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판사가 근간으로 하는 이익형량에서 표현의 의미와 인격의 일반법적 가치의 중요성은 전문 법원의 관할이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판결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법원이 어떠한 표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여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다(BVerfGE 82 S. 43 [50 ff.]; 93 S. 266 [295 f.]).

판결의 결정적인 사안은 표현의 내용이 뜻하는 의

미가 아니라, 인격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결과와 출판의 자유에 대한 금지청구의 결과와의 비교형량의 문제가 된다. 재판소가 이러한 권리를 비교형량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기본권의 보호내용을 오인했거나, 특히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학설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심사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BVerfGE 7 S. 198 [208] 참조). 구체적 경우에 복잡한 기본권 충돌이 있는 경우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형량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

문법원의 판결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 법원이 독일 출판법과 국제 사법상 법적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독일에 주거지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처 : AFP 36. Jahrgang Heft 5 - 2006 SS. 459-461.

번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프랑스 판결

## 청소년에게 위험한 출판물 : 금서로부터 해제 소설 판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중대사유가 없다면 해당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최고행정재판소 제9·제10 합동재판부

2005년 6월 27일

원고 : M. Genka

사건번호 267586

### 1. 사건개요

M. Nicolas Genka 가 최고행정재판소 송무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2004년 5월 14일 접수한 소장에 의하면, M. Genka는 최고행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2004년 1월 12일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에게 1962년 7월 6일의 처분행위에 대한 철회를 청구하였으나 담당 장관이 침묵함으로써 야기된 거부 결정은 월권행위에 속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962년 7월 6일의 처분행위 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내무부장관이 첫째, 원고가 저술한 소설 L'épi monstre<sup>1)</sup>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보여주거나 기증해 주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어떠한

1) 소설 L'épi monstre는 1961년 당시 24세의 Nicolas Genka가 낙오자 부르주아인 아버지와 그의 두 딸 특히 Marceline과의 근친 상간을 묘사한 소설로 장 꼭또-앙팡 테리블상을 수상하였다. 1962년 7월 6일 내무부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소설 L'épi monstre를 포함한 10권의 소설에 대하여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공개광고 및 전시금지를 명하였다. 1961년에는 출판사 Julliard에서 발행하였으나, 1999년에는 출판사 Exils에서 발행하였다.

장소에서라도 공개할 목적으로 이 소설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대한 우호적 광고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2) 최고행정재판소는 1962년 7월 6일 처분행위에 대한 철회를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에게 명할 것, 최고행정재판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부과할 것.

3) 국가는 행정소송법전 법률 761-1조에 의하여 3,000 유로를 지급할 것.

## II. 참조서류 및 규범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 :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출판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수정법률 ;

1958년 12월 23일 법률명령 제58-1298호와 1967년 1월 4일 법률 제67-17호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행정과 일반 국민간의 관계 개선과 행정행위의 이유에 관한 1979년 7월 11일 수정법률 제79-587호 ;  
행정소송법전.

## III. 주심법관과 정부 논고담당관

공개법정에서의 주심법관 M. Guillaume Larrivé의 보고와 정부 논고담당관 Mme Marie-Hélène Mitjavile의 의견을 청취함.

## IV. 이유

출판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인쇄업과 서점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며 ; 1967년 1월 4일 법률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출판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출판물의 성격이 외설적 또는 선정적이거나, 범죄적 또는 폭력적인 이유로 청소년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보여주거나 기증해 주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치에 부가하여 《이러한 출판물을 공개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게시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성격의 《광고라 할지라도, 이러한 출판물에 우호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

전술된 1958년 12월 23일 법률명령 제42조로 조문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14조를 적용한 1962년 7월 6일 처분행위를 통하여 내무부장관이 첫째, 원고인 Genka가 저술한 소설 L'épi monstre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보여주거나 기증해 주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공개할 목적으로 이 소설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대한 우호적 광고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을 행하였으며 ; 2004년 1월 12일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에게 소설 L'épi monstre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1962년 7월 6일 처분행위의 철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담당 장관이 침묵함으로써 야기된 묵시적 결정이 월권행위에 속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M. Genka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보완서류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점,

소설 L'épi monstre가 부녀간의 불륜적 관계를 상기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대상 결정이 행해진 날 내무부장관에 의해 주장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설 L'épi monstre의 배포가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이 1962년 7월 6일 처분행위에 대한 철회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험을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보완서류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점,

전술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M. Genka가 청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책임부관부 명령을 목적으로 한 원고 청구에 관하여 :

행정소송법전 법률 제911-1조에 의하면,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기관 또는 공역무관리 책임의 사법기관은 결정된 해석범위 내에서 실행처분을 행한다는 것이 그 결정 내용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원고 청구에 따라, 재판기관은 동일한 결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기간을 부기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전 법률 제911-3조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원고 청구에 따라, 재판기관은 현행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내에서 효력 발생일을 지정하는 바와 같은 지체책임부관을 동일한 결정 내에서 법률 제911-1조와 법률 제911-2조를 적용하여 명하는 금지행위에 부가할 수 있다》라는 점,

소설 *L'épi monstre*에 대하여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이 1972년 7월 6일 처분행위 철회를 거부한 묵시적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위법성이 확인된 규정제에 대한 철회를 당연히 의미하는 것이며 ; 최고행정재판소로서는 내무부장관에게 현 결정이 통고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회를 행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 반면에 이러한 명령에 지체책임부관이 부가될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당연히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전 법률 제761-1조의 규정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

본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전 법률 제761-1조의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과 M. Genka가 경비를 포함하지 아니 한 소송 청구비용에 대하여서만 요구한 3,000 유로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 V. 결 정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1조 : 내무·치안 및 지역자유 담당 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내무부장관이 첫째, 원고가 저술한 소설 *L'épi monstre*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보여주거나 기증해 주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째,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공개할 목적으로 이 소설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대한 우호적 광고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1962년 7월 6일의 처분행위에 대한 철회를 목적으로 한 M. Genka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묵시적 결정을 취소한다.

제2조 : 국무장관인 내무 및 국토관리장관은 본 결정이 통고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설 *L'épi monstre*에 대하여 행해진 1962년 7월 6일의 처분행위를 철회할 것을 명한다.

제3조 : 국가는 M. Genka에게 행정소송법전 법률 제761-1조에 따라 3,000 유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 본 결정은 M. Nicolas Genka와 국무장관인 내무 및 국토관리장관에게 통고한다.

주심법관 : M. Larivé, 정부논고담당관 : Mme Mitjavile, 변호사 : Pierrat 법률사무실

출 처 : Legipresse NO. 227, 2005년 12월호 pp.253-254.

번 역 : 박인수 (영남대 법대 교수)



영국사례

**언론사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적절히 정정했다면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PCC는 데이비드 알롭 씨가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Sunday Times Magazine)을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지난 2005년 1월 16일 카톨릭 교회 역사의 논란적인 부분을 다룬 『픽션보다도 이상한 일』 제하의 기사에서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을 다룬 자신의 책,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내용과 결론을 잘못 보도하고 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인은 위 기사가 PCC 윤리강령 제 1조(정확성)를 어겼으며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PCC에 올바르게 협력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취한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발표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문제됐던 부분을 적절히 수정했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주장한 사과문 게재 역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정보도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실렸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다.

그러나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불만신청인의 동의없이 PCC가 금하던 정정문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시스템의 원칙을 역행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에서 PCC와 협력하기를 규정하는 부분을 어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에게 회답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도 문제 삼았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의 편집장에게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

호주사례

**기사에 의견을 담지 않고 나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팜 호프 씨와 디나 버게스 씨가 더 에이지(The Age)의 예루살렘 특파원이 보도한 4건에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파원의 필자명과 사진이 포함된 이 기

사들은 각각 지난 2005년 6월 4일, 6일, 11일, 29일에 보도됐는데 첫 번째 기사에서는 저명한 TV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의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집중 소

개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고고학적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동 예루살렘의 실완 지역의 아랍 주민 1000 세대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이스라엘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기사는 이스라엘 군인이 영국인 평화주의자를 사살했는데 희생자의 가족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그 군인이 수뇌부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4건의 기사가 부정확하고 중요한 점을 생략했으며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신청인들은 기사들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만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사가

객관성과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미티즘에 대한 대중들의 적대심을 유도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 에이지는 문제가 제기된 기사들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나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 중 특정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더 에이지는 한 면에 양 국가 대립의 전체적 역사를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밝히고 기사에서는 중대한 인권이 양쪽 진영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담으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에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중동 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보도해왔다고 밝혔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문제가 된 기사들을 검토하고 불만신청인들과 더 에이지 측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더 에이지의 특파원은 기사 자체에 의견을 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만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지난 2005년 8월에 가자지역에서 퇴출당하게 된 유대인 사람들의 분노를 다룬 8개의 기사를 가리키며 "특정의 대립된 사건에 대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취재하고 편협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스스로가) '가자 해방 광대극'이라 부른 더 프레스의 보도문이 뉴스를 전달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정확성과 인종차별성에 관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원칙을 언급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니퍼 로웬스타인 씨가 작성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쪽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지 않는 서양 언론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같은 달 보도된 두 개의 다른 기사는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지적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가자 철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팔레스타인의 관점을 보인 기사 2건과 유대인 관점의 기사 8건은 양쪽을 공정하게 취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책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더 프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의 사건들을

### 뉴질랜드 사례 1

## 어느 한 당사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매도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웨슬리 페리쉬 씨가 더 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더 프레스가

다루어 왔기 때문에 고작 한 달의 숫자 통계를 가지고 공정함을 측정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집을 떠나야 하는 유대인들의 드라마를 취재한 기사가 반대파의 입장을 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다른 두 기사에 나타나 있듯이 유대인들의 아픔은 곧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쁨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가자에서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길고 긴 사투 속의 새로운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 언론이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기사의 포커스는 좀 더 드라마틱하고 기사거리가 되는 소재, 즉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떠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것이라고 봤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언론사들은 국제적인 중요 이슈를 자신들만의 자료로 보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의 중개사들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 더 프레스는 불만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두 개의 반대관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더 프레스의 편집장은 “8월 기사에는 많은 중개소들이 관여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사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견해가 심하게 나뉘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사의 목적은 모든 뉴스와 관점에 대한 알맞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제출한 로웬스타인 씨의 기사에 대해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인 가자 철수사건을 자신들만의 자료로 보도하기가 불가능한 일개 뉴질랜드 언론사가 그러한 현상을 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반대 여론 속에서도 강행한 일인 만큼 가자 철수 사건은 많은 세계의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사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취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더 프레스는 이러한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었다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기사들은 길고 격렬한 역사의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보도한 것이고 더 프레스는 공정함을 요구하는 제1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해외 중개소에서 제공된 기사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자체적 견해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러므로 더 프레스가 편견을 가지거나 팔레스타인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경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제3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 뉴질랜드 사례 2

###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내셔널프론트 웰링턴 지구의 대표인 K.R. 볼튼 씨가 2005년 4월 24일자 “내셔널 프론트가 Anzac 퇴역군인들을 성나게 하다”라는 제목

의 선데이 스타 타임스 기사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불만신청인은 이 기사가 선동적이며 공점함과 밸런스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제기

했다. 기사에는 뉴질랜드의 수상 헬렌 클라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모습의 사진이 포함됐다.

위 신문의 기사는 Anzac 일 바로 전날 보도되었고 RSA의 대표인 팻 허버트 씨는 Anzac일 행사에 참여하려던 ‘네오 파시스트’ 그룹과 내셔널 프론트의 멤버들로부터 공격적인 이메일들을 받았다.

내셔널 프론트의 대표 카일 채프만 씨는 그의 견해를 담은 글을 발표했다. 그는 해마다 내셔널 프론트의 멤버들은 Anzac일 행사에 참여했으며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깊은 뉴질랜드 사람들이고, 또 내셔널 프론트는 나치즘을 찬성하거나 이민자들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한 사람들은 제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기사는 최근 종종 백인우월주의나 파시즘을 찬양한 글이 내셔널 프론트 웹사이트에 자주 올라온다고 보도하며 그런 글들이, 많은 RSA 멤버들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뉴 브라이튼 RSA 대표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내셔널 프론트가 반대 시위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을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RSA에 이메일을 보낸 사람 중 두 명인 메서스 배리 사젠트 씨와 로버트 트리간 씨가 내셔널 프론트를 상대로 공동의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이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내셔널 프론트를 항상 네오나치 단체로 표현하고 있고 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정식 멤버도 아닌) 파시스트 사람들과 엮으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불만신청인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헬렌 클라크의 사진을 담은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저널리즘의 좋은 예고, 기사는 RSA가 “폭력적이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작은 단체”의 관점을 지지하도록 조작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의 불만에 대한 답변으로 위 신문의 부편집장은 기사가 내셔널 프론트를 상대로 RSA를 격분시키거나 RSA의 견해를 조작하기 위해 메서스 사젠트 씨와 로버트 트리간 씨와 공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Anzac 행사에 내셔널 프론트가 참여하는 것이 RSA로서는 인정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신문은 채프만 씨의 견해를 취재했고, 기사에 대한 견해는 실지 않았으며 채프만 씨가 나치 찬양자들을 제명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기사가 Anzac 일 전에 보도되기에 매우 좋은 기사라고 판단했다. 비록 뉴브라이튼은 내셔널 프론트의 참여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보도된 바대로 RSA 멤버들에게는 내셔널 프론트가 Anzac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불쾌한 일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내셔널 프론트 대표의 의견도 길게 담고 있었고, 헬렌 클라크의 아우슈비츠 방문사진도 뉴스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기사가 선동적이지 않으며 이 이슈가 매우 민감한 만큼 기사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몇 달 전 편집장에게 보냈던, 기사에 대한 견해를 담은 편지를 신문에 실지 않았으며 다시 불만을 제기했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에 보도할 편지를 고르는 것은 항상 편집장의 몫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MBC 신강균...’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발언의 앞뒤를 생략하고 왜곡 편집해 방송하는 바람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집회 사회자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는 9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 관련 발언을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이 왜곡 편집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인 송만기 씨가 MBC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 측은 송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한 그 발언자가 한 발언 중 앞뒤의 말을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발언 의미를 정반대의

취지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4년 4월 노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한 발언을 왜곡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MBC 측을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송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 이익치 전(前) 현대증권 회장 ‘횡령 보도’ 기자 2명 고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29일 1백억 원 대 돈을 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월간조선 송 모 기자와 오마이뉴스 김 모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前) 회장은 소장에서 “로스

앤젤레스 한미은행 웨스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으며 아들은 한국명 외에 미국 이름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이번 12월호에서 미국 교

민사회 주간지 ‘선데이 저널’을 인용, “이 씨가 본인 및 아들의 미국 이름으로 1백억 원 대의 자금을 LA의 한국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5년 11월 30일

### “간첩출신이 군 조사하다니...”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의문사위 직원 패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문사위 소속이던 김 모(40) 조사관은 1993년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형을 복역한 후 1999년 사면 복권돼 2003년 7월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김 씨가 조사관으로 활동하던 2004년 7월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 등 수십 명 조사”라는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 김대

중(金大中) 이사(理事) 기자(현 고문)는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재 목의 칼럼을 썼다. 또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와 발언에 대해 김 씨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씨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지금 자신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점, 예비역 장성을 조사했는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했다고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염원섭 판사는 25일 김 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가 문제 삼는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26일

## ‘주병진 씨 사건’ 언론에 알린 경찰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개그맨 주병진 씨의 성추문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찰관 이 아무개(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과 참고

인의 진술내용, 주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주 씨의 피의사실이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이 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씨의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주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으로 미뤄 이 씨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5년 12월 26일

##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19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에서 독립군 탄압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책을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도서출판 I사 대표 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실린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는 책 3,000부를 출판한 혐의다.

검찰은 “고소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이 서명한 1939년 3월자 문경소학교 성적통지표와 이를 받은 학생의 확인서를 첨부했고 1939년 박 전 대통령과 학교 가을운동회에 함께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를 제출했다”며 “이는 1939년 8월 만주에서 독립군 탄압활동을 했다는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

라고 밝혔다.

검찰은 책 서문을 작성한 김삼웅 관장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역사바로세우기’ 명분에 동조해 서문을 써준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 씨는 올 2월 이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사 대표 유 씨와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일보 2005년 12월 19일

## 한겨레 ‘언론권력’ 보도 승소

〈한겨레〉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9일 일부 만평과 사설에 대해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도 깨고 동아일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소송 도중 취하한 바 있어, 이 시리즈를 둘러싼 소송의 사실심은 모두 종결됐다.

재판부는 1975년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 당시 동아일보 경영진이 정권

의 광고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경영개선이란 명분 아래 기자들을 집단해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련의 해고과정과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삼만 당시 사장은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나아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단순한 사내분규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와 사주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김성수의 친일 논설은 김성수 자신의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주 및 경영진 등이 친일 논설을 자주 실는 등 친일 행각을 일삼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진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1호선 시정~종각역 구간이 동아일보사옥 때문에 급곡선으로 건설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사의 반대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아일보 사옥 때문에 세종로 시민광장 조성 계획이 무산됐다’는 보도도 “주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겨레〉는 2001년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목 아래 동아일보사와 사주 등 족벌언론들의 언론권력적 행태를 파헤치는 시리즈 기사를 실었으며, 동아일보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었다.

한겨레 2005년 11월 30일

## 익명원칙 지킨 고발 보도는 명예훼손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인력알선업체 T사 패소 판결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익명 보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일방적 주장에만 기초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불법 알선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내용은 시청자에게 일부 문제 업체가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이 아니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방송사측이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도 변조돼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CBS 노컷뉴스 2006년 1월 30일

## 오마이뉴스, 주성영 의원 상대 5억 손해소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주장한 한 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3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마이뉴스가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 그런 욕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9월 23일 보도한 주 의원 관련 기사에 대해, 주 의원 측이 '정치적 음모', '정치 공

작' 등으로 표현하며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보도자료에서 "주성영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인 9월 22일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하면서 술집 여사장 등에 욕설·폭언을 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주 의원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등으로 폄하하고 '정치

적 음모', '정치 공작' 등으로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10월 31일 오마이뉴스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국민일보 2005년 11월 4일

## “언론 변론은 전문성과 고도의 균형감각 필요”

지난 87년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사들이 대부분 법률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상혁 변호사도 MBC 프로그램(암니 옴니), PD 연합회와 각종 언론단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언론 중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언론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

그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서울남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낸 소위 'X파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실명공개 한 MBC

이상호 기자의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또 한 변호사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개업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변호사가 맡은 언론 중재와 소송사건이 100건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많은 언론 중재, 소송 사건을 맡으면서 한 변호사는 "언론이 개입된 사안은 '옳고 그름'의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언론 업무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언론 관련 소송은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덧붙였다.

요즘 그는 소송보다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강의, 세미나로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론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연수 프로그램 중 언론 관계법 강의를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는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언론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언론사들이 언론 관계 법률지식과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일신문 2005년 11월 21일

## 손학규 지사, ‘인허가 수뢰’ 보도 언론에 10억 손해소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4일 한겨레신문 발행인과 취재기자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 지사는 고소장에서 “취재에 있어 최소한

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려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이유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 조간에서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브로커한테서 받은 10억 원 대 돈의 상당 부분이 손 지사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05년 11월 5일

## ‘미디어법’ 펴낸 김옥조 한림대 객원교수 “중재위 등 언론 유관기관 정부간섭 막을 장치 필요”

한림대 김옥조 객원교수가 최근 언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한 ‘미디어법’(커뮤니케이션북스)을 펴냈다. 2004년 철우언론법상 대상을 받은 ‘미디어 윤리’와 짝을 이루는 저작이다. 3000여 개의 주(註)와 국내의 판례가 1002쪽의 두툼한 분량에 담겼다. ‘미디어법’은 표현의 자유, 보도 취재의 자유, 알 권리, 선거보도,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의 주요 개념에 대응하는 법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7월 28일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국무총리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을 지냈다.

집필 과정에서 그는 “국회가 무원칙하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법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놀랐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경우 법의 형평을 이루려면 신문보다 뉴스 시장 독점이 더 심한 방송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모든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전체 위원이 9명인 신문발전위나 방송위도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어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반성도 촉구했다. “언론이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정보 공개법’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언론인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5년 11월 2일

## ‘조선일보·신군부 건물 맞교환’ 보도는 오보 “한겨레는 정정보도하라” 서울고법 조정결정

‘80년 연회동 2억 주택 - 정동 5억 안가, 조선일보 - 신군부 건물 맞교환’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 및 만평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9일 “한겨레신문사는 2006년 1월 6일까지 2면 우측하단에 정정보도문을 2단 박스기사로 게재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 7일부터 매일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와 한겨레신문사 양측은 이 조정결정에 합의했다.

한겨레신문은 2001년 9월 11일자 신문 1면에 당시 장영달 의원의 국회질의

등을 근거로 조상기·허종식·권혁철 기사가 작성한 기사와 함께 3면에 ‘특혜 교환 이면 거래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 장봉군 작가가 그린 만평을 실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거짓 내용의 기사와 만평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올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만평작가는 조선일보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선일보사에 승소 판결했으나 정정보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레신

문의 기사와 만평 등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조선일보사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겨레신문은 연회동 가옥과 정동 안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후, 이러한 특혜거래가 마치 조선일보사와 신군부 사이의 ‘권언유착’의 신호이거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증거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려 조선일보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년 12월 30일

##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

지난 1월 2일, 위원회는 2006년 사무식과 함께 위원회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전문」과 「우리의 다짐」 14항으로 이뤄진 고객서비스 헌장은 위원회가 언론분쟁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개시

위원회는 위원회를 이용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심리일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시작했다. 이번 SMS는 사건접수와 기일지정 및 결과통보시, 전화 및 우편 안내 외에 추가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심리의 진행 일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9명의 선거기사심의위원을 위촉, 5월 31일에 열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프레스센터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선심위는 1월 31일 현판식을 갖고,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추천기관)〉

- 이 경 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한국신문협회)
- 유 호 봉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 하 창 우 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이 명 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 안 병 준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언론중재위원회)
- 박 구 진 변호사(열린우리당)
- 강 경 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한나라당)
- 노 향 기 전 월간 말 발행인(언론중재위원회)
-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한국언론학회)

## 언론중재위원회 간판식 제막식

위원회는 프레스센터 정문에서 조준희 위원장과 이종욱, 허광욱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간판식 제막식을 가졌다.



## 신임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위촉

법원 인사이동 및 위원 사퇴로 공석 중이던 중재부장과 중재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새로 임명된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임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 |                               |                              |
|-------------------------------|------------------------------|
| • 서울제1중재부장 황 정 규 서울동지법 수석부장판사 | • 서울제2중재부장 임 시 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서울제4중재부장 김 동 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 서울제4중재부 김 영 석 연세대 신방과 교수   |
| • 서울제5중재부 장 윤 환 전 한겨레신문 이사    | • 대구중재부장 김 세 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
| • 대전중재부장 윤 병 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 • 경기중재부장 윤 우 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
| • 강원중재부장 이 원 형 춘천지법 부장판사      | • 충북중재부장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 • 전북중재부장 유 길 중 전주지법 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장 고 충 정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 2006년도 위원회 정기 총회 개최

위원회는 2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에서 2006년도 위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006년 3월 3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이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9명) : 조준희 위원장, 허광옥 부위원장, 김서중, 조인호, 김동호, 김강덕, 석희태, 유현옥, 하명희 위원
- 시정권고위원(7명) : 조준희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 이상현, 이수연, 임연택, 최충웅, 조수정 위원

## 중재위원 워크숍, 위원회 설립 25주년 기념일에 열려

위원회는 이 달 30, 31일 양일간 숙리산 레이크 힐스 관광호텔(충북 보은군)에서 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자축하는 자리를 겸해 열린 이번 워크숍은 『조정사례로 본 새 제도 운용 진단』이라는 주제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조정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양상승(서울제3중재부) 변호사가 맡았다.

-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조수정 서울제6중재위원)
- 증거조사 운용안(박정호 서울제6중재부장)
-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권혁남 전북중재위원)
-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김서중 서울제3중재위원)

- 강민석(2006, 2월). 기자가 본 익명보도 : 기자와 데스크가 익명 관계자 만들어선 안 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19-23.
- 강형철(2006, 1월). 황우석 보도 : PD 수첩 보도의 공과\_윤리적 결함 안은 언론사적 탐사보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32-35.
- 김경호(2006, 2월). 익명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불가피한 경우 '두 정보원 원칙' 지켜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2호, 24-27.
- 김국진(2006, 1월). 2006 언론에 바란다 : 방송통신 융합 추진-구조 개편위 만들고 융합일정 범으로 정하자.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54-57.
- 김규조(2006). 선거 관련 법·제도 - 선거 방송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2006. 2. 22.
- 김민기(2005). 규제완화 :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담으려 노력. **방송위원회 주최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발제논문**. 2005. 11. 18.
- 김병국(2005).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관훈클럽 주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임' 세미나 발제논문**. 2005. 9. 30.
- 김연중(2005, 12월).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호, 140-165.
- 김영옥(2006, 2월). 외국 언론의 윤리강령 - 출처명시와 익명보도 : 신뢰성이 중요,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2호, 28-31.
- 김영주(2005, 겨울). 융합형 서비스의 등장과 규제 정책의 딜레마. **한국방송학보**, 19-4, 125-167.
- 김영호(2005, 가을). 안기부 X-파일과 언론 : 펜타곤폐이퍼와 X 파일, 그리고 언론자유-진실을 말하려면 잘못된 법과도 싸워야 한다.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15호, 26-35.
- 김재형(2005).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과 법**, 통권 제4권 1호, 55-82.
- 김창룡(2005, 가을). 항응과 금품 수수로 또다시 무너진 한국 방송윤리 : 유명무실한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실효성과 역효과 있는 감시·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15호, 110-117.
- 김형진(2005). 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미국의 규제 논리와 특성. **언론과 법**, 통권 제4권 1호, 123-156.
- 문재완(2005).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언론과 법**, 통권 제4권 1호, 85-122.
- 박진우(2005, 하권). 프랑스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저작권.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8호, 151-178.
- 백병규(2006, 1). 2005 언론결산 : 언론윤리-치명적인 관행의 덫, 윤리기준에 세대차.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106-109.
- 선봉희(2005, 하권). 러시아의 대중매체와 저작권.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8호, 181-202.
- 손태규(2005). 언론의 책임성·도덕성. **관훈클럽 주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책임' 세미나 발제논문**. 2005. 9. 30.
- 신건호(2005).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서울 : 전국언론노동조합.
- 양재규(2005, 겨울).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97호, 82-97.
- 이균용(2005). 헌법의 입장에서 본 명예의 침해에 의한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 : 대법원 2005년 1월 17일자 2003마1477

- 결정에 관하여. 언론과 법, 통권 제4권 1호, 13-54.
- 이민규(2006, 1월). 2005 언론결산 : 인터넷 언론-포털과 블로그, 저널리즘 영역에 도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124-127.
- 이민웅(2005, 가을). SBS '물레카메라 사건'의 언론 실천적 함의. 미디어 경제와 문화, 3-4, 40-76.
- 이봉수(2005, 겨울).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 통권 제97호, 64-81.
- 이용성(2006). 신문법 연구.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진(2006). 언론자유와 인격권. 서울 : 한나래.
- 이재진(2006, 1월). 선거법 개정과 언론보도 변화 : 인터넷 언론도 후보 토론회 개최 가능.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82-85.
- 이재진(2006, 2월). 인터넷 실명제의 명암과 윤리성 제고 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2호, 120-123.
- 임영호(2005).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서울 : 한국언론재단.
- 장행훈(2005, 12월). 취재원의 여론조작에 이용당한 기자.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0호, 56-61.
- 장호순(2005, 겨울). 강정구 교수 발언과 미디어 효과 이론. 언론중재, 통권 제97호, 124-125.
- 전규찬(2005). 국익과 진실보도의 경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문화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최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5. 12. 1.
- 조동시·양승혜(2006, 2월). 신문지면분석과 기자의견 조사 :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가 익명.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2호, 8-18.
- 조재영(2005). 광고표현 관련 판례에 나타난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특성 연구. 언론과 법, 통권 제4권 1호, 157-182.
- 주동황(2005). 절반의 성공 신문개혁입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주동황(2006, 1월). 2005 언론결산 : 신문법 제정 1년-신문위·유통원 출범, 신문진흥 골격 갖춰.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114-117.
- 진중권(2006, 1월). 황우석 보도 : 광고취소와 프로그램 중단까지-사이버 파시즘으로 언론자유 위협.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1호, 36-39.
- 채명기(2006).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디지털법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제논문. 2006. 2. 24.
- 최병규(2005, 하권). 언론관련 저작권과 독점금지법의 상호관계.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8호, 119-151.
- 최선규(2005, 12월). 미디어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기관의 체제 연구 : 전문성과 독립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445-470.
- 최영재(2005, 12월). 신문평 : 강정구 교수 발언 파문 보도-언론 스스로 언론자유를 옥죄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0호, 116-119.
- 한명욱(2005, 가을). 안기부 X-파일과 언론 : 알권리와 실정법 위반-X 파일 보도금지는 법적 타당성 없다.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5호, 36-45.
- 한영학·타기타 야스나리(2005, 하권). 일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법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8호, 91-116. □

## On-Line 중재 상담실

### Q 신문1면 광고를 이용한 명예훼손 건

지방신문 1면 광고를 이용하여 개인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광고 의뢰자는 실명 없이 의뢰하였고 신문사 측은 기사가 아닌 광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음해성 광고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와 광고의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Q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문의사항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내고 싶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꼭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A 귀하와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에 각각 반론보도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어느 절차를 먼저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반론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정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Q 정정보도청구

정기간행물(잡지)의 오류보도에 대해 당해 매체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시되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서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조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을 구하는 이유 그리고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귀하가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반론보도를 요청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이 된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

에만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 불성립이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 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녹취된 통화내용 방송**

방송 기자가 기자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즉 일반인임을 가장하여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음성변조 없이 방송이 되었고, 이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자 자신이 신분을 속이고 취재 상대방인 귀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였기에 음성권 침해로 법원에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음성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허위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는 모 예고의 강사입니다. 지난 2월초 지역신문인 00일보에서 학교의 강사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지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00일보는 그 기사 안에 저의 이름을 이니셜로 거론하며 제가 학교 외에 근무하던 학원의 실질적인 경영인이면서 학원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는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저는 현재 학원 강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기사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이므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이나 반론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니셜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귀하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귀하에 관한 보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00일보의 『서울택시 경기도 영업 극성』이란 기사를 읽고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택시기사 운전자입니다. 00일보의 기사를 읽고 직접 현실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로서 이 기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돼 정정보도 내지 사과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사를 보면 마치 서울 택시기사만 경기도에 가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택시 역시 서울에 와서 영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서울택시 기사만 불법영업 하는 것 같이 기사를 썼는데 정확히 하려면 서울시에 접수된 경기도 택시의 불법영업에 관한 것 역시 비교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관하여 정정내지는 사과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A** 귀하가 문제를 제기한 원 보도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택시기사들이 서울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가 가진 편집의 자유로서 인정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 새로운 언론중재법

## 구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신문, 방송, 잡지, 통신은 물론  
 인터넷 보도로 인한 피해까지  
 구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넓어진 피해구제 범위**

**새롭게 도입된 중재제도**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구제제도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으로도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해진 신청 방법**

**길어진 신청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2) 397-3000, 3010, 3100 인터넷 실시간 상담센터 [www.pac.or.kr](http://www.pac.or.kr)